

# 담뱃세 부과 및 활용 정책의 국제비교

## :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최은진

박현지·양현석·강희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연구진

|       |            |                     |
|-------|------------|---------------------|
| 연구책임자 | <b>최은진</b>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 공동연구진 | <b>박현지</b>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       | <b>양현석</b>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       | <b>강희원</b> |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조교수 |

연구보고서(수시) 2025-01

### 담뱃세 부과 활용 정책의 국제비교

: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발 행 일 2025년 3월  
발 행 인 신 영 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에코디자인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ISBN 979-11-7252-078-6 [93510]  
<https://doi.org/10.23060/kihasa.b.202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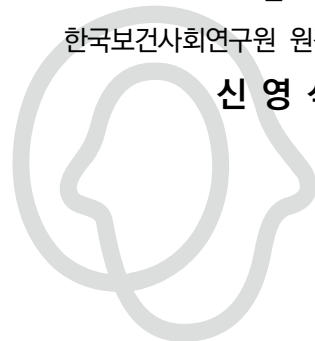
## 발|간|사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과 더불어 건강 정책의 하나로 담뱃세 부과 정책이 시작되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성이 시작되었다.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2003년 세계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은 FCTC의 비준과 더불어 보다 강화된 담뱃세 부과 정책을 시행하여 2005년, 2015년에 담뱃세 인상이 이루어졌다. 담뱃세 부과 정책은 근거 기반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며, 동시에 질병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정책과 맞물려 있다. 많은 국가에서 담뱃세로 각출된 예산을 보건 관련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데, 선진화된 정책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보다 합리적인 담뱃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5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 영 석





#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
|-------------------------------|-----|
| 요 약 .....                     | 1   |
| 제1장 서 론 .....                 | 7   |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 9   |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 12  |
| 제3절 기대효과 .....                | 15  |
| 제2장 담배규제와 가격 정책 .....         | 17  |
| 제1절 담배규제를 위한 국가의 역할 .....     | 19  |
| 제2절 세계 담배규제 정책 현황 .....       | 25  |
| 제3절 세계 담배가격 정책 현황 .....       | 33  |
| 제4절 담배규제와 담뱃세 부과 정책의 성과 ..... | 51  |
| 제5절 담배 스코어카드 평가 결과 .....      | 57  |
| 제3장 OECD 국가의 담배가격 정책 .....    | 63  |
| 제1절 담배소비세와 담배가격 .....         | 65  |
| 제2절 담뱃세 부과율 .....             | 72  |
| 제3절 주요 국가별 가격 정책 .....        | 84  |
| 제4장 우리나라의 담배가격 정책 .....       | 93  |
| 제1절 담배소비세 정책과 흡연율 .....       | 95  |
| 제2절 세후 활용 현황 .....            | 104 |

---

|                                        |                |
|----------------------------------------|----------------|
| <b>제5장 호주의 정책 사례 .....</b>             | <b>107</b>     |
| 제1절 담배규제 정책의 맥락 .....                  | 109            |
| 제2절 담배규제 및 가격 정책의 특성 .....             | 119            |
| 제3절 담배 종결전 실현을 위한 가격 정책의 역할 .....      | 136            |
| 제4절 보건의료 자원 확보 사례 및 특성 .....           | 138            |
| <br><b>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b>         | <br><b>149</b> |
| 제1절 담뱃세 세후 활용의 시사점 .....               | 151            |
| 제2절 구매력 감소를 위한 GDP와 인플레이션 고려 .....     | 152            |
| 제3절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조세 일관성 정책의 시사점 .....  | 153            |
| 제4절 담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의 함의 .....       | 153            |
| 제5절 담배 공급 규제를 위한 라이선스 제도와 추적관리제도 ..... | 154            |
| 제6절 정책제언 .....                         | 154            |
| <br><b>참고문헌 .....</b>                  | <br><b>157</b> |
| <br><b>Abstract .....</b>              | <br><b>175</b> |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
|---------------------------------------------------------------|----|
| 〈표 1-1〉 WHO의 조세 정책 관련 주요 지표 .....                             | 14 |
| 〈표 2-1〉 종량세와 종가세의 장단점 비교 .....                                | 35 |
| 〈표 2-2〉 주요 국가의 종량세 보완 대책 .....                                | 35 |
| 〈표 2-3〉 세계보건기구의 권역별 결련 20개비당 담배가격 변화(2020년과 2023년) .....      | 38 |
| 〈표 2-4〉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과 과세 현황(Closed ENDS) .....                 | 39 |
| 〈표 2-5〉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과 과세 현황(Open ENDS) .....                   | 41 |
| 〈표 2-6〉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과 과세 현황(Disposable ENDS) .....             | 43 |
| 〈표 2-7〉 결련형 전자담배 가격과 과세 현황 .....                              | 45 |
| 〈표 2-8〉 무연담배 종류별 가격과 과세 현황 .....                              | 47 |
| 〈표 2-9〉 다른 흡연 담배 제품 가격과 과세 동향 .....                           | 48 |
| 〈표 2-10〉 WHO FCTC의 주요 조항별 국제 성과 .....                         | 53 |
| 〈표 2-11〉 담뱃세 부과 정책 스코어의 연도별 OECD 국가별 추세 비교 .....              | 58 |
| 〈표 2-12〉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른 담뱃세 종류별 비중과 담배가격 .....                 | 61 |
| 〈표 3-1〉 OECD 국가의 담배 종류별 종량세 현황 .....                          | 65 |
| 〈표 3-2〉 OECD 국가의 담배소비세 종량세 부과 비교(2012년과 2024년) .....          | 67 |
| 〈표 3-3〉 OECD 국가의 연도별 흡연율 추세: 15세 이상 매일 흡연자 비율 .....           | 69 |
| 〈표 3-4〉 OECD 국가의 15세 이상 흡연율과 담배소비세 비교 .....                   | 71 |
| 〈표 3-5〉 OECD 국가의 연도별 담배가격의 추세 .....                           | 73 |
| 〈표 3-6〉 OECD 국가 결련의 연도별 종량세 비율의 추세 .....                      | 77 |
| 〈표 3-7〉 OECD 국가 결련의 연도별 종가세 비율의 추세 .....                      | 78 |
| 〈표 3-8〉 OECD 국가별 결련의 총 세금 비율의 연도별 추세 .....                    | 79 |
| 〈표 3-9〉 OECD 담배 제품의 구매력 평가지수(PPP) 기반으로 보정된 가격의 추세 .....       | 81 |
| 〈표 3-10〉 일부 OECD 국가별 결련형 전자담배(HTP)의 가격과 세금 비율(2022년 기준) ..... | 83 |
| 〈표 3-11〉 미국 15세 이상 흡연율의 시계열적 추세 .....                         | 88 |
| 〈표 3-12〉 아일랜드 15세 이상 매일 흡연율의 시계열적 추세 .....                    | 90 |
| 〈표 3-13〉 프랑스 15세 이상 매일 흡연율의 시계열적 추세 .....                     | 92 |
| 〈표 4-1〉 결련 기준 담뱃세 부과 정책의 연혁 .....                             | 97 |

---

|                                                                         |     |
|-------------------------------------------------------------------------|-----|
| 〈표 4-2〉 담배 종류별 제세부담금 .....                                              | 98  |
| 〈표 4-3〉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의 흡연율 추세 .....                                    | 101 |
| 〈표 4-4〉 연도별 건강증진부담금 자체 수입 현황 .....                                      | 104 |
| 〈표 5-1〉 MPOWER 이행전략별 호주 연방, 주 및 지방정부의 역할 .....                          | 111 |
| 〈표 5-2〉 호주 담뱃세 인상 효과 평가 대상 문헌 선정을 위한 기준 .....                           | 133 |
| 〈표 5-3〉 National Tobacco Strategy 지불 능력 관련 중점영역의 실행 과제 및 책임 주체<br>..... | 138 |
| 〈표 5-4〉 주별 담배 판매 수수료율(%), 1974~1997 .....                               | 139 |
| 〈표 5-5〉 호주 연방정부의 전체 세수 중 담배 세수의 비중 .....                                | 143 |
| 〈표 5-6〉 호주 담뱃세 인상 영향 평가를 위해 최종 선정된 문헌의 주요 내용 .....                      | 144 |

# 그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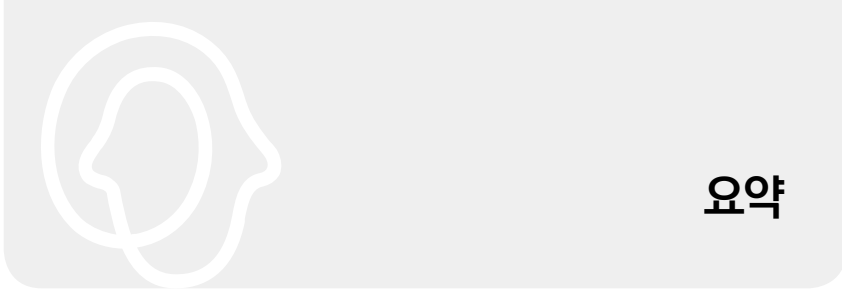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
|--------------------------------------------------------------|----|
| [그림 1-1]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 정책의 데이터베이스 .....                        | 13 |
| [그림 1-2] 연구 추진 절차 .....                                      | 15 |
| [그림 2-1]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구성 .....                     | 23 |
| [그림 2-2] 세계보건기구 FCTC 이행을 위한 정책전략 MPOWER .....                | 24 |
| [그림 2-3] 담배규제 정책의 보호를 받는 세계 국민의 비율 .....                     | 25 |
| [그림 2-4] 2022년 세계 담배 정책 규제 현황 .....                          | 26 |
| [그림 2-5] 2022년 담배 사용 및 정책 모니터링, 국가 소득 수준별 .....              | 27 |
| [그림 2-6] 2022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 국가 소득 수준별 .....                   | 27 |
| [그림 2-7] 2022년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국가 소득 수준별 .....                   | 28 |
| [그림 2-8] 2022년 담배의 위험성 경고를 위한 건강 경고 부착, 국가 소득 수준별 .....      | 28 |
| [그림 2-9] 2022년 담배의 위험성 경고를 위한 금연 캠페인, 국가 소득 수준별 .....        | 29 |
| [그림 2-10]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국가 소득 수준별 .....                 | 29 |
| [그림 2-11] 2022년 담뱃세 인상, 국가 소득 수준별 .....                      | 30 |
| [그림 2-12] 담배 제품의 종류와 구성요소: 기계생산 결련 .....                     | 30 |
| [그림 2-13] 담배 제품의 종류와 구성요소: 액상형 전자담배 .....                    | 31 |
| [그림 2-14] 담배 제품의 종류와 구성요소: 결련형 전자담배 .....                    | 32 |
| [그림 2-15]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위해 제품 대상 조세 정책에 대한 발간물 현황 .....         | 34 |
| [그림 2-16] 담배가격 인상과 담배 소비 감소 추세: 튀르키예 .....                   | 36 |
| [그림 2-17] 국가 소득 수준별 담배구매력 변화 국제비교 .....                      | 37 |
| [그림 2-18] 담뱃세 목적세의 규모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설문조사 결과 .....               | 55 |
| [그림 2-19] 담뱃세 목적세의 재원 활용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설문조사 결과(2015) .....      | 56 |
| [그림 2-20] Tobacco Atlas cigarette tax scorecard의 정책 기준 ..... | 57 |
| [그림 2-21] 대륙별 담뱃세 스코어카드의 변화 동향 .....                         | 60 |
| [그림 2-22] 담뱃세 부과 정책의 효과: 사망률 감소와 예산 확보 효과 .....              | 60 |
| [그림 2-23] 결련 담뱃세 스코어카드의 연도별 구성 요소별 변화 .....                  | 61 |
| [그림 3-1] OECD 국가의 연도별 담배가격(US달러 기준) .....                    | 74 |
| [그림 3-2] OECD 국가 결련 담배의 종량세, 종가세, 총 세금 비율의 추세 .....          | 75 |

---

|                                                             |     |
|-------------------------------------------------------------|-----|
| [그림 3-3] OECD 국가 궤련 담배의 연도별 세금 비율의 추세(2008~2022년) .....     | 76  |
| [그림 3-4] 미국 성인 흡연율과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율 추세 .....                   | 86  |
| [그림 3-5] 연도별 미국 궤련 가격과 판매량 변화 및 고등학생 흡연율 추세 .....           | 87  |
| [그림 4-1] MPOWER 담배규제 정책의 우리나라 현황(2021년 기준) .....            | 95  |
| [그림 4-2] 담배소비세 인상과 담배 판매량 추세 .....                          | 100 |
| [그림 4-3] 우리나라의 성인 흡연율 추세 .....                              | 101 |
| [그림 4-4]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율 추세 .....                             | 102 |
| [그림 4-5]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되는 연도별 담배부담금 추이 .....                  | 106 |
| [그림 5-1] 호주의 정부 구조 .....                                    | 110 |
| [그림 5-2] 호주 14세 이상 현재 흡연자의 담배 취득 경로, 2013, 2016, 2019 ..... | 113 |
| [그림 5-3] 호주의 성별 현재 흡연율, 2001~2022/2023 .....                | 116 |
| [그림 5-4] 호주에서 추진된 주요 담배규제 정책, 2005~2014 .....               | 123 |
| [그림 5-5] 호주에서 추진된 주요 담배규제 정책, 2015~2024 .....               | 124 |
| [그림 5-6] 호주의 MPOWER 이행 수준 .....                             | 125 |
| [그림 5-7] 연도별 담배 한 개비당 담배소비세(호주달러) .....                     | 127 |
| [그림 5-8] 연도별 담배 한 개비당 권장 소매 가격(호주달러) .....                  | 129 |
| [그림 5-9] 1987~1997년 기간에 VicHealth의 자금 .....                 | 141 |
| [그림 5-10] 호주의 담배 세수, 2001~2024 .....                        | 142 |



## 요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 제품 및 담배 사용의 규제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3년 제53차 WHO 총회에서 19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담배규제기본협약이 통과되었다(2003.5.21.). 2005년 2월 말에는 국제법으로 발효되었다. 2023년 기준 총 183개국이 협약 당사국이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하였다.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의한 규제 정책 중 담배가격 정책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담뱃세를 인상하여 담배 소비를 억제하는 방식을 가장 효과적인 규제 정책으로 권고하고 있다. 담뱃세 각출로 조성된 기금이나 예산은 보건 정책에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15년 담뱃세 인상 이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지출의 규모도 증가해 왔다. 질병관리청의 국민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른 흡연을 격차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흡연을 격차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담뱃세 부과 정책에 따른 금연 정책과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경제적 흡연을 격차는 국내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담배 생산 국가는 대부분 고소득 국가이며 담배 소비 국가는 저소득 국가인 경우가 많아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담배 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담뱃세 과세 정책과 그 재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인 동향과 정책 요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흡연율 감소의 영향요인으로 담뱃세 부과와 보건의료 자원 활용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해외 정책 사례에 대한 최근 연구도 없다. 따라서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담배가격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기반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의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조치로서 제6조에서 다루고 있는 담배가격 및 세금 정책을 중심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협약에서 담배가격 정책 및 세금 정책의 범위는 담배 수요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담배 소비 감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금 부과 정책뿐만 아니라 면세담배 규제 조치, 회원국의 보고의무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담배 제품의 다양화에 따른 담뱃세 부과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보건의료 분야 예산 활용 정책의 현황을 국제비교를 통하여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방법

세계보건기구에서 제공하는 담뱃세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OECD 보건 데이터와 문헌을 활용하여 여러 국가들의 담뱃세 동향과 흡연율, 정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국제비교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하였다. WHO FCTC 제6조의 가격 정책 및 세금 정책에서는 담배 제품의 수요 감소 정책으로서 젊은 세층의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세 정책을 강조하였다. 2017년에 발간된 제6조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고서는 담배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격 정책과 조세 정책의 추진에 대한 지침으로 공중보건 정책과의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주요 지표로 담배의 가격탄력성, 흡연율, 구매력, 담배조세체계에서 종량세와 종가세 등 조세 비중, 조세 행정에서 담배 제품 생산 라이선스와 납세 모니터링 관리, 세후 활용 등의 정책을 수행하도록

권고하였다. 담뱃세에서 각출된 기금은 담배 성분 규제, 대중교육 홍보, 치료서비스 등에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2021년에 발간된 담배가격 정책에 대한 매뉴얼에서는 조세 정책(tax policy)의 구성요소, 조세 설계(tax design)의 방향, 조세 일관성(tax parity)의 원칙,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방안, 조세 행정(tax administration)의 전략 등이 포함되었다.

[요약그림 1] 연구 추진 절차

| 연구내용               | 7월~8월                     | 9월~12월                              | 2025. 1월~3월      |
|--------------------|---------------------------|-------------------------------------|------------------|
| 담배가격정책의<br>특성 및 성과 | WHO MPOWER,<br>담배종결정책의 역할 | 가격정책 도입<br>현황<br>(FCTC)             | 주요 성과 분석         |
| 담배가격정책의 추진현황       | OECD국가, 주요 선진 사례 자료수집     |                                     | 가격정책의 성과와 모범정책사례 |
| 보건의료분야 자원 확보<br>사례 | 주요 국가의 자원활용<br>사례 수집      | 자원 관련 법적 근거,<br>자금 출처, 구성, 사용처 등 고찰 |                  |

### 3. 결과

담뱃세 부과 정책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신종 담배의 출현으로 다양한 세율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ECD 국가들의 담뱃세 수준과 흡연율은 음의 상관관계인 것을 확인하였다. 대부분 유럽국가에서는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해 합의하여 높은 수준의 소비세율이 적용된다.

WHO FCTC 당사국의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가격 정책의 변화는 최근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유럽연합 차원의 담뱃세 부과 정책을 수립하여 각국에서 자국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

#### 4 담뱃세 부과 및 활용 정책의 국제비교: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담배규제를 위한 국제협력이 연동될 수 있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뱃세 부과를 통한 가격 정책은 담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담배 소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흡연율 조사를 통한 통계 작성과 더불어 담배 판매량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동시에 담배 소매가격의 추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담뱃세 스코어카드에 따르면, 담배가격 정책의 국제 동향은 수치가 크게 증가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점수가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한 경우가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스코어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담배가격 정책의 효과성이 고소득 국가에서 더 확보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쉐련 담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최근에 다양한 전자담배가 등장하여 국가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계보건기구의 담배에 대한 조세 정책 권고에는 조세 정책의 개발에서 사망 및 질병을 감소시키기 위한 공중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세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조세체계의 설계에서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단순한 조세 구조와 정기적 소비세 인상을 권고하였으며, 인플레이션 및 소득 상승에 대응하는 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장하였다. 조세의 일관성, 모니터링 및 평가, 조세 행정,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부합되는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담배의 불법 거래(밀수, 불법 제조 등)는 가격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담뱃세 부과 정책을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치적, 행정적, 사회경제적 조치가 함께 계획되어야 한다.

## 4. 정책제언

### 가. 담배규제 정책의 맥락에서 담배가격 정책 추진

WHO FCTC에 의한 가격 정책은 일반적인 물품 과세의 특성이 아닌 국민 보건 향상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교정 과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FCTC는 가격 정책 분야에서 담배의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적 과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종량세를 기반으로 한 혼합 방식과 일관성 있는 단순화된 부과 방식을 권고하였다. 이 외에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제품에 대해 건강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된 정책 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담뱃세 부과 정책은 흡연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고, 구매력 감소를 위해 충분한 가격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고소득 국가에서 구매력 감소 효과가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뱃세 부과로 확보된 예산의 사후 활용은 비가격적인 담배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

많은 국가에서 금연 및 국민건강증진, 보건의료 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담뱃세 추진 정책의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함께 고려해야 할 정책전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나. 세후 활용 확대 방안

담뱃세 부과로 확보된 예산은 그 정당성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 의료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한 사업에 해당 예산의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담배가격 정책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위에 속하지만 다른 담배규제 정책과 사업에 예산이 활용되는 것은 부족한 상황이다. 담배연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 담배회사의 활동 규제,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중장기적인 흡연 감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담배규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담뱃세 부과 및 활용 정책을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흡연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담뱃세 수입을 활용해야 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유엔에서 2015년 시작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전 세계의 빈곤을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채택된 국제 정책이다. 총 17개 목표 분야 중 세 번째 목표인 건강과 웰빙 분야에서 비감염성 만성질환의 세부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전략적 도구로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이행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였다. 흡연은 비전염성 질환(NCDs)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의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이 어디까지 안전한지에 대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담배연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인 보건의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흡연자는 만성질환 등 다양한 건강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현재 흡연율을 줄이는 목표가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지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 영향 평가와 FCTC 미가입국 금연 정책 평가에 필수적이라는 것도 강조되었다(통계개발원, 2020).<sup>1)</sup>

1) 통계개발원. (2020.12.31.). SDGs 지표 훑아보기.  
<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SDGInfoRoom.do?jsessionId=VywSNoDPUG3-S9u8E1jdi63At4RzrAunY7DzLLT4.node11>.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 제품 및 담배 사용을 규제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3년 제53차 WHO 총회에서 19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담배규제기본협약이 통과되었다(2003.5.21.). 2005년 2월 말에 국제법으로 발효되었다. 2023년 기준 총 183개국이 협약 당사국이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하였다.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의한 규제 정책 중 담배가격 정책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담뱃세를 인상하여 담배 소비를 억제하는 방식을 가장 효과적인 규제 정책으로 권고하고 있다. 담뱃세 각출로 조성된 기금이나 예산은 보건 정책에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한 2021년의 연구 결과, 저소득층에 속한 흡연자가 담배의 가격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배의 가격이 100% 정도로 인상되면, 향후 10년 동안 전체의 사망률을 약 2% 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보고되었다. 담배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10년간 사망률의 상대 불평등 지수는 3.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m & Khang, 2021). 담배가격정책의 추진 성과는 성인에 대한 효과만이 아니라 청소년 및 청년 집단에 대해서도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렇지만 현재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흡연량 감소 수준의 효과를 넘어서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니코틴 중독 치료 등의 흡연자 금연 지원 정책과 담배 관련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도모하는 비가격 정책을 담배가격정책과 더불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있었다(질병관리청, 2022).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년 담뱃세 인상 이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지출이 증가하여 2020년 기준 3조 3,700억 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지출되었다(고숙자, 2022). 선행연구에서는 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사업의 용처를 법적인 취지에 맞게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건강보험 지원 및 질병관리청 지원 등에 배분되는 예산이 기금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평가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질병관리청의 국민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른 흡연을 격차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흡연을 격차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라규원 외, 2024). 담뱃세 부과 정책에 따른 금연 정책과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경제적 흡연을 격차는 국내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담배 생산 국가는 대부분 고소득 국가이며 담배 소비 국가는 저소득 국가인 경우가 많아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담배 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으로서 담뱃세 과세 정책과 그 재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인 동향과 정책 요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흡연율 감소의 영향요인으로 담뱃세 부과와 보건의료 자원 활용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해외 정책 사례에 대한 최근 연구도 없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담배가격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기반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담배 제품의 다양화에 따른 담뱃세 부과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보건의료 분야 예산 활용 정책의 현황을 국제비교를 통하여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권고하는 담뱃세 부과와 추세를 국제비교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다양화되는 담배 제품의 유형에 따른 부과 동향을 분석 비교하였다.

선진 국가에서 담뱃세 부과 정책으로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대륙별 현황,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격차 등을 검토하였다.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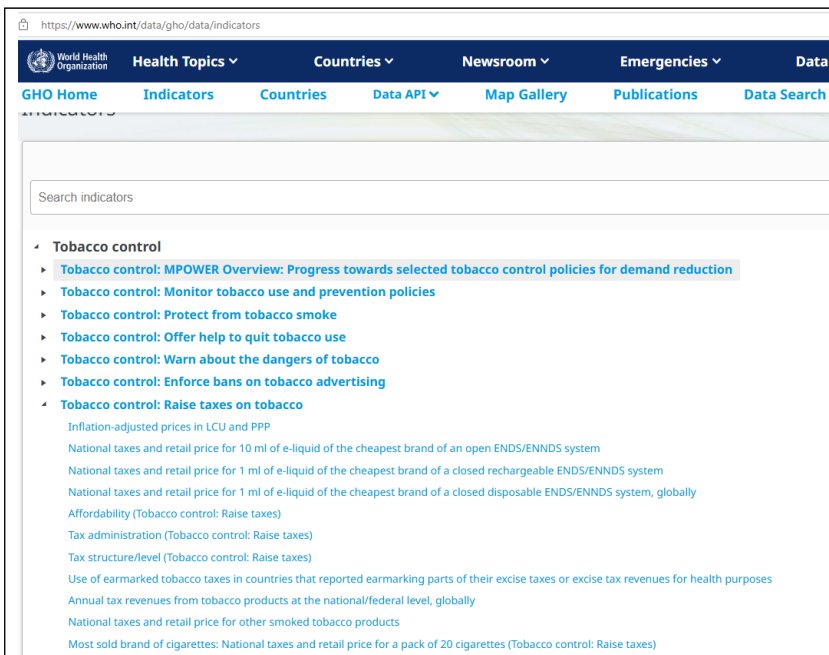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담뱃세 부과 정책의 특성과 주요 국가의 담배규제 정책의 성과를 살펴본다. 또한 담배규제 정책의 성과와 담뱃세 부과 정책의 관련성도 살펴본다. 보건의료사업의 재원으로 담뱃세를 활용하는 유형과 특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범위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담배규제를 위한 가격 정책의 기준과 권고 사항과 지표를 중심으로 하였다. 담배규제 정책의 추진과 관련해 각국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의 기준인 MPOWER를 참조하였다(그림 1-1).

담배가격 정책의 구성요소로서 WHO FCTC 제6조의 가격 정책 및 세금 정책에서는 담배 제품의 수요 감소 정책으로 젊은 계층의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세 정책을 강조하였다. 2017년에 발간된 제6조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고서는 담배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격 정책과 조세 정책의 추진에 대한 지침으로 공중보건 정책과의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주요 지표로 담배의 가격탄력성, 흡연율, 구매력, 담배 조세체계에서 중

량세와 종가세 등 조세 비중, 조세 행정에서 담배 제품 생산 라이선스와 납세 모니터링 관리, 세후 활용 등의 정책을 수행하도록 권고하였다. 담배세에서 각출된 기금은 담배 성분 규제, 대중교육 홍보, 치료서비스 등에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2021년에 발간된 담배가격 정책에 대한 매뉴얼에서는 조세 정책(tax policy)의 구성요소, 조세 설계(tax design)의 방향, 조세 일관성(tax parity)의 원칙, 모니터링 및 평가(monitring and evaluation) 방안, 조세 행정(tax administration)의 전략 등이 포함되어있다(〈표 1-1〉).

[그림 1-1]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 정책의 데이터베이스



출처: “The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 Tobacco control: Raise taxes on tobacco,” WHO, 2025.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 에서 2025. 2. 28 인출.

##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담뱃세 부과 정책과 재원 활용을 중심으로 국제비교를 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문헌을 고찰하고 국제비교를 할 수 있는 OECD health 데이터베이스와 WHO의 담배규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 데이터베이스는 MPOWER Tobacco Control: Raise taxes on tobacco의 지표들을 중심으로 담배가격 정책인 담뱃세 부과와 원칙과 OECD 국가들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담배의 종류별로 부과되는 세금 부과와 원칙과 특성도 살펴보았다.

담배가격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인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호주의 정책전략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 분야의 외부 전문가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국외 동향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1-1〉 WHO의 조세 정책 관련 주요 지표

|                    |                                                                                                                                                                                                                                |
|--------------------|--------------------------------------------------------------------------------------------------------------------------------------------------------------------------------------------------------------------------------|
| WHO FCTC 제6조(2003) | 협약은 2003년에 성안되었고, 2005년부터 법적으로 시행되었음. 2014년 기준 183개 비준국, 전 세계 국민의 90%를 포괄함. 제6조는 담배 제품의 수요 감소 정책으로 특히 젊은 세층의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세 정책을 강조함.                                                                                          |
| 제6조 가이드라인(2017)    | 담배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격 정책과 조세 정책의 추진에 대한 지침으로 공중보건 정책과의 관련성을 강조함. 주요 지표로 담배의 가격탄력성, 흡연율, 구매력, 담배조세체계에서 종량세와 종가세 등 조세 비중, 조세 행정에서 담배 제품 생산 라이선스와 납세 모니터링 관리, 세후 활용 방안 등 권고함. 담뱃세에서 각출된 기금은 담배 성분 규제, 대중교육 홍보, 치료서비스 등에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음. |
| 담배가격 정책에 대한 매뉴얼    | 조세 정책(tax policy), 조세 설계(tax design), 조세 일관성(tax parity),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ning and evaluation), 조세 행정(tax administration)                                                                                                      |

주: 표의 내용은 WHO의 조세 정책 관련 주요 지표의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하였음.

출처: 1)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WHO FCTC, 2003.

<https://fctc.who.int/resources/publications/i/item/9241591013>

2)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article 6," WHO FCTC, 2017. <https://fctc.who.int/convention/treaty-instruments>에서 2025. 3. 24. 인출.

3) "WHO technical manual on tobacco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WHO, 2021.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19188>

[그림 1-2] 연구 추진 절차

| 연구내용               | 7월~8월                     | 9월~12월                              | 2025. 1월~3월 |
|--------------------|---------------------------|-------------------------------------|-------------|
| 담배가격정책의<br>특성 및 성과 | WHO MPOWER,<br>담배종결정책의 역할 | 가격정책 도입<br>현황<br>(FCTC)             | 주요 성과 분석    |
| 담배가격정책의 추진현황       | OECD국가, 주요 선진 사례 자료수집     | 가격정책의 성과와 모범정책사례                    |             |
| 보건의료분야 재원 확보<br>사례 | 주요 국가의 재원활용<br>사례 수집      | 재원 관련 법적 근거,<br>지금 출처, 구성, 사용처 등 고찰 |             |

### 제3절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보건법제인 담배규제기본협약 제6조를 바탕으로 담배가격 및 조세 정책의 구성요소와 국제적 추진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담배세 정책의 역할과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담배 제품의 다양화에 따른 담배규제의 성과가 제한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담배가격 정책의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재정 정책의 당위성도 확보하게 된다. 주요 국가들이 보건의료 재정 정책에 담배세를 활용하는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국내 보건재정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FCTC 사무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통하여 모범 정책의 전략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담배규제 정책 개발에서도 다양한 정책 중에 담배가격 정책을 개선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양한 신종 담배 제품의 출시와 소비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주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합목적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본 연구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과 더불어 담배규제를 위한 종합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가격 정책 세분화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제2장

### 담배규제와 가격 정책

제1절 담배규제를 위한 국가의 역할

제2절 세계 담배규제 정책 현황

제3절 세계 담배가격 정책 현황

제4절 담배규제와 담뱃세 부과 정책의 성과

제5절 담배 스코어카드 평가 결과



## 제2장 담배규제와 가격 정책

### 제1절 담배규제를 위한 국가의 역할

#### 1.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 제품 및 담배 사용의 규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3년 제53차 WHO 총회에서 19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담배규제기본협약이 승인(2003.5.21.)되었고, 당사국의 요건이 완료된 2005년 2월 말 국제법으로 발효되었다. 2023년 기준 총 183개국이 협약 당사국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준하였다.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의한 규제 정책 중 담배가격 정책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담뱃세를 인상하여 담배 소비를 억제하는 방식을 가장 효과적인 규제 정책으로 권고하고 있다. 담뱃세 각출로 조성된 기금이나 예산은 보건 정책에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배규제협약 FCTC는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며 근거 중심의 협약이다. 협약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달성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기반해 담배의 수요와 공급을 감소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흡연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 사용의 주요 요인을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국가들마다 담배가격과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정책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하며, 다국적 기업의 마케팅과 판촉 등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담고 있다. 또한 담배 시장에서 위조, 가짜 등의 담배로 인해 흡연 인구를 부추

기고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과 세금 정책을 방해하는 양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담뱃세 정책을 보다 광범위한 영향요인을 포괄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2005년부터 효력이 시작된 FCTC의 조항은 전체 11장 38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규의 전체 내용은 정부의 일반의무 외에 담배 수요 감소 정책과 담배 공급 감소 정책으로 크게 구분된다. 담배가격 정책에 대한 내용은 담배 수요 감소 정책에 포함된다. 담배의 공급 감소 정책은 담배 제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는 정책과 미성년자가 담배에 접근하는 것 금지, 담배경작 및 제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대체활동을 지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FCTC의 내용 중에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담배 사용을 감소시키고,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보건, 사회, 환경, 경제적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FCTC의 제5조 1항에서는 정부가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담배규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며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제5조 3항에서는 담배규제를 위한 공중보건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담배 산업의 상업적 이익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국내법적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2. 담뱃세 부과 관련 우수 정책전략

### 가. FCTC 제6조 및 가이드라인

WHO FCTC의 제6조 담배가격 및 조세 정책 분야에서는 모든 인구집단 대상의 정책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 가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조세 정책 및 가격 정책, 면세담배 금지 및 제한, 당사국총회에 관련 정책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 등을 명시하였다.

제6조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에서는 담뱃세 부과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을 권고하였다. 담배 수요 감소와 관련된 소득탄력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며 흡연율과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정책을 펴도록 권고하였다. 담뱃세 부과 체계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담배소비세와 관련하여 종량세와 종가세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혼합 방식을 권고하였다. 담배 제품에 다른 종류의 세금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지만 단순한 체계를 갖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양한 담배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가 다를 경우 비싼 담배보다 저렴한 담배로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형에 따른 세금 부과를 형평성 있게 할 것을 권고하였다. 세금 부과율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담뱃세 부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요소로서는 담배 제품 생산과 보관 등에 따르는 인증제도와 징수 과정을 체계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담배규제를 위한 담뱃세 부과 정책은 전체적인 담배규제 정책안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담뱃세 부과 정책으로 조성된 예산을 건강증진과 담배규제 정책 및 사업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 나. 주요 지표

담배규제를 위한 담뱃세 정책의 주요 지표는 첫째, 담배 제품의 가격 규제이고, 둘째, 담배에 대한 소비세 및 다른 과세의 비중이다. 셋째는 담배 구매의 가능성 지표로, 소득 대비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넷째, 담뱃세로 거두어들인 예산을 보건의료 또는 기타 분야에 활용하는 정책에 대한 지표가 있다. 담뱃세 정책에 대한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 담배(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와 담배 종류별 담배가격(필러, 액상형 담배, 무연담배 등)
- 국민의 담배 구매 가능성
- 담뱃세 구조
- 담뱃세 운영을 위한 규제 정책(담뱃세 누수 방지를 위한 정책)
- 담뱃세 부과 예산 현황(Annual tax revenues from tobacco products at the national/federal level, globally)

[그림 2-1]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구성

| 구분  |                  | 조항  | 설명                                                            |
|-----|------------------|-----|---------------------------------------------------------------|
| 1장  | 도입               | 1조  | 협약과 관련된 용어정리                                                  |
|     |                  | 2조  | 협약의 주요 개념과, 이 협약과 기타 협정 및 법적 문서와의 관계 규정                       |
| 2장  | 목표, 기본 원칙 및 일반의무 | 3조  | 목표                                                            |
|     |                  | 4조  | 기본원칙                                                          |
|     |                  | 5조  | 일반의무                                                          |
| 3장  | 담배수요 감소조치        | 6조  |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
|     |                  | 7조  |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비가격 조치                                            |
|     |                  | 8조  | 담배연기의 노출로부터의 보호                                               |
|     |                  | 9조  |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규제                                         |
|     |                  | 10조 |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의 공개에 관한 규제                                     |
|     |                  | 11조 |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                                              |
|     |                  | 12조 |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 강화                                      |
|     |                  | 13조 | 담배광고·판촉·후원 규제                                                 |
| 4장  | 담배공급 감소조치        | 14조 | 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감소 조치                                         |
|     |                  | 15조 |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                                                 |
|     |                  | 16조 |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및 구매 금지                                            |
|     |                  | 17조 | 담배공급 변화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노동자, 경작자 등에 대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활동 지원    |
| 5장  | 환경보호             | 18조 | 담배경각 및 제조 관련 환경과 관련자의 건강보호                                    |
| 6장  | 책임과 관련된 문제       | 19조 | 민형사상 책임에 있어 각 당사국이 재량적으로 입법상의 조치 및 기존 법률축진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 |
| 7장  | 과학·기술 협력과 정보교류   | 20조 | 담배규제 관련 연구, 감시, 정보교환                                          |
|     |                  | 21조 | 협약이행 보고 및 정보교환                                                |
|     |                  | 22조 | 과학·기술·법 분야에서의 협력 및 전문자식 제공                                    |
| 8장  | 제도적 장치 및재원       | 23조 | 당사국총회                                                         |
|     |                  | 24조 | 사무국                                                           |
|     |                  | 25조 | 당사국총회와 국제기구간의 관계                                              |
|     |                  | 26조 | 재원                                                            |
| 9장  | 분쟁해결             | 27조 | 분쟁해결                                                          |
| 10장 | 협약의 개발           | 28조 | 협약의 개정                                                        |
|     |                  | 29조 | 협약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
| 11장 | 최종조항             | 30조 | 유보                                                            |
|     |                  | 31조 | 탈퇴                                                            |
|     |                  | 32조 | 투표권                                                           |
|     |                  | 33조 | 의정서                                                           |
|     |                  | 34조 | 서명                                                            |

출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란,” 보건복지부, 2017. 9. 25, 금연길라잡이. [https://www.nosmokeguide.go.kr/lay2/bbs/S1T33C36/H/21/view.do?article\\_seq=218&tag\\_name=&cpage=2&rows=10&condition=&keyword=&cat=&rn=16](https://www.nosmokeguide.go.kr/lay2/bbs/S1T33C36/H/21/view.do?article_seq=218&tag_name=&cpage=2&rows=10&condition=&keyword=&cat=&rn=16)

## 다. 담배규제 정책 이행을 위한 MPOWER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담배규제 정책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서 우수 정책전략을 제시하였다. MPOWER의 여섯 가지 정책은 인구집단의 담배 사용과 금연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활동(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M), 담배연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지정과 확대 정책(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P),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정책(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O), 담배 제품 사용의 위험을 알려주는 담뱃갑 포장 경고문과 금연 캠페인 등 보건교육 정책(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W), 담배산업의 광고판촉 활동을 금지하는 정책(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E), 담뱃세 인상 정책(Raise taxes on tobacco: R)이다.

[그림 2-2] 세계보건기구 FCTC 이행을 위한 정책전략 MPOWER



출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란,” 보건복지부, 2017. 9. 25, 금연길라잡이. [https://www.nosmokeguide.go.kr/lay2/bbs/S1T33C36/H/21/view.do?article\\_seq=218&tag\\_name=&cpage=2&rows=10&condition=&keyword=&cat=&rn=16](https://www.nosmokeguide.go.kr/lay2/bbs/S1T33C36/H/21/view.do?article_seq=218&tag_name=&cpage=2&rows=10&condition=&keyword=&cat=&rn=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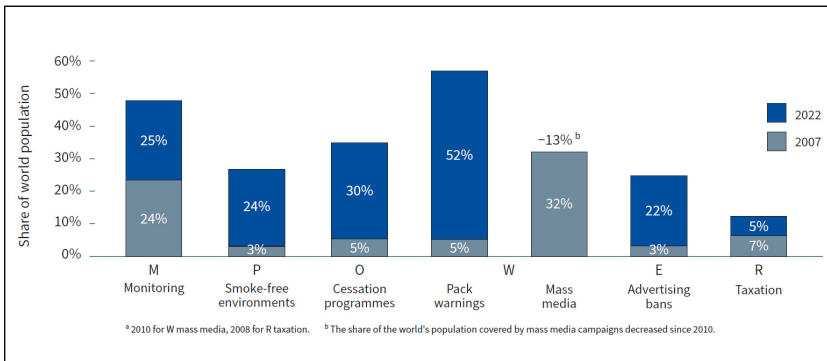
## 제2절 세계 담배규제 정책 현황

### 1. MPOWER 중심 담배규제 정책 이행 현황

세계보건기구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세계 담배규제 정책 현황 보고서인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23: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22년 기간 동안 MPOWER 정책을 이행하는 국가가 증가해 왔고 분야별로는 담뱃갑 경고문을 제도화하는 국가가 103개국이었다. 그러나 대중매체 금연 캠페인의 영향을 받는 세계 국민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WHO, 2023a).

[그림 2-3] 담배규제 정책의 보호를 받는 세계 국민의 비율

(단위: %)



주: 1. 2007년 자료 중 건강 경고는 2010년의 자료를 사용함. 담배가격 정책은 2008년의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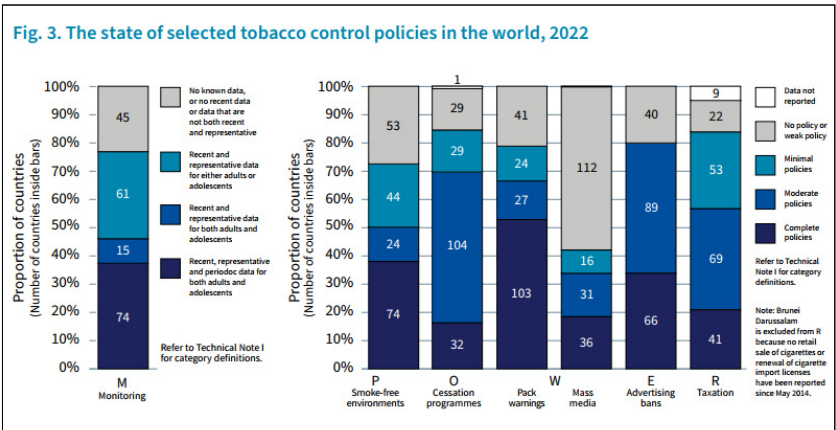
2. 대중매체 금연 캠페인의 영향을 받는 세계 국민의 비율은 2010년 이래로 감소하였음.

출처: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23: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WHO, 2023a, p.xxvii.

담배 사용 현황과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은 국가의 소득 수준별로 차이가 있었고 고소득 국가에서 이행률이 높았다.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정책의 분야에서도 국가의 소득 수준별 차이가 있었으나 중간소득 국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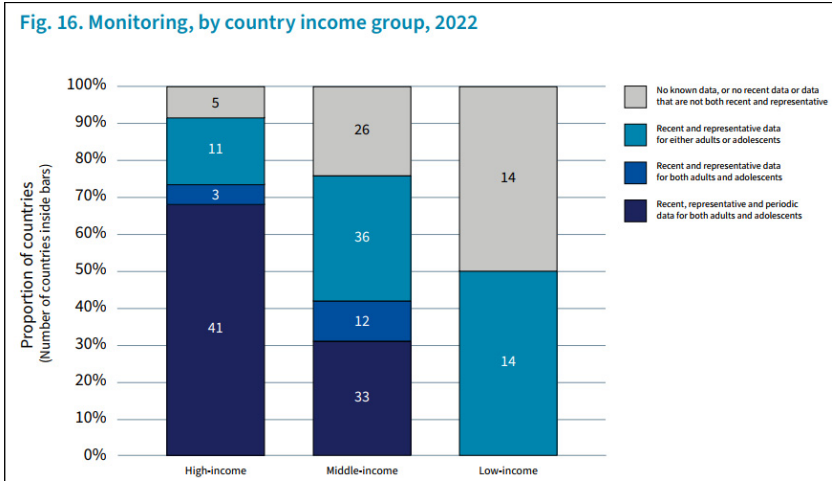
서 모든 공공장소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시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금연지원서비스의 경우는 고소득 국가 그룹에서 시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건강 경고문의 제도화의 경우도 고소득 국가 그룹에서 확대된 경고문 시행 국가의 비율이 높았다. 담배회사의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정책 분야에서는 TV, 라디오, 인쇄물 광고 금지와 직간접 광고를 일부 제한하는 국가가 많았고 중간소득 국가의 이행률이 높았다. 담뭷세 인상 분야의 이행 기준은 소매가격 대비 담뭷세의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 75%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는 경우는 고소득 국가 그룹에서 많았고, 중간소득 국가 그룹에서는 50에서 70% 비율의 경우와 25에서 50% 비율이 많았다.

[그림 2-4] 2022년 세계 담배 정책 규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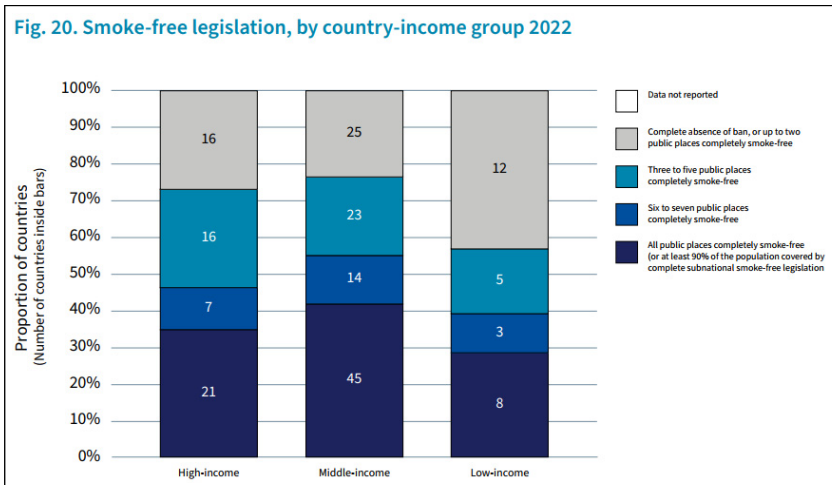
출처: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23: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WHO, 2023a, p.xxvi.

[그림 2-5] 2022년 담배 사용 및 정책 모니터링, 국가 소득 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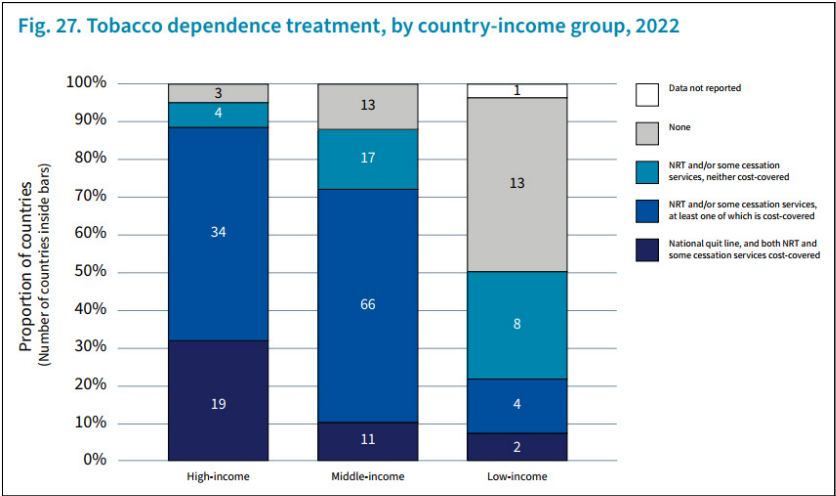
출처: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23: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WHO, 2023a, p.48.

[그림 2-6] 2022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 국가 소득 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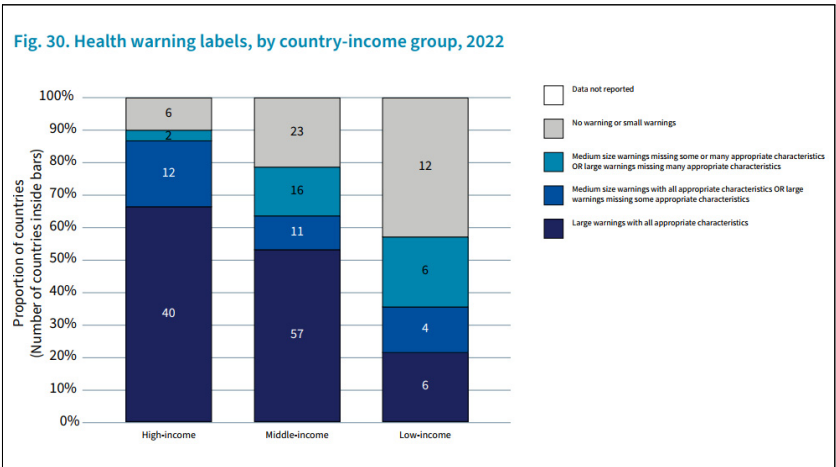
출처: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23: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WHO, 2023a, p.53.

[그림 2-7] 2022년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국가 소득 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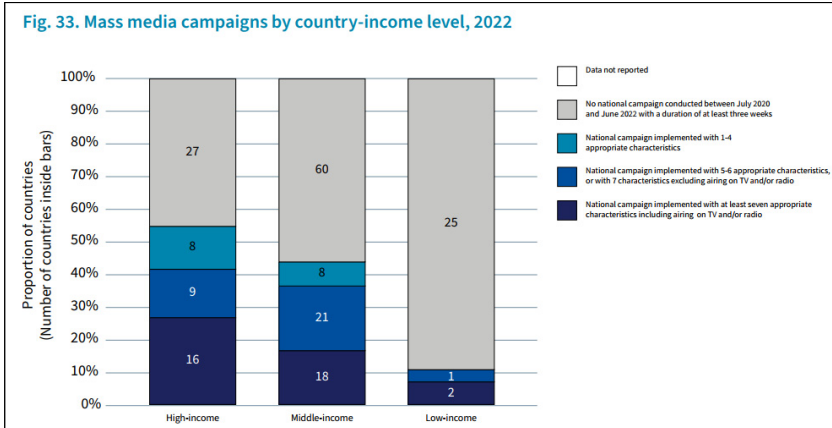
출처: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23: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WHO, 2023a, p.63.

[그림 2-8] 2022년 담배의 위험성 경고를 위한 건강 경고 부착, 국가 소득 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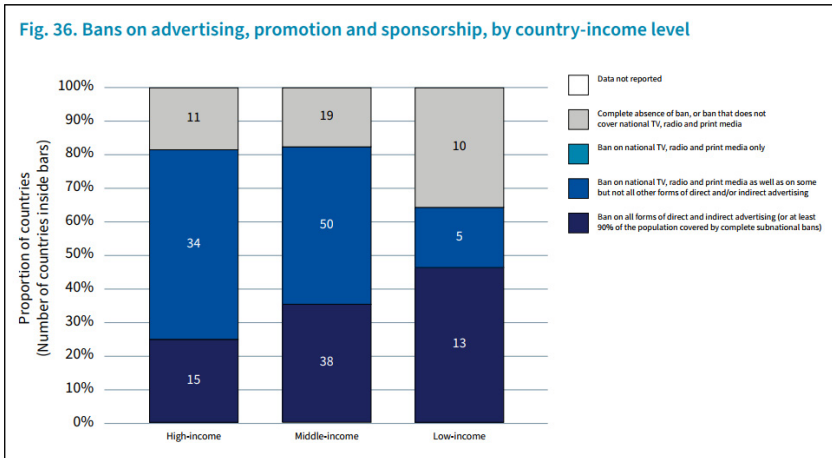
출처: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23: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WHO, 2023a, p.95.

[그림 2-9] 2022년 담배의 위험성 경고를 위한 금연 캠페인, 국가 소득 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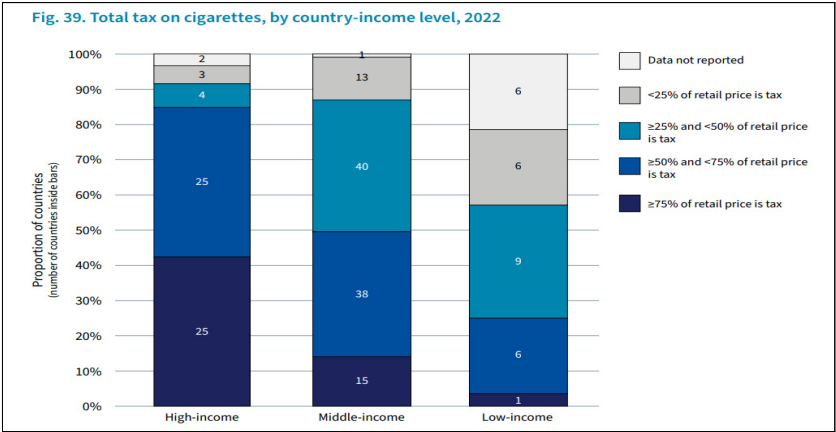
출처: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23: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WHO, 2023a, p.73.

[그림 2-10]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국가 소득 수준별



출처: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23: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WHO, 2023a, p.77.

[그림 2-11] 2022년 담뭍세 인상, 국가 소득 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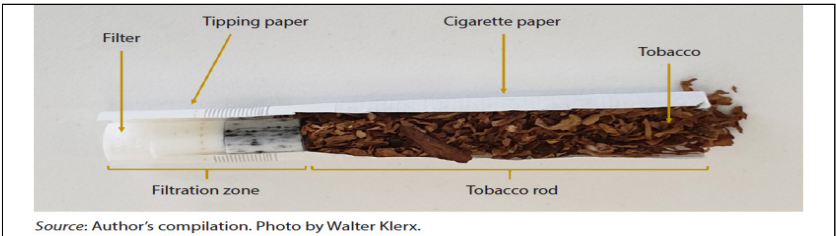


출처: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23: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WHO, 2023a, p.113.

## 2. 담배의 종류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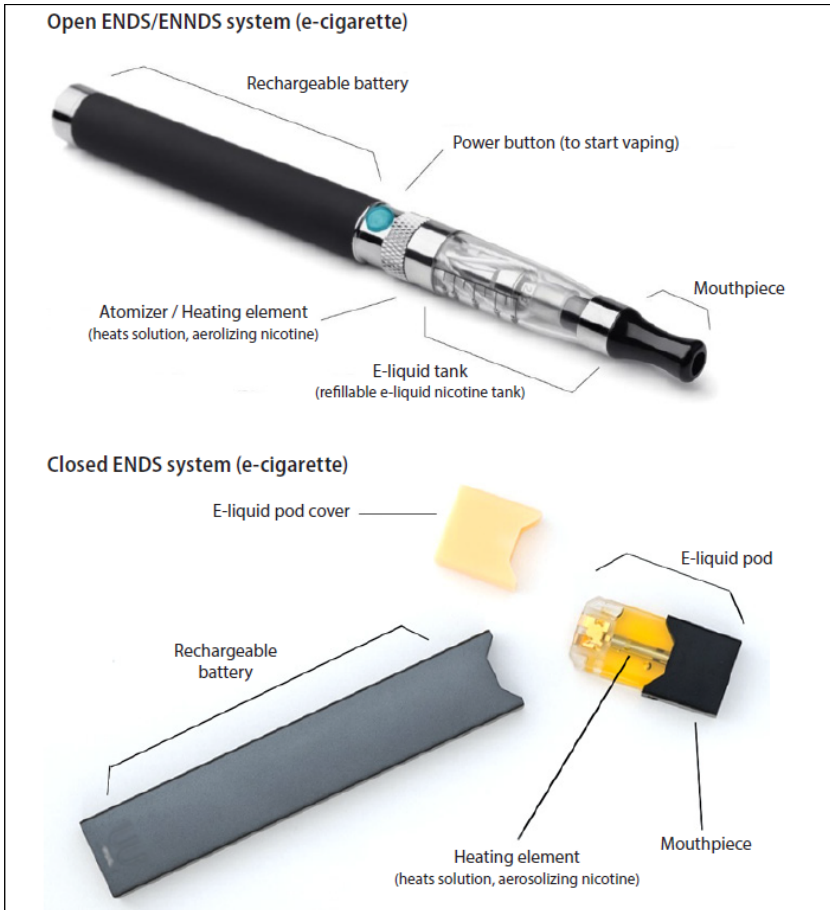
담배 제품의 종류는 전통적인 쥘련 외에도 쥘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롯한 흡연 담배와 무연담배 등 다양한 제품 형태가 있다. 전통적인 쥘련과 다른 형태로 니코틴을 흡입하도록 하는 전자담배들을 통칭하여 신종 담배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림 2-12] 담배 제품의 종류와 구성요소: 기계생산 쥘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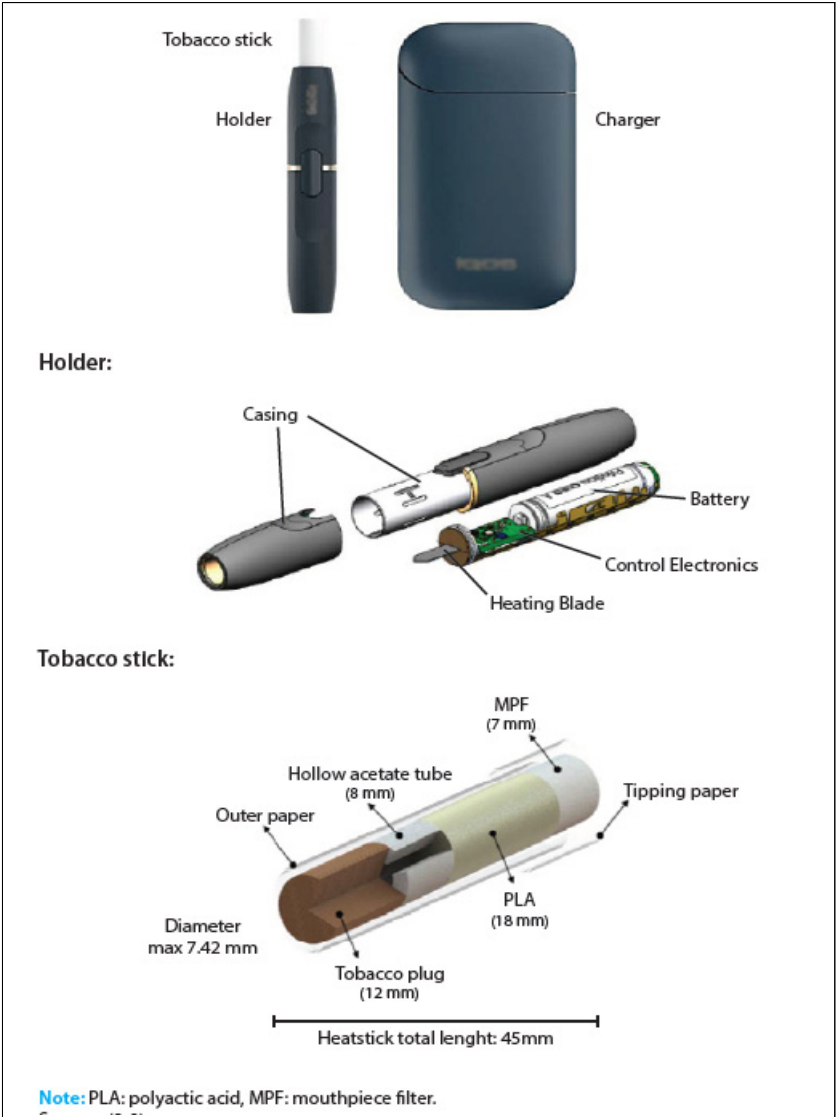
출처: “Component parts of a machine-made cigarette,” WHO. 2021, WHO technical manual on tobacco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p.167.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Licence: CC BY-NC-SA 3.0 IGO. 167.

[그림 2-13] 담배 제품의 종류와 구성요소: 액상형 전자담배



출처: "E-cigarettes and vapor products," King County, 2019(<https://www.kingcounty.gov/depts/health/tobacco/data/e-cigarettes.aspx>, accessed 9 October 2020). as cited in "WHO technical manual on tobacco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p.169. 에서 재인용

[그림 2-14] 담배 제품의 종류와 구성요소: 껍질형 전자담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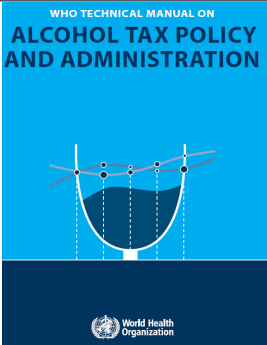
출처: "Tobacco heating system (IQOS) briefing document," Silver Spring: US Federal Drug Administration, 2018. 및 "Premarket tobacco product application: technical project lead review," Silver Spring: US Federal Drug Administration, 2017. as cited in "WHO technical manual on tobacco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p.170. 에서 재인용.

### 제3절 세계 담배가격 정책 현황

#### 1. 건강 위해 제품에 대한 조세 정책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1년 담뱃세 부과 정책에 대한 테크니컬 매뉴얼 ‘WHO Technical Manual on Tobacco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을 발간하였고, 2022년에는 가당제품 조세 정책에 대한 테크니컬 매뉴얼 ‘WHO Manual on Sugar Sweetened Beverage Taxation Policies to Promote Healthy Diets’을 발간했고, 2023년에는 알코올 세금 부과 정책에 대한 테크니컬 매뉴얼 ‘WHO Technical Manual on Alcohol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에 발간된 보건 조세 정책에 대한 지침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 지침서에서는 공중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건강 조세(Health tax)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였고 담배, 알코올, 가당제품, 화석연료 등이 포함되었다. 가당식품에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비만을 억제하고 2형 당뇨병 및 치아우식증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담배와 알코올 등 건강 위험요인을 증대시키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취약계층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며 동시에 정부의 재정 확보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금 징수를 회피하는 다양한 시도를 막는 국내적, 국제적 대책이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건강 위해 제품에 대한 조세 정책이 국가의 개발정책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정치적인 아젠다가 되어야 하고, 시민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산업체에서 이 같은 정책을 방해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기 때문에 법적, 행정적, 보건학적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WHO, 2019).

[그림 2-15]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위해 제품 대상 조세 정책에 대한 발간물 현황

| 담배(2021)                                                                          | 가당제품(2022)                                                                        | 알코올(2023)                                                                          |
|-----------------------------------------------------------------------------------|-----------------------------------------------------------------------------------|------------------------------------------------------------------------------------|
|  |  |  |

출처: “WHO technical manual on tobacco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WHO, 2021, WHO technical manual on tobacco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표지;  
 “WHO manual on sugar-sweetened beverage taxation policies to promote healthy diets,” WHO, 2022, WHO manual on sugar-sweetened beverage taxation policies to promote healthy diets, 표지;  
 “WHO technical manual on alcohol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WHO, 2023b, WHO technical manual on alcohol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표지.

## 2. 담배 제품에 대한 조세 정책

2021년 발간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 조세 정책 및 행정에 대한 테크니컬 매뉴얼(WHO, 2021)에서는 담배 제품에 대한 조세 정책으로 담배가격이 상승하면 흡연을 및 담배 소비량 감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정책전략을 제시해 주었다. 담배가격이 10% 인상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담배 소비량이 4% 감소하고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담배 소비량이 5% 감소한다는 효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담배 제품에 대한 조세 정책은 전체적인 담배규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세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종가세보다는 종량세에 비중을 둔 방식이 담배가격을 더 상승하게 할 수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플레이션 등 종량세 부과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국가의 사례를 제시하였다(WHO, 2021).

〈표 2-1〉 종량세와 증가세의 장단점 비교

| 구분     | 종량세                                                  | 증가세                                                                                 |
|--------|------------------------------------------------------|-------------------------------------------------------------------------------------|
| 과세표준   | ■ 제품 단위                                              | ■ 제품 가격(가치)                                                                         |
| 세율     | ■ 단위당 일정액                                            | ■ 제품가격 또는 가치의 일정 비율                                                                 |
| 외부비용   | ■ 높은 교정효과                                            | ■ 낮은 교정효과                                                                           |
| 역진성    | ■ 강한 역진성                                             | ■ 약한 역진성                                                                            |
| 세수 예측성 | ■ 높은 세수 안정성 및 예측성<br>※ 정확한 제품 단위 수만 확정되면<br>세수예측 가능  | ■ 낮은 세수 안정성 및 예측성<br>※ 가격변동에 민감하여 세수예측이<br>어려움                                      |
| 실질 세율  | ■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율 하락                                 | ■ 실질 세율 유지                                                                          |
| 이윤과세   | ■ 가격인상 ⇨ 기업이윤 증가                                     | ■ 가격인상 ⇨ 정부 수입 전환                                                                   |
| 행정 편의성 | ■ 낮은 행정비용<br>※ 제품 수량 확인 용이<br>■ 효율적인 징세<br>※ 조세회피 적음 | ■ 높은 세무행정 능력<br>※ 다양한 제품의 가격이나 가치의 파악<br>필요                                         |
| 조세회피   | ■ 산업의 가격전략과 무관<br>※ 모든 제품에 세액이 동일 적용                 | ■ 산업의 가격전략과 높은 상관성<br>※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해 제품가격<br>조정<br>※ 제조업자와의 가격협상 비용<br>※ 조세회피 감시 비용 |
| 가격 격차  | ■ 저가담배와 고가담배 간 가격 격차 축소<br>가능                        | ■ 저가담배와 고가담배 간 가격 격차 확대<br>가능                                                       |
| 품질개선   | ■ 품질개선에 유리                                           | ■ 품질개선에 불리                                                                          |
| 다양성    | ■ 다양성 증대                                             | ■ 다양성 감소                                                                            |

출처: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개선방안,” 이상훈, 신미정, 2023, 한국지방세연구원. p.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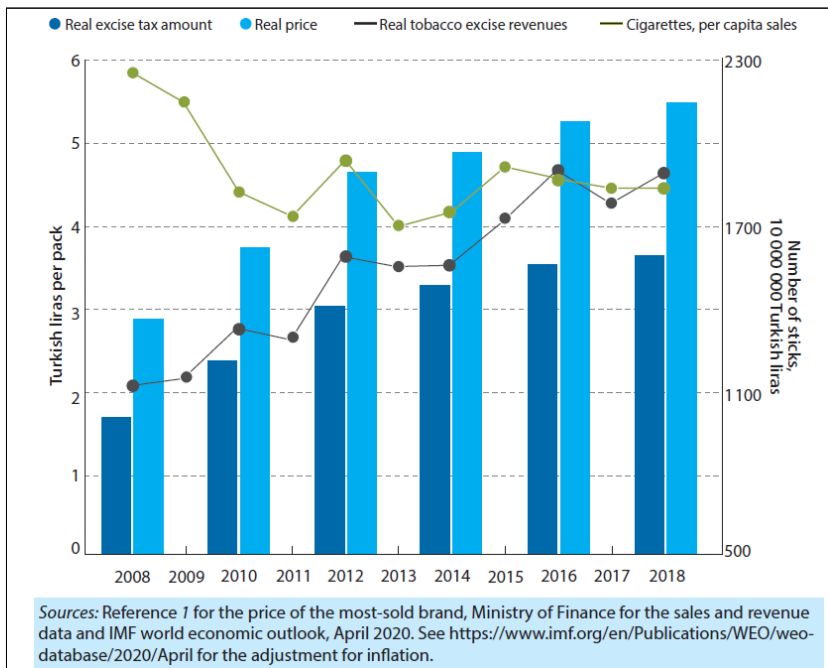
〈표 2-2〉 주요 국가의 종량세 보완 대책

| 구분   | 보완 대책                                            |
|------|--------------------------------------------------|
| 캐나다  | 2019년부터 연방정부의 담배세율을 5년마다 증액함                     |
| 콜롬비아 | 2019년부터 매년 증액함                                   |
| 프랑스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 갑당 평균 10유로가 되도록 증액함            |
| 온두라스 | 매년 말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증액함                             |
| 호주   | 매년 3월과 9월에 담배소비세를 증액함                            |
| 뉴질랜드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수치에 10%를 더해<br>증액함 |
| 스웨덴  |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증액함                                  |
| 영국   | 소매가 인덱스 대비 2% 인상함                                |
| 튀르키예 | 생산자 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인상함                               |

출처: “WHO technical manual on tobacco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WHO, 2021, pp.33-34.에서 번역하여 제시함.

담뱃세 부과 정책의 핵심은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수요에 대한 조세 정책의 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수요에 대한 조세의 영향을 수요 기반 탄력성이라고 한다.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 소매가격의 영향, 소매가격 대비 조세의 비중 등으로 조세 기반 탄력성이 결정된다. 튀르키예 정부의 경우 10년간의 조세 정책으로 담배가격이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 예산을 증액하여 활용하게 되었다. 2015년 튀르키예의 공중보건 지출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이 담뱃세에서 각출되었고 GDP의 1.5%에 해당하였다고 한다.

[그림 2-16] 담배가격 인상과 담배 소비 감소 추세: 튀르키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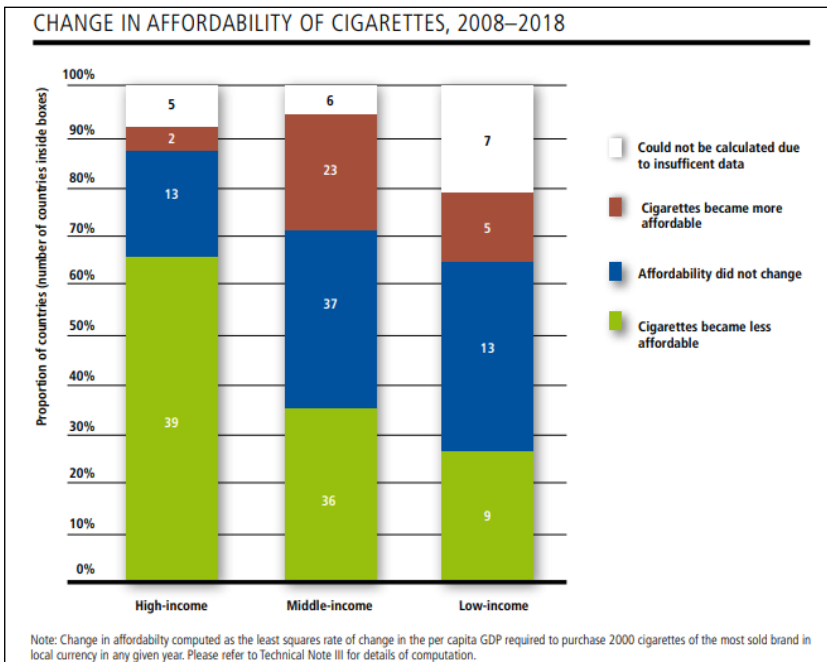
주: 2008년 대비 10년의 변화

출처: "WHO technical manual on tobacco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WHO, 2021, p.50.

담뱃세 부과 정책의 목표는 담배구매력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있다. 담배구매력은 1인당 GDP 기준 2,000개비의 담배 구매비용의 분율로 환산할 수 있다. 이 분율이 높으면 구매 가능성이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2-17]). 고소득 국가에서 구매력 감소의 현상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WHO, 2021).

[그림 2-17] 국가 소득 수준별 담배구매력 변화 국제비교

(단위: 응답국가 수)



주: 담배구매력 변화 산출 방법은 해당 연도에 가장 많이 팔린 권련담배 기준 2,000개비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1인당 GDP 변화율의 최소자승법으로 산출함. 성장률은 2018년을 포함한 4개년 이상의 자료로 산출함. 구매력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2008년에서 2018년의 기간 동안 변화의 유의성이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출처: “Change in Affordability of cigarettes, 2008–2018,” WHO, 2019,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9: 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p.110. <https://www.who.int/teams/health-promotion/tobacco-control/who-report-on-the-global-tobacco-epidemic-2019>

3. 담배 제품 유형별 가격과 과세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비준국의 담배규제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에 담배가격이 대체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지역은 감소하였고, 서태평양 지역도 근소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의 비율(Ratio)이 대부분 상승하였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세계보건기구의 권역별 결련 20개비당 담배가격 변화(2020년과 2023년)

| 구분                     | 2020        |              |       |                | 2023        |              |       |                |
|------------------------|-------------|--------------|-------|----------------|-------------|--------------|-------|----------------|
|                        | Lowest US\$ | Highest US\$ | Ratio | 2020년 보고한 국가 수 | Lowest US\$ | Highest US\$ | Ratio | 2023년 보고한 국가 수 |
| African                | 0.14        | 18.89        | 134.9 | 31             | 0.11        | 19.46        | 176.9 | 38             |
| Americas               | 3.15        | 15.61        | 4.96  | 23             | 3           | 22.28        | 7.42  | 24             |
| Eastern Mediter-ranean | 0.99        | 12.29        | 12.41 | 13             | 0.66        | 14.49        | 21.95 | 16             |
| European               | 0.65        | 18.79        | 28.91 | 34             | 0.65        | 23.95        | 36.84 | 41             |
| South-East Asia        | 1.5         | 21.05        | 14.03 | 6              | 4.33        | 14.18        | 3.27  | 6              |
| Western Pacific        | 3.54        | 21.31        | 6.02  | 16             | 0.28        | 20.96        | 74.86 | 22             |
| Total                  |             |              |       | 123            |             |              |       | 147            |

주: 2020년의 자료는 일부 국가의 보고 기준의 차이로 인해 WHO의 2021년의 통계와 다를 수 있음.  
출처: “2023 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WHO, 2023c, p.26.에서 일부 번역하여 제시함.

액상형 전자담배(Closed ENDS)의 가격은 보고된 50개 국가들의 가장 낮은 가격 기준으로 1밀리리터당 평균 3.2달러였다. 과세 비율은 종량세의 경우 최대 16.5%였다. 종가세 비중은 다수의 국가에서 부과하지 않았으나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48.8%였다. 총세금 비율은 평균 22%였다.

〈표 2-4〉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과 과세 현황(Closed ENDS)

| 구분                              | In US\$ at official<br>exchange rates | Specific excise | AD Valorem<br>excise | Total tax |
|---------------------------------|---------------------------------------|-----------------|----------------------|-----------|
| 평균                              | 3.21                                  | 3.72%           | 2.01%                | 22.00%    |
| Canada                          | 3.37                                  | 15.43%          | 0.00%                | 28.43%    |
| Peru                            | 6.79                                  | 0.00%           | 0.00%                | 15.25%    |
| Bahrain                         | 6.58                                  | 0.00%           | 47.62%               | 76.71%    |
| Morocco                         | 4.86                                  | 2.00%           | 0.00%                | 19.17%    |
| United Arab<br>Emirates         | 4.54                                  | 0.00%           | 48.78%               | 54.54%    |
| Armenia                         | 2.08                                  | 0.00%           | 0.00%                | 17.67%    |
| Austria                         | 6.19                                  | 0.00%           | 0.00%                | 16.67%    |
| Azerbaijan                      | 6.27                                  | 0.94%           | 0.00%                | 16.19%    |
| Belarus                         | 1.91                                  | 0.00%           | 0.00%                | 17.67%    |
| Belgium                         | 1.78                                  | 0.00%           | 0.00%                | 17.36%    |
| Bosnia and<br>Herzegovina       | 1.56                                  | 0.00%           | 0.00%                | 14.53%    |
| Bulgaria                        | 1.70                                  | 0.00%           | 0.00%                | 16.67%    |
| Croatia                         | 1.70                                  | 0.00%           | 0.00%                | 20.00%    |
| Cyprus                          | 1.99                                  | 6.15%           | 0.00%                | 22.12%    |
| Czechia                         | 3.39                                  | 0.00%           | 0.00%                | 17.36%    |
| Denmark                         | 1.54                                  | 13.33%          | 0.00%                | 33.33%    |
| Estonia                         | 2.25                                  | 0.00%           | 0.00%                | 16.67%    |
| France                          | 2.21                                  | 0.00%           | 0.00%                | 16.67%    |
| Georgia                         | 3.98                                  | 1.82%           | 0.00%                | 17.07%    |
| Germany                         | 2.03                                  | 8.05%           | 0.00%                | 24.01%    |
| Greece                          | 1.53                                  | 6.67%           | 0.00%                | 26.02%    |
| Ireland                         | 1.88                                  | 0.00%           | 0.00%                | 18.70%    |
| Italy                           | 2.28                                  | 5.87%           | 0.00%                | 23.90%    |
| Kazakhstan                      | 0.98                                  | 1.71%           | 0.00%                | 12.42%    |
| Kyrgyzstan                      | 0.96                                  | 3.75%           | 0.00%                | 15.46%    |
| Latvia                          | 3.06                                  | 5.33%           | 0.00%                | 22.69%    |
| Lithuania                       | 3.06                                  | 5.00%           | 0.00%                | 22.36%    |
| Luxembourg                      | 2.21                                  | 0.00%           | 0.00%                | 14.53%    |
| Malta                           | 3.74                                  | 0.00%           | 0.00%                | 15.25%    |
| Netherlands<br>(Kingdom of the) | 2.37                                  | 0.00%           | 0.00%                | 17.36%    |

40 담뱃세 부과 및 활용 정책의 국제비교: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 구분                                                   | In US\$ at official exchange rates | Specific excise | AD Valorem excise | Total tax |
|------------------------------------------------------|------------------------------------|-----------------|-------------------|-----------|
| Poland                                               | 1.35                               | 8.80%           | 0.00%             | 27.50%    |
| Portugal                                             | 2.21                               | 14.88%          | 0.00%             | 33.58%    |
| Romania                                              | 2.55                               | 5.19%           | 0.00%             | 21.16%    |
| Russian Federation                                   | 2.06                               | 13.46%          | 0.00%             | 30.12%    |
| Serbia                                               | 1.87                               | 3.26%           | 0.00%             | 19.93%    |
| Slovakia                                             | 1.85                               | 0.00%           | 0.00%             | 16.67%    |
| Slovenia                                             | 2.35                               | 7.80%           | 0.00%             | 25.84%    |
| Spain                                                | 2.01                               | 0.00%           | 0.00%             | 17.36%    |
| Sweden                                               | 4.34                               | 9.06%           | 0.00%             | 29.06%    |
| Switzerland                                          | 4.15                               | 0.00%           | 0.00%             | 7.15%     |
| North Macedonia                                      | 8.20                               | 0.57%           | 0.00%             | 15.82%    |
| Ukraine                                              | 1.94                               | 4.23%           | 0.00%             | 25.65%    |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2.15                               | 0.00%           | 0.00%             | 16.67%    |
| Uzbekistan                                           | 1.53                               | 3.30%           | 0.00%             | 22.34%    |
| Indonesia                                            | 2.60                               | 15.51%          | 0.00%             | 24.61%    |
| Mongolia                                             | 9.47                               | 0.00%           | 0.00%             | 15.09%    |
| New Zealand                                          | 9.43                               | 0.00%           | 0.00%             | 13.04%    |
| Philippines                                          | 5.11                               | 16.49%          | 0.00%             | 27.81%    |

주: 가격 기준 PRICE OF 1 ML OF E-LIQUID OF THE CHEAPEST BRAND

출처: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1ml of e-liquid of the cheapest brand of a closed rechargeable ENDS/ENNDS system,” WHO, 2024a, Global health obervatory.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national-taxes-and-retail-price-for-1-ml-of-e-liquid-of-the-cheapest-brand-of-a-closed-rechargeable-ends-ennds-system>.에서 2025. 2. 25. 인출하여 저자가 표로 재구성함.

액상형 전자담배(Open ENDS)의 가격은 보고된 50개 국가들의 가장 낮은 가격 기준으로 10밀리리터당 평균 3.5달러였다. 총세금 비율은 34.8%였다. 종량세 비율은 평균 17%였다. 종가세 비율은 1.6%였다.

〈표 2-5〉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과 과세 현황(Open ENDS)

| 구분                        | In US\$ at official<br>exchange rates | Specific<br>excise | AD Valorem<br>excise | Total tax |
|---------------------------|---------------------------------------|--------------------|----------------------|-----------|
| 평균                        | 3.50                                  | 17.00%             | 1.56%                | 34.77%    |
| Zambia                    | 1.22                                  | 0.00%              | 29.00%               | 44.79%    |
| Egypt                     | 1.59                                  | 66.67%             | 0.00%                | 66.67%    |
| Morocco                   | 3.24                                  | 15.00%             | 0.00%                | 32.17%    |
| Pakistan                  | 1.39                                  | 30.00%             | 0.00%                | 49.53%    |
| United Arab<br>Emirates   | 1.82                                  | 0.00%              | 48.78%               | 54.54%    |
| Albania                   | 9.83                                  | 10.67%             | 0.00%                | 27.33%    |
| Austria                   | 6.12                                  | 0.00%              | 0.00%                | 16.67%    |
| Azerbaijan                | 4.51                                  | 13.04%             | 0.00%                | 28.30%    |
| Belarus                   | 0.95                                  | 0.00%              | 0.00%                | 17.67%    |
| Belgium                   | 3.31                                  | 0.00%              | 0.00%                | 17.36%    |
| Bosnia and<br>Herzegovina | 2.61                                  | 0.00%              | 0.00%                | 14.53%    |
| Bulgaria                  | 1.56                                  | 0.00%              | 0.00%                | 16.67%    |
| Croatia                   | 3.39                                  | 0.00%              | 0.00%                | 20.00%    |
| Cyprus                    | 5.40                                  | 22.64%             | 0.00%                | 38.61%    |
| Czechia                   | 2.44                                  | 0.00%              | 0.00%                | 17.36%    |
| Denmark                   | 3.42                                  | 60.00%             | 0.00%                | 80.00%    |
| Estonia                   | 5.00                                  | 0.00%              | 0.00%                | 16.67%    |
| Finland                   | 7.65                                  | 40.00%             | 0.00%                | 59.35%    |
| France                    | 3.50                                  | 0.00%              | 0.00%                | 16.67%    |
| Georgia                   | 2.89                                  | 25.00%             | 0.00%                | 40.25%    |
| Germany                   | 4.03                                  | 40.51%             | 0.00%                | 56.47%    |
| Greece                    | 5.61                                  | 18.18%             | 0.00%                | 37.54%    |
| Hungary                   | 2.28                                  | 35.00%             | 0.00%                | 56.26%    |
| Iceland                   | 3.61                                  | 0.00%              | 0.00%                | 19.35%    |

42 담뱃세 부과 및 활용 정책의 국제비교: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 구분                                                         | In US\$ at official<br>exchange rates | Specific<br>excise | AD Valorem<br>excise | Total tax |
|------------------------------------------------------------|---------------------------------------|--------------------|----------------------|-----------|
| Ireland                                                    | 2.55                                  | 0.00%              | 0.00%                | 18.70%    |
| Italy                                                      | 3.04                                  | 44.06%             | 0.00%                | 62.09%    |
| Kazakhstan                                                 | 1.68                                  | 10.00%             | 0.00%                | 20.71%    |
| Kyrgyzstan                                                 | 1.6                                   | 22.50%             | 0.00%                | 34.21%    |
| Latvia                                                     | 4.58                                  | 35.63%             | 0.00%                | 52.99%    |
| Lithuania                                                  | 3.06                                  | 50.00%             | 0.00%                | 67.36%    |
| Luxembourg                                                 | 4.15                                  | 0.00%              | 0.00%                | 14.53%    |
| Malta                                                      | 3.57                                  | 0.00%              | 0.00%                | 15.25%    |
| Montenegro                                                 | 4.25                                  | 16.80%             | 0.00%                | 34.36%    |
| Netherlands<br>(Kingdom of the)                            | 2.8                                   | 0.00%              | 0.00%                | 17.36%    |
| Poland                                                     | 3.45                                  | 34.38%             | 0.00%                | 53.07%    |
| Portugal                                                   | 5.1                                   | 6.46%              | 0.00%                | 25.16%    |
| Republic of Moldova                                        | 2.07                                  | 0.00%              | 0.00%                | 16.67%    |
| Romania                                                    | 3.51                                  | 37.65%             | 0.00%                | 53.61%    |
| Serbia                                                     | 3.47                                  | 17.54%             | 0.00%                | 34.21%    |
| Slovakia                                                   | 2.55                                  | 0.00%              | 0.00%                | 16.67%    |
| Slovenia                                                   | 3.98                                  | 46.15%             | 0.00%                | 64.19%    |
| Spain                                                      | 3.01                                  | 0.00%              | 0.00%                | 17.36%    |
| Sweden                                                     | 6.77                                  | 57.97%             | 0.00%                | 77.97%    |
| Switzerland                                                | 5.77                                  | 0.00%              | 0.00%                | 7.15%     |
| North Macedonia                                            | 2.47                                  | 18.79%             | 0.00%                | 35.46%    |
| Ukraine                                                    | 1.99                                  | 41.28%             | 0.00%                | 62.71%    |
| United Kingdom of<br>Great Britain and<br>Northern Ireland | 3.65                                  | 0.00%              | 0.00%                | 16.67%    |
| Uzbekistan                                                 | 3.36                                  | 15.00%             | 0.00%                | 34.04%    |
| Indonesia                                                  | 1.56                                  | 19.07%             | 0.00%                | 28.17%    |
| New Zealand                                                | 3.56                                  | 0.00%              | 0.00%                | 13.04%    |

주: 가격 기준 PRICE OF 10 ML OF E-LIQUID OF THE CHEAPEST BRAND  
출처: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10ml of e-liquid of the cheapest brand of an open ENDS/ENNDS system” WHO, 2024b,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national-taxes-and-retail-price-for-10-ml-of-e-liquid-of-the-cheapest-brand-of-an-open-ends-ennds-system>.  
에서 2025. 2. 25. 인출하여 저자가 표로 재구성함.

액상형 전자담배(Disposable ENDS)의 현황을 보고한 48개국의 가장 낮은 가격 기준으로 1밀리리터당 평균은 3.5달러였다. 총세금 비율은 평균 20.8%였으나 종량세 및 종가세의 비율은 각각 2.5%, 2.4% 수준이었다.

〈표 2-6〉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과 과세 현황(Disposable ENDS)

| 구분                     | In US\$ at official exchange rates | Specific excise | AD Valorem excise | Total tax |
|------------------------|------------------------------------|-----------------|-------------------|-----------|
| 평균                     | 3.45                               | 2.54%           | 2.44%             | 20.81%    |
| Canada                 | 3.71                               | 10.52%          | 0.00%             | 23.52%    |
| Peru                   | 5.87                               | 0.00%           | 0.00%             | 15.25%    |
| Bahrain                | 3.25                               | 0.00%           | 47.62%            | 76.71%    |
| Egypt                  | 3.4                                | 3.11%           | 0.00%             | 3.11%     |
| Lebanon                | 0.12                               | 0.00%           | 20.56%            | 31.47%    |
| Morocco                | 0.97                               | 10.00%          | 0.00%             | 27.17%    |
| United Arab Emirates   | 2.09                               | 0.00%           | 48.78%            | 54.54%    |
| Armenia                | 2.55                               | 0.00%           | 0.00%             | 17.67%    |
| Austria                | 4.03                               | 0.00%           | 0.00%             | 16.67%    |
| Belarus                | 2.54                               | 0.00%           | 0.00%             | 17.67%    |
| Belgium                | 4.08                               | 0.00%           | 0.00%             | 17.36%    |
| Bosnia and Herzegovina | 3.26                               | 0.00%           | 0.00%             | 14.53%    |
| Bulgaria               | 3.1                                | 0.00%           | 0.00%             | 16.67%    |
| Croatia                | 3.06                               | 0.00%           | 0.00%             | 20.00%    |
| Cyprus                 | 3.57                               | 3.43%           | 0.00%             | 19.39%    |
| Czechia                | 3.29                               | 0.00%           | 0.00%             | 17.36%    |
| Denmark                | 4.38                               | 7.81%           | 0.00%             | 27.81%    |
| Estonia                | 2.44                               | 0.00%           | 0.00%             | 16.67%    |
| Finland                | 5.09                               | 6.01%           | 0.00%             | 25.36%    |
| France                 | 2.82                               | 0.00%           | 0.00%             | 16.67%    |
| Germany                | 3.54                               | 4.60%           | 0.00%             | 20.57%    |
| Greece                 | 2.8                                | 3.64%           | 0.00%             | 22.99%    |
| Iceland                | 4.42                               | 0.00%           | 0.00%             | 19.35%    |
| Ireland                | 3.57                               | 0.00%           | 0.00%             | 18.70%    |

44 담뱃세 부과 및 활용 정책의 국제비교: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 구분                              | In US\$ at official<br>exchange rates | Specific<br>excise | AD Valorem<br>excise | Total tax |
|---------------------------------|---------------------------------------|--------------------|----------------------|-----------|
| Italy                           | 3.82                                  | 3.50%              | 0.00%                | 21.53%    |
| Kyrgyzstan                      | 1.12                                  | 3.22%              | 0.00%                | 14.93%    |
| Latvia                          | 2.29                                  | 7.11%              | 0.00%                | 24.47%    |
| Lithuania                       | 2.03                                  | 7.52%              | 0.00%                | 24.87%    |
| Malta                           | 3.8                                   | 0.00%              | 0.00%                | 15.25%    |
| Montenegro                      | 3.31                                  | 2.15%              | 0.00%                | 19.71%    |
| Netherlands<br>(Kingdom of the) | 3.03                                  | 0.00%              | 0.00%                | 17.36%    |
| Poland                          | 3.24                                  | 3.67%              | 0.00%                | 22.37%    |
| Portugal                        | 4.07                                  | 8.09%              | 0.00%                | 26.78%    |
| Republic of Moldova             | 4.14                                  | 0.00%              | 0.00%                | 16.67%    |
| Romania                         | 2.58                                  | 5.12%              | 0.00%                | 21.09%    |
| Serbia                          | 3.8                                   | 1.60%              | 0.00%                | 18.27%    |
| Slovakia                        | 2.8                                   | 0.00%              | 0.00%                | 16.67%    |
| Slovenia                        | 3.56                                  | 5.15%              | 0.00%                | 23.18%    |
| Spain                           | 4.03                                  | 0.00%              | 0.00%                | 17.36%    |
| Sweden                          | 3.88                                  | 10.13%             | 0.00%                | 30.13%    |
| Switzerland                     | 4.67                                  | 0.00%              | 0.00%                | 7.15%     |
| North Macedonia                 | 3.32                                  | 1.40%              | 0.00%                | 18.07%    |
| Ukraine                         | 2.63                                  | 3.12%              | 0.00%                | 24.55%    |
| Uzbekistan                      | 1.73                                  | 0.00%              | 0.00%                | 13.04%    |
| Indonesia                       | 3.6                                   | 11.20%             | 0.00%                | 20.30%    |
| Mongolia                        | 3                                     | 0.00%              | 0.00%                | 15.09%    |
| Nauru                           | 6.57                                  | 0.00%              | 0.00%                | 0.00%     |
| New Zealand                     | 10.39                                 | 0.00%              | 0.00%                | 13.04%    |

주: 가격 기준 PRICE OF 1 ML OF E-LIQUID OF THE CHEAPEST BRAND

출처: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1ml of e-liquid of the cheapest brand of a closed disposable ENDS/ENDS system, globally,” WHO, 2024c,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national-taxes-and-retail-price-for-1-ml-of-e-liquid-of-the-cheapest-brand-of-a-closed-disposable-ends-ennds-system--globally>.에서 2025. 2. 25. 인출하여 저자가 표로 재구성함.

필련형 전자담배 현황을 보고한 54개국의 평균 가격은 20개비당 3.96 달러였다. 종량세 비중은 평균 21.5%였다. 종가세 비율은 평균 7.2%였다. 총세금 비율은 44.5%였다. 다른 종류의 세금 중 부가가치세의 비율이 평균 14.9% 높았다.

〈표 2-7〉 필련형 전자담배 가격과 과세 현황

| 구분                     | In US\$ at official exchange rates | Specific excise | AD Valorem excise | Total tax |
|------------------------|------------------------------------|-----------------|-------------------|-----------|
| 평균                     | 3.96                               | 21.54%          | 7.15%             | 44.53%    |
| South Africa           | 2.36                               | 38.13%          | 0.00%             | 54.17%    |
| Zambia                 | 2.44                               | 5.03%           | 0.00%             | 12.13%    |
| Colombia               | 1.71                               | 37.26%          | 10.00%            | 63.23%    |
| Bahrain                | 5.32                               | 0.00%           | 47.62%            | 76.71%    |
| Egypt                  | 2.12                               | 21.00%          | 0.00%             | 21.00%    |
| Lebanon                | 1.76                               | 0.00%           | 46.26%            | 57.17%    |
| Morocco                | 3.4                                | 25.71%          | 14.40%            | 64.79%    |
| Tunisia                | 2.8                                | 2.84%           | 22.35%            | 49.30%    |
| United Arab Emirates   | 5.45                               | 0.00%           | 48.78%            | 73.54%    |
| Albania                | 2.8                                | 12.66%          | 0.00%             | 29.32%    |
| Armenia                | 1.84                               | 7.20%           | 0.00%             | 25.87%    |
| Austria                | 5.3                                | 17.19%          | 0.00%             | 33.86%    |
| Azerbaijan             | 2.24                               | 7.37%           | 0.00%             | 22.62%    |
| Belarus                | 1.78                               | 21.97%          | 0.00%             | 42.64%    |
| Bosnia and Herzegovina | 2.97                               | 12.80%          | 0.00%             | 27.33%    |
| Bulgaria               | 2.87                               | 25.42%          | 0.00%             | 42.08%    |
| Croatia                | 3.53                               | 32.31%          | 0.00%             | 52.31%    |
| Cyprus                 | 4.08                               | 22.50%          | 0.00%             | 38.47%    |
| Czechia                | 4.47                               | 15.89%          | 0.00%             | 33.24%    |
| Denmark                | 6.3                                | 19.58%          | 0.00%             | 39.58%    |
| Estonia                | 4.59                               | 13.59%          | 0.00%             | 30.25%    |
| France                 | 7.65                               | 2.50%           | 51.40%            | 70.57%    |
| Georgia                | 2.53                               | 24.29%          | 30.00%            | 71.94%    |
| Germany                | 6.63                               | 32.30%          | 13.30%            | 61.57%    |
| Greece                 | 4.08                               | 23.51%          | 0.00%             | 42.86%    |
| Hungary                | 3.79                               | 46.70%          | 0.00%             | 67.96%    |

46 담뱃세 부과 및 활용 정책의 국제비교: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 구분                                                         | In US\$ at official<br>exchange rates | Specific<br>excise | AD Valorem<br>excise | Total tax |
|------------------------------------------------------------|---------------------------------------|--------------------|----------------------|-----------|
| Israel                                                     | 7.96                                  | 30.23%             | 39.44%               | 84.20%    |
| Italy                                                      | 5.1                                   | 21.50%             | 0.00%                | 39.54%    |
| Kazakhstan                                                 | 1.43                                  | 32.74%             | 0.00%                | 43.45%    |
| Kyrgyzstan                                                 | 1.41                                  | 30.77%             | 0.00%                | 45.48%    |
| Latvia                                                     | 4.9                                   | 25.88%             | 0.00%                | 43.23%    |
| Lithuania                                                  | 4.08                                  | 22.80%             | 0.00%                | 40.16%    |
| Monaco                                                     | 7.65                                  | .                  | ..                   | 0.00%     |
| Montenegro                                                 | 2.86                                  | 21.43%             | 0.00%                | 44.78%    |
| Netherlands<br>(Kingdom of the)                            | 6.12                                  | 16.09%             | 0.00%                | 33.45%    |
| Poland                                                     | 3.34                                  | 12.06%             | 0.00%                | 30.76%    |
| Portugal                                                   | 4.59                                  | 11.27%             | 15.00%               | 44.97%    |
| Republic of Moldova                                        | 2.07                                  | 47.95%             | 0.00%                | 64.62%    |
| Romania                                                    | 3.72                                  | 19.83%             | 0.00%                | 35.80%    |
| Russian Federation                                         | 2.61                                  | 28.27%             | 0.00%                | 44.93%    |
| Serbia                                                     | 2.96                                  | 10.81%             | 0.00%                | 27.47%    |
| Slovakia                                                   | 4.49                                  | 21.82%             | 0.00%                | 38.48%    |
| Slovenia                                                   | 4.08                                  | 15.75%             | 0.00%                | 33.78%    |
| Spain                                                      | 4.44                                  | 0.00%              | 28.40%               | 45.76%    |
| Sweden                                                     | 5.1                                   | 23.09%             | 0.00%                | 43.09%    |
| Switzerland                                                | 8.4                                   | 0.00%              | 12.00%               | 20.58%    |
| North Macedonia                                            | 2.49                                  | 14.20%             | 0.00%                | 29.45%    |
| Ukraine                                                    | 2.05                                  | 46.60%             | 0.00%                | 68.03%    |
| United Kingdom of<br>Great Britain and<br>Northern Ireland | 6.09                                  | 32.43%             | 0.00%                | 49.09%    |
| Uzbekistan                                                 | 1.42                                  | 12.00%             | 0.00%                | 31.04%    |
| Indonesia                                                  | 1.87                                  | 58.07%             | 0.00%                | 67.17%    |
| New Zealand                                                | 11.75                                 | 38.97%             | 0.00%                | 52.02%    |
| Philippines                                                | 2.51                                  | 21.43%             | 0.00%                | 32.14%    |
| Republic of Korea                                          | 3.45                                  | 57.68%             | 0.00%                | 66.77%    |

주: 가격 기준. RETAIL PRICE OF 20 STICKS OF THE HEATED TOBACCO PRODUCT  
출처: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20 sticks of heated tobacco products,” WHO, 2024d,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national-taxes-and-retail-price-for-20-sticks-of-heated-tobacco-products>.에서 2025. 2. 25. 인출하여 저자가 표로 재구성함.

무연담배 현황을 보고한 국가 15개국의 주요 담배 유형은 씹는 담배, 스너프, 노우즈 타바코, 모이스트 스너프, 스누스, 카이니, 드라이 스너프 등이 있었다. 무연담배 20그램당 평균 6.4달러였다. 총세금 비율은 39.4%였다. 종량세와 종가세의 비율은 각각 15.1%, 10.0%였다.

〈표 2-8〉 무연담배 종류별 가격과 과세 현황

| 국가               | 담배 종류           | In US\$ at official exchange rates | Specific excise | AD Valorem excise | Total tax |
|------------------|-----------------|------------------------------------|-----------------|-------------------|-----------|
| 평균               | 무연담배 20그램       | 6.4                                | 15.14%          | 9.97%             | 39.35%    |
| Zambia           | Chewing tobacco | 14.25                              | 2.87%           | 0.00%             | 9.97%     |
| Canada           | Chewing tobacco | 16.53                              | 50.51%          | 0.00%             | 58.74%    |
| Panama           | Chewing tobacco | 3.99                               | 0.00%           | 43.10%            | 56.90%    |
| Paraguay         | Snuff           | 2.91                               | 0.00%           | 2.58%             | 13.64%    |
| Peru             | Chewing tobacco | 1.56                               | 0.00%           | 5.10%             | 20.94%    |
| Suriname         | Snuff           | 2.57                               | 51.27%          | 0.00%             | 61.63%    |
| Sudan            | Moist snuff     | 0.05                               | 0.00%           | 0.00%             | 0.00%     |
| Hungary          | Chewing tobacco | 7.59                               | 16.52%          | 0.00%             | 37.78%    |
| Iceland          | Nose tobacco    | 10.38                              | 53.69%          | 0.00%             | 73.05%    |
| Norway           | Moist snuff     | 4.32                               | 42.95%          | 0.00%             | 62.95%    |
| Switzerland      | Snus            | 12.37                              | 0.00%           | 6.00%             | 14.23%    |
| Bangladesh       | Chewing tobacco | 1.06                               | 0.00%           | 55.00%            | 71.00%    |
| India            | Khaini          | 0.1                                | 0.00%           | 37.82%            | 59.69%    |
| Japan            | Dry snuff       | 12.38                              | 9.26%           | 0.00%             | 18.35%    |
| Marshall Islands | Chewing tobacco | 5.88                               | 0.00%           | 0.00%             | 31.35%    |

주: 가격 기준. RETAIL PRICE OF 20 GRAMS THE SMOKELESS TOBACCO PRODUCT.

출처: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20grams of smokeless tobacco products,”

WHO, 2024e,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national-taxes-and-retail-price-for-20-grams-of-smokeless-tobacco-products>. 2025. 2.

25. 인출 및 재구성함.

다른 흡연제품의 현황을 보고한 49개 국가의 담배 종류는 시가, 파이프 담배, 워터파이프 담배, 말아 피우는 담배 등이 있었다. 기준 함량에 대한 평균 가격은 5.2달러였다. 종량세 및 종가세 비율은 각각 25.5%, 14.3% 등이었다.

〈표 2-9〉 다른 흡연 담배 제품 가격과 과세 동향

| 국가                         | 제품 유형             | Base Quantity | In US\$ at official exchange rates | Specific excise | AD Valorem excise | Total tax |
|----------------------------|-------------------|---------------|------------------------------------|-----------------|-------------------|-----------|
| Belize                     | Cigarillos        | 1piece        | 0.25                               | 13.00%          | 0.00%             | 33.99%    |
| Canada                     | Cigar             | 1piece        | 1.65                               | 63.92%          | 0.00%             | 74.37%    |
| Panama                     | Waterpipe tobacco | 20g           | 1.6                                | 0.00%           | 42.39%            | 57.61%    |
| Paraguay                   | Cigar             | 1piece        | 11.29                              | 0.00%           | 1.71%             | 10.80%    |
| Peru                       | Cigar             | 1piece        | 0.89                               | 0.00%           | 5.26%             | 20.51%    |
| Suriname                   | Cigar             | 1piece        | 0.93                               | 14.24%          | 0.00%             | 23.27%    |
| Uruguay                    | Roll Your Own     | 20g           | 1.3                                | 33.48%          | 0.00%             | 51.52%    |
| Bahrain                    | Waterpipe tobacco | 20g           | 0.61                               | 0.00%           | 47.62%            | 80.93%    |
| Egypt                      | Waterpipe tobacco | 20g           | 0.45                               | 0.00%           | 59.77%            | 61.86%    |
| Iran (Islamic Republic of) | Waterpipe tobacco | 20g           | 4.76                               | 0.00%           | 0.00%             | 28.05%    |
| Jordan                     | Waterpipe tobacco | 20g           | 1.13                               | 16.25%          | 0.00%             | 30.04%    |
| Morocco                    | Waterpipe tobacco | 20g           | 2.18                               | 37.50%          | 11.71%            | 68.79%    |
| Oman                       | Waterpipe tobacco | 20g           | 0.94                               | 0.00%           | 55.56%            | 65.32%    |
| United Arab Emirates       | Waterpipe tobacco | 20g           | 1.14                               | 0.00%           | 48.78%            | 59.26%    |
| Andorra                    | Roll Your Own     | 20g           | 2.48                               | 34.11%          | 0.00%             | 38.41%    |

| 국가          | 제품 유형             | Base Quantity | In US\$ at official exchange rates | Specific excise | AD Valorem excise | Total tax |
|-------------|-------------------|---------------|------------------------------------|-----------------|-------------------|-----------|
| Austria     | Roll Your Own     | 20g           | 4.28                               | 66.72%          | 0.00%             | 83.39%    |
| Azerbaijan  | Cigarillos        | 1piece        | 0.53                               | 4.78%           | 0.00%             | 20.03%    |
| Belgium     | Roll Your Own     | 20g           | 4.24                               | 36.13%          | 31.50%            | 84.98%    |
| Finland     | Roll Your Own     | 20g           | 6.83                               | 19.86%          | 52.00%            | 91.21%    |
| France      | Roll Your Own     | 20g           | 9.7                                | 17.56%          | 49.10%            | 83.33%    |
| Georgia     | Roll Your Own     | 20g           | 0.87                               | 50.00%          | 0.00%             | 65.25%    |
| Germany     | Roll Your Own     | 20g           | 3.38                               | 29.94%          | 16.00%            | 61.91%    |
| Hungary     | Roll Your Own     | 20g           | 2.79                               | 44.87%          | 0.00%             | 66.13%    |
| Iceland     | Roll Your Own     | 20g           | 10.77                              | 51.78%          | 0.00%             | 71.14%    |
| Ireland     | Roll Your Own     | 20g           | 15.36                              | 55.49%          | 0.00%             | 74.19%    |
| Luxembourg  | Roll Your Own     | 20g           | 2.4                                | 16.60%          | 34.25%            | 65.38%    |
| Monaco      | Roll Your Own     | 20g           | 9.79                               | .               | .                 | 0.00%     |
| Norway      | Roll Your Own     | 20g           | 13.74                              | 44.30%          | 0.00%             | 64.30%    |
| Poland      | Roll Your Own     | 20g           | 2.13                               | 31.53%          | 32.05%            | 82.27%    |
| Portugal    | Roll Your Own     | 20g           | 5.56                               | 30.09%          | 15.00%            | 63.79%    |
| Slovenia    | Roll Your Own     | 20g           | 3.6                                | 27.20%          | 37.00%            | 82.24%    |
| Spain       | Roll Your Own     | 20g           | 3.99                               | 12.01%          | 20.72%            | 50.08%    |
| Switzerland | Roll Your Own     | 20g           | 4.95                               | 16.10%          | 25.00%            | 52.41%    |
| Türkiye     | Waterpipe tobacco | 20g           | 0.6                                | 3.41%           | 63.00%            | 81.66%    |

50 담뱃세 부과 및 활용 정책의 국제비교: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 국가                                                   | 제품 유형             | Base Quantity | In US\$ at official exchange rates | Specific excise | AD Valorem excise | Total tax |
|------------------------------------------------------|-------------------|---------------|------------------------------------|-----------------|-------------------|-----------|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Roll Your Own     | 20g           | 14.25                              | 51.68%          | 0.00%             | 68.35%    |
| Uzbekistan                                           | Waterpipe tobacco | 20g           | 1.58                               | 36.05%          | 0.00%             | 51.37%    |
| Bangladesh                                           | Bidi (non-fliter) | 20g           | 0.17                               | 0.00%           | 30.00%            | 46.00%    |
| India                                                | Bidi              | 20g           | 0.2                                | 0.13%           | 0.00%             | 22.01%    |
| Nepal                                                | Bidi              | 20g           | 0.14                               | 10.34%          | 0.00%             | 21.84%    |
| Sri Lanka                                            | Bidi              | 20g           | 0.18                               | 0.00%           | 0.00%             | 10.71%    |
| Thailand                                             | Roll Your Own     | 20g           | 0.37                               | 14.67%          | 0.00%             | 36.18%    |
| Australia                                            | Roll Your Own     | 20g           | 30.55                              | 73.85%          | 0.00%             | 82.94%    |
| Cook Islands                                         | Roll Your Own     | 20g           | 14.69                              | 62.12%          | 0.00%             | 72.33%    |
| Mongolia                                             | Pipe tobacco      | 20g           | 0.11                               | 18.26%          | 0.00%             | 44.80%    |
| New Zealand                                          | Roll Your Own     | 20g           | 30.59                              | 56.50%          | 0.00%             | 69.54%    |
| Papua New Guinea                                     | Roll Your Own     | 20g           | 9.2                                | 5.45%           | 0.00%             | 14.54%    |
| Philippines                                          | Cigar             | 1piece        | 0.31                               | 41.66%          | 6.80%             | 59.18%    |
| Singapore                                            | Ang Hoon          | 20g           | 12.44                              | 38.38%          | 0.00%             | 44.93%    |
| Tonga                                                | Roll Your Own     | 20g           | 3.99                               | 42.86%          | 0.00%             | 43.97%    |

출처: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other smoked tobacco products,” WHO, 2024f, Global health obervatory.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national-taxes-and-retail-price-for-other-smoked-tobacco-products>. 에서 2025. 2. 25. 인출하여 저자가 표로 재구성함.

## 제4절 담배규제와 담뱃세 부과 정책의 성과

### 1. WHO FCTC의 담배규제 성과의 개요<sup>2)</sup>

WHO FCTC 사무국에서 발간한 2023년의 성과보고서에서는 당사국들의 담배규제 이행 추진 성과에 대해 요약하였다. 협약 제2.1조(협약 및 프로토콜에서 요청되는 규제 이상의 정책)와 관련된 계획을 가진 국가들이 있었고, 이 계획에는 흡연율을 5% 미만으로 낮추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협약 제5.1조(일반적 의무)와 관련해서 점차 많은 국가들이 종합적인 다부문 간의 협력을 동반하는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내용은 담배 산업으로부터 공중보건 정책을 보호하는 것이며, 점차 많은 당사국들이 국민에게 담배 산업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WHO, 2023c).

협약 제6조의 담뱃세 인상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사국들의 3/4 이상이 세금 부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종량세와 종가세의 혼합 방식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담뱃세 비중은 유럽지역에서 75%의 기준을 평균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였다(WHO, 2023c).

협약 제8조의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 정책과 관련해서는 95% 이상의 국가들이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종합적인 담배연기 규제 조치를 수행하는 국가는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협약 제9조, 10조와 관련된 조항은 담배 제품에 첨가하는 물질에 대한 규제와 검사에 대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가향 물질 첨가

2) WHO (2023c). 2023 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pp.vii~ix. Licence: CC BY-NC-SA 3.0 IGO. <https://fctc.who.int/convention/progress/global-progress-reports>. 2025. 3. 18. 인출.

등을 규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협약 제11조와 관련된 것으로 담뱃갑 경고문구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협약 제12조 관련 교육 홍보는 소수민족 등 취약계층에 더 집중하여 홍보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협약 제14조의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은 당사국의 65% 이상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금연지원서비스에는 전화상담, 일차의료에서 금연치료 등이 포함되었다. 담배 제품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는 조항인 협약 제15조와 관련된 의정서를 비준하는 국가의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제16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또는 미성년자에 의한 담배 판매 금지 조항인데 미성년자들의 담배 접근성을 차단하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다. 담배 제품에 가향 물질 같은 첨가물질을 추가하여 미성년자에게 어필하는 전략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향 물질이 첨가된 담배 제품을 규제하거나 소량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권장되며, 삼분의 이 정도의 당사국들이 이러한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HO, 2023c).

담배규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서는 첫째, 담배규제 활동을 위한 예산 부족, 둘째, 담배규제 활동을 위한 인력의 부족이며, 셋째, 전문성 부족으로 역량을 함양하는 훈련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담배규제의 성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제적 협력도 필요하다.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담배 제품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WHO, 2023c).

〈표 2-10〉 WHO FCTC의 주요 조항별 국제 성과

| 주요 협약 조항                                      | 주요 성과                                                                                                                                                                           |
|-----------------------------------------------|---------------------------------------------------------------------------------------------------------------------------------------------------------------------------------|
| 제2.1조(협약과 의정서에서 요구하는 조치 이상의 정책 추진)            | 다수의 협약 당사국들이 다양한 체계를 활용하여 담배 없는 세대를 달성하는 목표 또는 5% 미만의 흡연율 달성을 계획하고 있음.                                                                                                          |
| 제5.1조(일반적 의무로서 종합적이고 다부문에 걸친 국가 담배규제 정책전략 수립) | 많은 국가의 보건의로 정책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공중보건 정책의 계획에 담배규제 정책전략을 반영하고 있음.                                                                                                                    |
| 제6조(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과 조세 정책)                   | 협약 당사국 중 3/4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조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 종량세와 종가세의 혼합 방식의 정책이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남. 세계보건기구의 네 가지 지역들 중에서는 유럽지역에서 과세 비중이 평균 75% 이상으로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제8조(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 정책)                         | 협약 당사국가들의 95% 이상이 공공장소를 금연구역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협약 제8조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전반적인 보호를 실시하는 경우는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남. 금연구역 정책의 법제화는 국가 수준, 지역 수준, 자발적 참여 등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금연구역 확대 강화의 경향이 관찰되고 있음. |
| 제9조(담배 제품 내용물 규제)와 제10조(담배 제품 성분 공개)          | 담배 제품의 내용물과 성분에 대한 검사와 측정에 대한 정책의 성과로서 담배 제품에 가향 또는 첨가물을 금지하는 대책이 있었음.                                                                                                          |
| 제11조(담배 제품의 포장과 라벨 규제)                        | 담배 제품 겉면에 건강 경고문의 크기를 확대하는 정책과 광고 없는 담뱃갑 포장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가 증대하고 있음.                                                                                                               |
| 제12조(교육, 소통, 훈련, 공중 인식 증대)                    | 담배의 해악에 대한 인식 증대를 위하여 환경 폐해에 대한 인식증가 등 새로운 캠페인 전략이 도입되고 있음.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캠페인의 도입도 긍정적인 경향으로 보고되었음.                                                                               |
| 제13조(담배 광고, 판촉, 후원 금지)                        | 담배 제품의 광고, 판촉, 후원의 다양한 경로를 점차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
| 제14조(수요 감소를 위한 담배 의존과 금연 지원)                  | 당사국 중 약 65%의 국가들이 금연 지원을 위한 근거 기반의 우수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일차의료에서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치료 등이 제한적임.                                                                                        |
| 제15조(담배 제품의 불법 거래 근절)                         | 담배 제품의 불법 거래 근절에 대한 조항은 의정서로 발전하여 2012년 대한민국 서울총회에서 승인되었음. 담배 제품의 과세와 추적관리 등을 포함하는 국제협력의 정책에 참여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
| 제16조(미성년자 대상 담배 제품 판매와 구매)                    |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매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음.<br>담배 제품에 가향 물질 같은 첨가물질을 추가하여 미성년자에게 어필하는 전략, 소량 판매 금지 등 추진                                              |

54 담뱃세 부과 및 활용 정책의 국제비교: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 주요 협약 조항                                 | 주요 성과                                                                                                                                                                                                |
|------------------------------------------|------------------------------------------------------------------------------------------------------------------------------------------------------------------------------------------------------|
| 제17조(담배 경작의 대체경제 지원)와 제18조(환경과 인간의 건강보호) | 담배 경작에 대한 대체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국가 활동은 더딘 상황임. 2020년 기준 약 29%의 국가들이 소극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음.                                                                                                                    |
| 제19조(담배규제법제에 대한 책임과 처벌에 관한 사항)           | 담배규제에 대한 담배회사의 법적인 소송 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
| 제20조(연구, 감시와 정보교환)                       | 담배 소비와 관련된 국가적인 조사체계를 갖추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고 관련된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이 증대하고 있음.                                                                                                                                |
| 제22조(과학적, 기술적, 법적 상호협력)                  | 최근에 증가하는 협력 사항으로는 제12조(교육과 홍보)와 관련된 인력 지원에 대한 사례가 있었음.                                                                                                                                               |
| 신종 담배에 대한 대응                             | 무연담배, 워터파이프, 쉘런형 전자담배, 니코틴 전자 전달 체계(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ENDS), 비 니코틴 전자 전달체계(Electronic non-nicotine delivery systems, ENNDS) 등의 신종 담배 제품의 가용성이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느린 상황임. |

출처: “2023 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WHO, 2023c, pp. vii~ix. Licence: CC BY-NC-SA 3.0 IGO. <https://fctc.who.int/convention/progress/global-progress-reports>. 2025. 3. 18. 인출하여 일부 번역하여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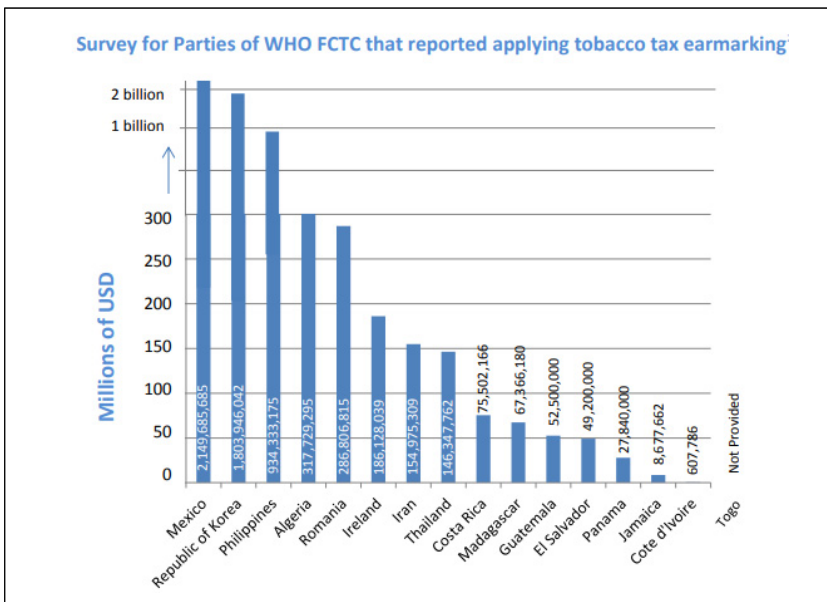
2. 세후 활용에 대한 조사 결과<sup>3)</sup>

FCTC 제6조의 추진을 위해 개발된 가이드라인에서도 담뱃세 부과 정책이 담배 소비를 규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당사국의 담뱃세 활용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한 바 있다. 2015년의 서베이에서 질문한 담뱃세 활용 동향의 기간은 2010~2014년이었다. 응답한 16개국의 응답 결과가 분석되었다. 응답한 국가 중에서 멕시코의 세수 확보 규모가 가장 컸고 2014년 기준 21억 달러(USD)였다. 우리나라는 18억 달러라고 응답하였다(WHO FCTC, 2015).

3) WHO FCTC. (2015). Study of Parties' experience on dedication of tobacco taxes- 2015 July. [https://extranet.who.int/fctcapps/fctcapps/fctc/implementation-data-base/treaty\\_provisions/article-6](https://extranet.who.int/fctcapps/fctcapps/fctc/implementation-data-base/treaty_provisions/article-6). 2025. 2. 14. 인출.

담뱃세가 활용되는 영역은 담배규제사업, 보건의료, 건강프로그램 등이 대다수였지만 다른 영역에 활용하는 국가도 있었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사회보장으로 60%를 사용하고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기관 지원으로 10%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마다가스카르의 경우 스포츠 지원금으로 43%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멕시코의 경우는 확보된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으로 기여된다고 응답하였다. 알제리의 경우 특정 금액을 응급의료와 암 질환 치료기금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WHO FCTC,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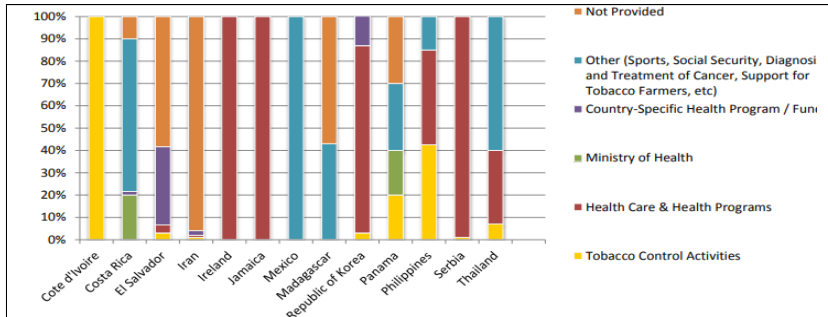
[그림 2-18] 담뱃세 목적세의 규모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설문조사 결과



주: 세계보건기구에서 목적세에 대하여 실시한 2014년 조사 결과임.

출처: "Study of Parties' experience on dedication of tobacco taxes-2015 July," WHO FCTC, 2015. [https://extranet.who.int/fctcapps/fctcapps/fctc/implementation-database/ready\\_provisions/article-6](https://extranet.who.int/fctcapps/fctcapps/fctc/implementation-database/ready_provisions/article-6). 2025. 2. 14. 인출.

[그림 2-19] 담뭇세 목적세의 재원 활용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설문조사 결과(2015)



출처: "Study of Parties' experience on dedication of tobacco taxes-2015 July," WHO FCTC, 2015. [https://extranet.who.int/fctcapps/fctcapps/fctc/implementation-database/treaty\\_provisions/article-6](https://extranet.who.int/fctcapps/fctcapps/fctc/implementation-database/treaty_provisions/article-6). 2025. 2. 14. 인출.

2015년 제69회 유엔총회의 아디스 아바바 액션 아젠다에서도 담배가격 정책과 세금 부과 정책이 담배 소비를 감소시키고 의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적 수단이 될 것으로 확인하였고, 많은 국가에서 세금이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담뭇세 부과 정책은 SMART 정책으로 요약된다.<sup>4)</sup>

- Saves Lives: 흡연은 예방 가능한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담뭇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흡연에 대응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시각이다.
- Mobilizes resources: 2018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는 세계적으로는 3,610억 달러, 중저소득 국가에서 1,620억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Addresses health inequities: 담뭇세 인상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저소득 인구집단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사업에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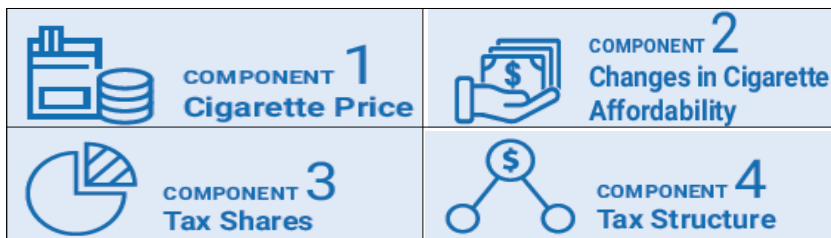
4)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5). Tobacco Taxation. <https://www.who.int/teams/health-promotion/tobacco-control/economics/taxation> 2025. 1. 22. 인출.

- Reduces burdens on health systems: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경감함으로써 보건체계에 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2년 기준 1.4조 달러의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 Targets noncommunicable disease risk factors for the achievement of SDGs: 흡연이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라는 점에서 SDGs의 건강 분야 목표에서 다루고 있는 만성질환 예방 관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제5절 담배 스코어카드 평가 결과

Tobacco Atlas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30년 이상 담배 경제학 연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국제 데이터이다. 4가지 정책 요소를 중심으로 담뱃세 스코어를 5점 척도로 분석하여 국제비교 자료를 제공해 왔다. 담배 가격, 담배구매력의 변화, 담뱃세 부담률, 담뱃세 구조의 네 가지 요소이다.

[그림 2-20] Tobacco Atlas cigarette tax scorecard의 정책 기준



출처: "Tobacconomics cigarette taxscorecard (3rd ed.)," Drope, J., Oo, S., Lee, H., Dorokhina, M., Guerrero-López, C., Rodriguez-Iglesias G., Mugosa, A., Mirza, M., Bontu, A., & Chaloupka, F, Research Database/Economics for health, 2025 Economics for Health at the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Johns Hopkins University, p.12.

담뱃세 스코어카드의 점수를 비교했을 때 2022년 자료에서 대부분 국가의 점수가 감소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점수는 낮으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담뱃세 부과 정책 스코어의 연도별 OECD 국가별 추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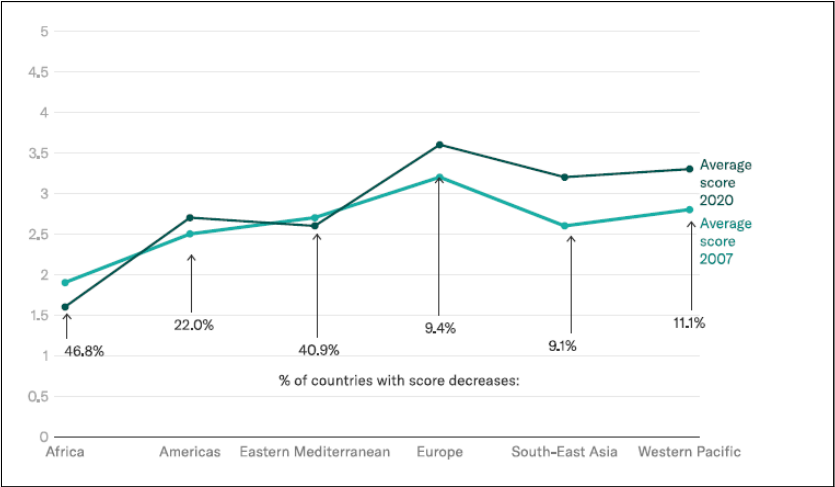
| 구분                     | Overall Score |      |      |      |
|------------------------|---------------|------|------|------|
|                        | 2014          | 2018 | 2020 | 2022 |
| Australia              | 4.13          | 4.63 | 4.50 | 3.63 |
| Austria                | 3.13          | 2.50 | 2.38 | 2.38 |
| Belgium                | 3.50          | 3.25 | 3.25 | 2.88 |
| Canada                 | 3.00          | 3.75 | 4.00 | 3.00 |
| Chile                  | 2.38          | 3.63 | 3.88 | 2.88 |
| Colombia               | 1.63          | 2.38 | 3.38 | 3.50 |
| Costa Rica             | 3.13          | 2.13 | 2.00 | 2.13 |
| Czechia                | 3.63          | 3.25 | 3.00 | 3.25 |
| Denmark                | 3.38          | 2.63 | 3.00 | 2.88 |
| Estonia                | 3.63          | 2.88 | 3.00 | 3.00 |
| Finland                | 3.38          | 3.38 | 3.75 | 3.75 |
| France                 | 3.63          | 3.63 | 3.88 | 4.13 |
| Germany                | 2.63          | 2.88 | 3.13 | 2.63 |
| Greece                 | 4.13          | 3.88 | 3.88 | 2.88 |
| Hungary                | 3.75          | 2.88 | 2.88 | 3.13 |
| Iceland                | 3.50          | 2.50 | 2.38 | 2.63 |
| Ireland                | 3.25          | 3.25 | 3.38 | 3.25 |
| Israel                 | 2.88          | 3.63 | 2.88 | 2.88 |
| Italy                  | 3.50          | 2.75 | 2.75 | 2.75 |
| Japan                  | 2.50          | 1.50 | 2.25 | 3.50 |
| Korea<br>(Republic of) | 2.00          | 2.50 | 2.50 | 2.50 |
| Latvia                 | 2.75          | 2.88 | 2.88 | 2.88 |
| Lithuania              | 2.50          | 3.38 | 3.38 | 2.75 |
| Luxembourg             | 3.13          | 2.38 | 2.38 | 2.13 |
| Mexico                 | 2.88          | 2.13 | 2.38 | 2.38 |
| Netherlands            | 3.88          | 3.13 | 3.00 | 3.00 |

| 구분                       | Overall Score |      |      |      |
|--------------------------|---------------|------|------|------|
|                          | 2014          | 2018 | 2020 | 2022 |
| New Zealand              | 4.63          | 4.38 | 4.63 | 3.63 |
| Norway                   | 3.75          | 3.63 | 3.63 | 2.50 |
| Poland                   | 4.13          | 2.75 | 2.75 | 2.50 |
| Portugal                 | 3.88          | 2.88 | 2.75 | 2.75 |
| Slovakia                 | 3.38          | 2.88 | 2.75 | 2.88 |
| Slovenia                 | 4.13          | 2.88 | 2.88 | 2.88 |
| Spain                    | 3.88          | 2.88 | 2.63 | 2.63 |
| Sweden                   | 3.25          | 2.75 | 2.75 | 2.75 |
| Switzerland              | 3.25          | 2.50 | 2.50 | 2.50 |
| Türkiye                  | 3.63          | 2.88 | 2.88 | 2.63 |
| United Kingdom           | 3.88          | 3.63 | 3.63 | 3.38 |
| United States of America | 2.00          | 2.00 | 2.00 | 2.00 |

출처: "Tobacconomics cigarette taxscorecard (3rd ed.)," Drope, J., Oo, S., Lee, H., Dorokhina, M., Guerrero-López, C., Rodriguez-Iglesias G., Mugosa, A., Mirza, M., Bontu, A., & Chaloupka, F, Research Database/Economics for health, 2025 Economics for Health at the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Johns Hopkins University, pp.44-48의 표를 저자가 일부 수정함. <https://www.economicsforhealth.org/research/#99>

Tobacco Atlas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의 흡연율(15세 이상)은 2007년 22.7%에서 2021년 17%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흡연율 감소 통계는 세계인구 증가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국가의 소득 수준이 중위 또는 고소득 국가에서 여성 흡연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동지중해 지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 서태평양 지역의 순으로 흡연율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흡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 인디아, 인도네시아 등이다. 담뱃세 스코어카드의 점수가 2007년보다는 2020년에 평균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프리카 지역, 동지중해 지역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21] 대륙별 담뭍세 스코어카드의 변화 동향



출처: “Prevalance,” The Tobacco atlas, 2023.  
<https://tobaccoatlas.org/challenges/prevalence/> 2025. 2. 3. 인출.

담뭍세를 인상하면 앞으로 50년간 사망률 감소 및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담뭍세 인상은 보건학적 영향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림 2-22] 담뭍세 부과 정책의 효과: 사망률 감소와 예산 확보 효과

| % price increase from higher tax | Deaths averted (millions) | Tax revenue (trillions, \$2016 discounted) |
|----------------------------------|---------------------------|--------------------------------------------|
| 20                               | 10.8                      | 1.6                                        |
| 30                               | 16.3                      | 2.2                                        |
| 40                               | 21.8                      | 2.6                                        |
| 50                               | 27.2                      | 3.0                                        |

Increasing the price of tobacco by 50% worldwide would save more than 27 million lives and generate US\$ 3 trillion over the next 50 years.

Source: Summan and Laxminarayan, 2018 • [Get the data](#) • [Embed](#) • [Download image](#)

THE TOBACCO ATLAS

출처: “Global Strategy,” The Tobacco atlas, 2022.  
<https://tobaccoatlas.org/solutions/global-strategy/> 2025. 2. 3. 인출

[그림 2-23] 결련 담뱃세 스코어카드의 연도별 구성 요소별 변화



출처: “Taxes,” The Tobacco atlas, 2022. <https://tobaccoatlas.org/solutions/taxes/> 2025. 2. 17. 인출.

〈표 2-12〉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른 담뱃세 종류별 비중과 담배가격

| Descriptive statistics                                                       | Average price, \$ PPP* | Specific excise, as a % of price | Ad valorem excise, as a % of price | Value-added tax, as a % of price† | Other taxes, as a % of price | Total tax burden, as a % of price |
|------------------------------------------------------------------------------|------------------------|----------------------------------|------------------------------------|-----------------------------------|------------------------------|-----------------------------------|
| <b>Unweighted average</b>                                                    |                        |                                  |                                    |                                   |                              |                                   |
| Low-income countries                                                         | 2.32                   | 7.80                             | 14.70                              | 10.40                             | 1.80                         | 34.74                             |
| Lower middle-income countries                                                | 3.59                   | 27.40                            | 7.60                               | 11.90                             | 1.60                         | 48.55                             |
| Upper middle-income countries                                                | 4.68                   | 26.90                            | 16.80                              | 11.60                             | 3.10                         | 58.38                             |
| High-income countries                                                        | 6.07                   | 33.80                            | 17.70                              | 13.60                             | 1.30                         | 66.48                             |
| <b>Weighted average (by current adult cigarette smokers [2013 estimate])</b> |                        |                                  |                                    |                                   |                              |                                   |
| Low-income countries                                                         | 2.03                   | 6.70                             | 25.90                              | 11.80                             | 1.40                         | 45.76                             |
| Lower middle-income countries                                                | 2.78                   | 35.20                            | 8.70                               | 12.70                             | 0.10                         | 56.64                             |
| Upper middle-income countries                                                | 2.94                   | 7.90                             | 32.10                              | 13.70                             | 0.60                         | 54.35                             |
| High-income countries                                                        | 5.53                   | 33.80                            | 17.90                              | 12.70                             | 0.30                         | 64.78                             |
| <b>Median</b>                                                                |                        |                                  |                                    |                                   |                              |                                   |
| Low-income countries                                                         | 1.93                   | 0.00                             | 10.21                              | 11.88                             | 0.00                         | 30.86                             |
| Lower middle-income countries                                                | 2.51                   | 16.00                            | 6.69                               | 11.50                             | 0.00                         | 40.87                             |
| Upper middle-income countries                                                | 3.87                   | 25.65                            | 0.00                               | 13.04                             | 0.00                         | 58.86                             |
| High-income countries                                                        | 5.66                   | 30.18                            | 8.72                               | 15.97                             | 0.00                         | 72.90                             |

\*Average price reflects the price of a 20-cigarette pack of the most sold brand in each country included in the country groupings. PPP = Purchasing Power Parity.  
†This column also includes sales taxes, not tabulated separately in this table.  
Notes: Low-income countries (n=29), lower middle-income countries (n=45), upper middle-income countries (n=53), and high-income countries (n=53).  
Country income group classification based on World Bank Analytical Classifications for 2014.  
Sourc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sup>36</sup>

출처: “The Economics of Tobacco and Tobacco Control,” U.S. National Cancer Institute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6, National Cancer Institute Tobacco Control Monograph 21, p.124.

미국 암질환연구소와 세계보건기구의 협력 연구로 2016년 발간된 담배규제 정책의 경제성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담뱃세 부과 정책이 담배 제품 수요에 준 영향을 국제비교로 분석하였다.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담배가격 정책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담배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구매 가능성이 높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고소득 국가에서 담배구매력이 중저소득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U.S. National Cancer Institute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6).

고소득 국가보다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 국가에서의 비용이 중저소득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DP의 2%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7.2%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이상훈, 신미정, 2023).

금연 정책의 통합지표를 사용하여 OECD 국가를 비교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호주, 노르웨이 순으로 금연 정책 통합지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금연 정책 통합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남성의 흡연율이 감소하는 역관계를 확인하였다. 금연 정책의 우선순위를 계량적으로 평가한 결과,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나타났고, 물가와 연동하여 정기적인 가격 인상, 저가 담배에 대한 가격 인상 등의 순으로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되었다(고숙자 외, 2013).



## 제3장

### OECD 국가의 담배가격 정책

제1절 담배소비세와 담배가격

제2절 담뱃세 부과율

제3절 주요 국가별 가격 정책



## 제3장 OECD 국가의 담배가격 정책

### 제1절 담배소비세와 담배가격

#### 1. 담배소비세

퀄런, 시가, 롤링타바코 등에 대한 소비세는 국가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었다. 호주의 경우 퀄런 1,000개비당 종량세는 823달러였고 롤링 타바코는 1,000그램당 1219.9달러였다. 영국의 경우 퀄런 1,000개비당 종량세는 395.9달러였고, 시가는 1,000개당 493.8달러, 롤링타바코 1,000그램당 515.4달러 등이었다. 일본의 종량세는 퀄런 1,000개비당 108.5달러, 시가 1,000개당 108.5달러, 롤링 타바코 1,000그램당 108.5달러 등이었다.

〈표 3-1〉 OECD 국가의 담배 종류별 종량세 현황

| Country                 | Currency | Cigarettes                           |        |                       |                                                              | Cigars <sup>2</sup>              |                       |                   |                                             | Rolling tobacco for cigarettes  |                   |                 |                                                         |                   | VAT    |               |       |
|-------------------------|----------|--------------------------------------|--------|-----------------------|--------------------------------------------------------------|----------------------------------|-----------------------|-------------------|---------------------------------------------|---------------------------------|-------------------|-----------------|---------------------------------------------------------|-------------------|--------|---------------|-------|
|                         |          | Specific excise per 1 000 cigarettes |        | Excise on value       | Overall minimum excise rate per 1000 cigarettes <sup>1</sup> | Specific excise per 1 000 cigars |                       | Excise on value   | Overall minimum excise rate per 1000 cigars | Specific excise per 1 000 grams |                   | Excise on value | Overall minimum rate excise per 1000 grams <sup>3</sup> |                   |        |               |       |
|                         |          | National currency                    | USD    | % of RSP <sup>4</sup> | National currency                                            | USD                              | % of RSP <sup>4</sup> | National currency | USD                                         | % of RSP <sup>4</sup>           | National currency | USD             | % of RSP <sup>4</sup>                                   | National currency |        | USD           | %     |
| Australia <sup>a</sup>  | AUD      | 1243.35                              | 823.41 | 0.00                  |                                                              |                                  |                       |                   |                                             |                                 | 1842.00           | 1219.87         | 0.00                                                    |                   |        | 10.00         |       |
| Austria <sup>a</sup>    | EUR      | 76.50                                | 83.15  | 32.50                 | 165.9                                                        | 180.33                           | Country note          | -                 | 13.00                                       | 105                             |                   | Country note    |                                                         | 56.00             | 147    | 159.78        | 20.00 |
| Belgium <sup>a</sup>    | EUR      | 178.00                               | 193.48 | 34.04                 | 326.50                                                       | 354.89                           | 0.00                  | 0.00              | 11.50                                       |                                 | 136.00            | 147.83          | 31.50                                                   | 228.10            | 247.93 | 21.00         |       |
| Canada <sup>a</sup>     | CAD      | 158.324                              | 117.28 | 00.00                 |                                                              |                                  | Country note          | -                 | Country note                                |                                 | 197.90            | 146.59          | 00.00                                                   |                   |        | 5.0/13.0/15.0 |       |
| Chile <sup>a</sup>      | CLP      | 67<br>434.04                         | 80.27  | 30.00                 |                                                              |                                  | Country note          | -                 | 52.60                                       |                                 |                   | Country note    |                                                         | 59.70             |        | 19.00         |       |
| Colombia <sup>a</sup>   | COP      | 186<br>250.00                        | 43.05  | 10.00                 |                                                              |                                  | 186<br>250.00         | 43.06             | 10.00                                       |                                 |                   | 297<br>000.00   | 68.66                                                   | 10.00             |        | 19.00         |       |
| Costa Rica <sup>a</sup> | CRC      | 26<br>578.98                         | 48.85  | 20.00                 |                                                              |                                  | Country note          | -                 |                                             |                                 |                   | Country note    |                                                         |                   |        | 13.0          |       |
| Czechia                 | CZK      | 1970.00                              | 88.74  | 30.00                 | 3 360                                                        | 151.35                           | 2 290.00              | 103.15            | -                                           |                                 | 3 000.00          | 135.14          | -                                                       |                   |        | 21.00         |       |
| Denmark <sup>a</sup>    | DKK      | 1 935.40                             | 280.90 | 1.00                  |                                                              |                                  | 1 185.10              | 172.0             | 10.00                                       | 2 279                           | 330.77            | 1 550.90        | 225.09                                                  | 0.00              |        | 25.00         |       |
| Estonia <sup>a</sup>    | EUR      | 100.50                               | 109.24 | 30.00                 | 169.10                                                       | 183.80                           | 151.00                | 164.13            | 10.00                                       | 222.00                          | 241.30            | 112.40          | 122.17                                                  | 0.00              |        |               |       |
| Finland <sup>a</sup>    | EUR      | 94.30                                | 102.50 | 52.00                 | 353.60                                                       | 384.35                           | 125.80                | 136.74            | 34.00                                       | 353.60                          | 384.35            | 80.50           | 87.50                                                   | 52.00             | 273.70 | 297.50        | 24.00 |
| France <sup>a</sup>     | EUR      | 71.30                                | 77.50  | 55.00                 | 371.40                                                       | 403.70                           | 54.70                 | 59.46             | 36.30                                       | 296.60                          | 322.39            | 99.70           | 108.37                                                  | 49.10             | 345.40 | 375.43        | 20.00 |
| Germany <sup>a</sup>    | EUR      | 111.5                                | 121.20 | 19.84                 | Country note                                                 |                                  | 14.00                 | 15.22             | 1.47                                        | Country note                    |                   | 54.39           | 59.12                                                   | 17.00             |        | 19.00         |       |
| Greece <sup>a</sup>     | EUR      | 82.50                                | 89.67  | 26.00                 |                                                              |                                  | 0.00                  | 0.00              | 35.00                                       |                                 | 170.00            | 184.78          | 0.00                                                    |                   |        | 24.00         |       |
| Hungary <sup>a</sup>    | HUF      | 29<br>500.00                         | 83.55  | 24.00                 | 41 800                                                       | 118.38                           | 4 840.00              | 13.71             | 14.00                                       |                                 |                   | 25<br>960.00    | 73.52                                                   | 0.00              |        | 27.00         |       |
| Iceland <sup>a</sup>    | ISK      | 30<br>212.50                         | 219.03 | 0.00                  |                                                              |                                  | Country note          | -                 | 0.00                                        | 0.00                            |                   | 33<br>600.00    | 243.58                                                  | Country note      |        | 24.00         |       |
| Ireland <sup>a</sup>    | EUR      | 428.48                               | 465.74 | 8.85                  |                                                              |                                  | Country note          | -                 | 0.00                                        |                                 |                   | 465.003         | 565.44                                                  | 0.00              |        | 23.00         |       |

66 담뱃세 부과 및 활용 정책의 국제비교: 보건으로 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 Country          | Currency | Cigarettes                           |        |                                       |                                                               |        |                                  | Cigars <sup>2</sup> |                                       |                                              |       |                                 |          | Rolling tobacco for cigarettes        |                                                          |        |       |  |  | VAT |
|------------------|----------|--------------------------------------|--------|---------------------------------------|---------------------------------------------------------------|--------|----------------------------------|---------------------|---------------------------------------|----------------------------------------------|-------|---------------------------------|----------|---------------------------------------|----------------------------------------------------------|--------|-------|--|--|-----|
|                  |          | Specific excise per 1 000 cigarettes |        | Excise on value % of RSP <sup>1</sup> | Overall minimum excise rate per 1 000 cigarettes <sup>3</sup> |        | Specific excise per 1 000 cigars |                     | Excise on value % of RSP <sup>1</sup> | Overall minimum excise rate per 1 000 cigars |       | Specific excise per 1 000 grams |          | Excise on value % of RSP <sup>1</sup> | Overall minimum rate excise per 1 000 grams <sup>4</sup> |        |       |  |  |     |
|                  |          | National currency                    | USD    |                                       | National currency                                             | USD    | National currency                | USD                 |                                       | National currency                            | USD   | National currency               | US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srael*          | ILS      | 444.03                               | 120.99 | Country note                          |                                                               |        | 0.00                             | 0.00                | Country note                          |                                              |       | 634.34                          | 172.84   | 0.00                                  |                                                          |        | 17.00 |  |  |     |
| Italy            | EUR      | 29.30                                | 31.85  | 49.50                                 |                                                               |        | 0.00                             | 0.00                | 23.50                                 |                                              |       | 0.00                            | 0.00     | 60.00                                 |                                                          |        | 22.00 |  |  |     |
| Japan*           | JPY      | 15244.00                             | 108.51 | 0.00                                  |                                                               |        | 15244.00                         | 108.51              | 0.00                                  |                                              |       | 15244.00                        | 108.51   | 0.00                                  |                                                          |        | 10.00 |  |  |     |
| Korea*           | KRW      | 145 720.00                           | 111.61 | 64.76                                 |                                                               |        | Country note                     | -                   | 0.00                                  |                                              |       | 103 200.00                      | 79.04    | 0.00                                  |                                                          |        | 10.00 |  |  |     |
| Latvia           | EUR      | 104.00                               | 113.04 | 15.00                                 | 135.90                                                        | 147.72 | 126.7                            | 137.72              | -                                     | -                                            | -     | 91.9                            | 99.89    | -                                     | -                                                        |        | 21.00 |  |  |     |
| Lithuania*       | EUR      | 85.30                                | 92.72  | 25.00                                 | 138.00                                                        | 150.00 | Country note                     | -                   | -                                     | -                                            | -     | 112.80                          | 122.61   | -                                     | -                                                        |        | 21.00 |  |  |     |
| Luxembourg*      | EUR      | 20.64                                | 22.43  | 48.14                                 | 136.10                                                        |        | 0.00                             | 0.00                | 10.00                                 | 23.50                                        | 25.54 | 22.50                           | 24.46    | 35.50                                 | 66.50                                                    | 72.28  | 17.00 |  |  |     |
| Mexico*          | MXN      | 616.60                               | 34.72  | 40.97                                 | None                                                          |        | Country note                     | -                   | Country note                          | None                                         |       | Country note                    | -        | Country note                          | None                                                     |        | 16.00 |  |  |     |
| Netherlands      | EUR      | 362.12                               | 393.61 | 5.00                                  | 390.42                                                        | 424.37 | 0.00                             | 0.00                | 11.00                                 |                                              |       | 346.96                          | 377.15   | 0.00                                  |                                                          |        | 21.00 |  |  |     |
| New Zealand*     | NZD      | Country note                         | -      | 0.00                                  |                                                               |        | Country note                     | -                   | 0.00                                  |                                              |       | Country note                    | -        | 0.00                                  |                                                          |        | 15.00 |  |  |     |
| Norway           | NOK      | 3 150.00                             | 298.30 | 0.00                                  |                                                               |        | Country note                     | 0.00                |                                       |                                              |       | 3 150.00                        | 298.30   | 0.00                                  |                                                          |        | 25.00 |  |  |     |
| Poland*          | PLN      | 228.10                               | 54.31  | 32.05                                 | 487.55                                                        | 116.08 | 433.00                           | 103.10              | -                                     | Country note                                 |       | 155.79                          | 37.09    | 32.05                                 | 313.42                                                   | 74.62  | 23.00 |  |  |     |
| Portugal*        | EUR      | 151.88                               | 118.82 | 1.00                                  | 154.35                                                        | 167.77 | 0.00                             | 0.00                | 25.00                                 |                                              |       | 91.00                           | 98.91    | 15.00                                 |                                                          |        | 23.00 |  |  |     |
| Slovak Republic* | EUR      | 84.60                                | 91.96  | 23.00                                 | 132.10                                                        | 143.59 | 89.30                            | 97.07               | -                                     |                                              |       | 101.30                          | 110.11   | 0.00                                  |                                                          |        | 20.00 |  |  |     |
| Slovenia*        | EUR      | 90.56                                | 98.43  | 22.67                                 | 141.00                                                        | 153.26 | 0.00                             | 0.00                | 6.40                                  | 56                                           | 60.87 | 56.00                           | 46.62    | 38.00                                 | 119.00                                                   | 129.35 | 22.00 |  |  |     |
| Spain            | EUR      | 24.70                                | 26.85  | 51.00                                 | 131.50                                                        | 142.93 | 0.00                             | 0.00                | 15.80                                 | 41.50                                        | 45.11 | 23.50                           | 25.54    | 41.50                                 | 98.75                                                    | 107.34 | 21.00 |  |  |     |
| Sweden*          | SEK      | 1 840.00                             | 173.42 | 1.00                                  |                                                               |        | 1 620.00                         | 152.69              | 0.00                                  |                                              |       | 2 241.00                        | 211.22   | 0.00                                  |                                                          |        | 25.00 |  |  |     |
| Switzerland*     | CHF      | 118.32                               | 131.47 | 25.00                                 | 212.10                                                        | 235.67 | 5.60                             | 6.22                | 1.00                                  |                                              |       | 38.00                           | 42.22    | 25.00                                 | 80                                                       | 88.89  | 8.10  |  |  |     |
| Turkiye*         | TRY      | 240.29                               | 10.14  | 57.00                                 | 1 429.9                                                       | 60.36  | 33 526.00                        | 1 415.20            | 45.00                                 | 1 253.80                                     | 52.93 | 32.474                          | 1 370.79 | 55                                    | 178.4                                                    | 7.53   | 20.00 |  |  |     |

| Country         | Currency | Cigarettes                           |        |                                       |                                                               |     |                                  | Cigars <sup>2</sup> |                                       |                                              |     |                                 |        | Rolling tobacco for cigarettes        |                                                          |  |       |  |  | VAT |
|-----------------|----------|--------------------------------------|--------|---------------------------------------|---------------------------------------------------------------|-----|----------------------------------|---------------------|---------------------------------------|----------------------------------------------|-----|---------------------------------|--------|---------------------------------------|----------------------------------------------------------|--|-------|--|--|-----|
|                 |          | Specific excise per 1 000 cigarettes |        | Excise on value % of RSP <sup>1</sup> | Overall minimum excise rate per 1 000 cigarettes <sup>3</sup> |     | Specific excise per 1 000 cigars |                     | Excise on value % of RSP <sup>1</sup> | Overall minimum excise rate per 1 000 cigars |     | Specific excise per 1 000 grams |        | Excise on value % of RSP <sup>1</sup> | Overall minimum rate excise per 1 000 grams <sup>4</sup> |  |       |  |  |     |
|                 |          | National currency                    | USD    |                                       | National currency                                             | USD | National currency                | USD                 |                                       | National currency                            | USD | National currency               | US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nited Kingdom* | GBP      | 316.70                               | 395.88 | 16.50                                 |                                                               |     | 395.03                           | 493.79              | 0.00                                  |                                              |     | 412.32                          | 515.40 | 0.00                                  |                                                          |  | 20.00 |  |  |     |
| United States*  | USD      | 131.00                               | 131.00 | Country note                          | Country note                                                  |     | Country note                     | -                   | -                                     | Country note                                 |     | Country note                    | -      | -                                     |                                                          |  | -     |  |  |     |

- 주: 1. 캐나다의 각 주(province), 준주(territory)는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다양한 세율로 담뱃세를 부과함.
2. 2024년 이스라엘의 담배의 가치소비세는 도매가격의 270%에 444.03 ILS를 더한 금액으로, 담배 1,000개비당 850.62 ILS 이상임. 2024년 3월 4일부터 이 소비세는 도매가격의 270%에 524.5 ILS를 더한 금액에 1,000개비당 930 ILS 이상을 부과함.
3. 일본의 담배에 대한 과세는 국가, 지방 및 지자체 요인으로 구성됨.
4. 대한민국에서 담배에 대한 과세는 지방정부 개별소비세에 해당함.
5. 2024년 뉴질랜드에서 실제 담배 함량이 0.8kg을 초과하지 않는 껴런 담배 1,000개비에 대한 세율은 담배 함량 킬로그램당 NZD1,244.23임. 껴런 담배 1,000개비당 실제 담배 함량이 0.8kg을 초과하는 담배와 담배용 롤링 담배에 대한 세율은 담배 함량 1킬로그램당 NZD 1,773.02임.
6. 미국은 주별로 세금의 범위가 매우 다양함. 2024년 미국의 담배 1,000개비당 연방 및 주 소비세의 가중 평균은 USD 131.00이고, 담배에 대한 연방 소비세율은 소형 담배(1,000개비당 3파운드 이하)의 경우 1,000개비당 50.33달러, 대형 담배의 경우 1,000개비당 105.69달러를 부과하였음. 일부 주에서는 종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

출처: “Taxation of Tobacco,” OECD, 2024, Consumption Tax Trends 2024, pp.205-207.

〈표 3-2〉 OECD 국가의 담배소비세 종량세 부과 비교(2012년과 2024년)

| 구분    | 2012년                    | 2024년                    |
|-------|--------------------------|--------------------------|
|       | 궐련 담배 1,000개비당 종량세 (USD) | 궐련 담배 1,000개비당 종량세 (USD) |
| 호주    | 221.20                   | 823.41                   |
| 오스트리아 | 41.19                    | 83.15                    |
| 벨기에   | 18.39                    | 193.48                   |
| 캐나다   | 69.14                    | 117.28                   |
| 칠레    | 1)                       | 80.27                    |
| 체코    | 80.46                    | 88.74                    |
| 콜롬비아  | -                        | 43.05                    |
| 코스타리카 | -                        | 48.85                    |
| 덴마크   | 81.47                    | 280.90                   |
| 에스토니아 | 79.29                    | 109.24                   |
| 핀란드   | 23.78                    | 102.50                   |
| 프랑스   | 31.90                    | 77.50                    |
| 독일    | 116.03                   | 121.20                   |
| 그리스   | 27.79                    | 89.67                    |
| 헝가리   | 81.22                    | 83.55                    |
| 아이슬란드 | 132.78                   | 219.03                   |
| 아일랜드  | 229.85                   | 465.74                   |
| 이스라엘  | 60.68                    | 120.99                   |
| 이탈리아  | 11.37                    | 31.85                    |
| 일본    | 114.56                   | 108.51                   |
| 대한민국  | 38.95                    | 116.61                   |
| 라트비아  | -                        | 113.04                   |
| 리투아니아 | -                        | 92.72                    |
| 룩셈부르크 | 18.11                    | 22.43                    |
| 멕시코   | 0.00                     | 34.72                    |
| 네덜란드  | 163.03                   | 393.61                   |
| 뉴질랜드  | 2)                       | 3)                       |
| 노르웨이  | 240.06                   | 298.30                   |
| 폴란드   | 91.20                    | 54.31                    |
| 포르투갈  | 124.03                   | 118.82                   |
| 슬로바키아 | 33.57                    | 91.96                    |
| 슬로베니아 | 111.64                   | 98.43                    |

| 구분       | 2012년                    | 2024년                    |
|----------|--------------------------|--------------------------|
|          | 꺾련 담배 1,000개비당 총량세 (USD) | 꺾련 담배 1,000개비당 총량세 (USD) |
| 스페인      | 17.89                    | 26.85                    |
| 스웨덴      | 142.47                   | 173.42                   |
| 스위스      | 76.82                    | 131.47                   |
| 터키(튀르키예) | 127.23                   | 10.14                    |
| 영국       | 235.07                   | 395.88                   |
| 미국       | 129.00 <sup>4)</sup>     | 131.00 <sup>5)</sup>     |

- 주: 1. 2012년 칠레에서 담배 제품 판매에는 19%의 부가가치세와 가공 담배, 꺾련, 시가의 판매 또는 수입에 대한 세금이 부과됨. 가공 담배에 적용되는 세금은 판매 가격의 59.7%, 담배는 담뭍갑 판매 가격에 62.3%의 세율을 부과하며, 담뭍갑에 포함된 담배 1개당 Monthly Tax 단위의 0.0000675가 추가됨(Monthly Tax 단위는 약 CLP 31.138 또는 USD 64.276에 해당).
2. 2012년 뉴질랜드에서 실제 담배 함량이 0.8kg을 초과하지 않는 꺾련 담배 1,000개비에 대한 소비세율은 NZD 442.10, 꺾련 담배 1,000개비당 실제 담배 함량이 0.8kg을 초과하는 담배의 소비세율은 NZD 629.99임.
3. 2024년 뉴질랜드에서 실제 담배 함량이 0.8kg을 초과하지 않는 꺾련 담배 1,000개비에 대한 세율은 담배 함량 킬로그램당 NZD1,244.23임. 꺾련 담배 1,000개비당 실제 담배 함량이 0.8kg을 초과하는 담배와 담배용 롤링 담배에 대한 세율은 담배 함량 1킬로그램당 NZD 1,773.02임.
4. 미국은 주별로 세금의 범위가 매우 다양한데, 2012년의 담배 1,000개비당 연방 및 주 세금의 가중 평균은 USD 129.00이고, 담배에 대한 연방 소비세율은 소형 담배(1,000개비당 3파운드 이하)의 경우 1,000개비당 50.33달러, 대형 담배의 경우 1,000개비당 105.69달러, 무게가 3파운드 이하인 소형 시가의 경우 1,000개비당 50.33달러를 부과하였음.
5. 2024년 미국의 담배 1,000개비당 연방 및 주 소비세의 가중 평균은 USD 131.00이고, 담배에 대한 연방 소비세율은 소형 담배(1,000개비당 3파운드 이하)의 경우 1,000개비당 50.33달러, 대형 담배의 경우 1,000개비당 105.69달러를 부과하였음. 일부 주에서는 증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

출처: "Taxation of tobacco," OECD, 2012, Consumption Tax Trends 2012, pp.134-136;  
"Taxation of Tobacco," OECD, 2024, Consumption Tax Trends 2024, pp.205-211.

2. OECD 국가의 흡연율

OECD 국가의 평균 흡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매일 흡연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통계에서 흡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평균 흡연율은 19.7%였는데 2022년 13.5%, 2023년 10.8% 등으로 낮아졌다.

〈표 3-3〉 OECD 국가의 연도별 흡연율 추세: 15세 이상 매일 흡연자 비율

(단위: %)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평균  | 19.7 | 17.9 | 18.1 | 16.4 | 19.4 | 15.7   | 16.5 | 16.0 | 14.7 | 16.4 | 13.8 | 13.2 | 13.5 | 10.8 |
| AUS | 15.3 | .    | .    | 13   | .    | .      | 12.4 | .    | .    | 11.2 | .    | .    | 8.5  | .    |
| AUT | .    | .    | .    | .    | 24.3 | .      | .    | .    | .    | 20.6 | .    | .    | .    | .    |
| BEL | .    | .    | .    | 18.9 | .    | .      | .    | .    | 15.4 | .    | .    | .    | .    | .    |
| CAN | 16.3 | 15.7 | 16.1 | 14.9 | 14   | B 13.1 | 12.5 | 12   | 11.3 | 10.3 | 9.4  | 8.7  | 9.4  | .    |
| CHL | .    | .    | .    | .    | .    | .      | 24.5 | .    | .    | .    | 17.6 | .    | .    | .    |
| COL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CRI | 14.4 | 13.7 | 13   | 12.3 | 11.7 | 11     | 10.5 | 10   | 9.5  | 8.9  | 8.4  | 7.8  | 5.6  | 6.2  |
| CZE | 22.8 | 21.7 | 22.9 | 22.2 | 22.3 | 18.2   | 19.6 | 18.4 | 21.1 | 18.1 | 16.6 | 17.6 | 16.2 | .    |
| DNK | 20.9 | .    | .    | 17   | .    | .      | .    | 16.9 | .    | .    | .    | 13.9 | .    | 11.7 |
| EST | 26.2 | .    | 26   | .    | 22.1 | .      | 21.3 | .    | 17.2 | .    | 17.9 | .    | 15.9 | .    |
| FIN | 19   | 17.8 | 17   | 15.8 | 15.4 | 16.6   | 15.4 | 13.2 | 14.1 | 13.3 | 12.4 | .    | 11.3 | .    |
| FRA | 29.7 | .    | .    | .    | 28.5 | 29.4   | 29.4 | 26.9 | 25.4 | 24   | 25.5 | 25.3 | .    | .    |
| DEU | .    | .    | .    | 20.9 | .    | .      | .    | 18.8 | .    | .    | .    | 14.6 | .    | .    |
| GRC | .    | .    | .    | .    | 27.3 | .      | .    | .    | .    | 24.9 | .    | .    | .    | .    |
| HUN | .    | .    | .    | .    | 25.8 | .      | .    | .    | .    | 24.9 | .    | .    | .    | .    |
| ISL | 14.2 | 14.3 | 13.8 | 11.4 | 12.6 | 10.9   | 10.2 | 9.4  | 8.6  | 8.2  | 7.3  | 7.2  | 6.2  | 5.7  |
| IRL | .    | .    | .    | .    | .    | 19.0   | 19.0 | 18.0 | 17.0 | 14.0 | .    | 16.0 | 14.0 | 14.0 |
| ISR | 18.5 | .    | .    | 16.2 | 17.1 | .      | 19.6 | 16.9 | .    | 16.4 | .    | .    | .    | 16.9 |
| ITA | 23.1 | 22.5 | 22.1 | 21.1 | 19.7 | 19.8   | 20   | 19.9 | 19.2 | 18.6 | 18.8 | 19.1 | 19.8 | .    |
| JPN | 19.5 | 20.1 | 20.7 | 19.3 | 19.6 | 18.2   | 18.3 | 17.7 | 17.8 | 16.7 | .    | .    | .    | .    |
| KOR | 22.9 | 23.2 | 21.6 | 19.9 | 20   | 17.3   | 18.4 | 17.5 | 17.5 | 16.4 | 15.9 | 15.4 | 14.7 | .    |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LVA | .    | .    | .    | .    | 24.6 | .    | .    | .    | .    | 22.6 | .    | .    | .    | .    |
| LTU | .    | .    | .    | .    | 20.3 | .    | .    | .    | .    | 18.9 | .    | .    | .    | .    |
| LUX | 18.3 | 16.9 | 16.8 | 15.7 | 15.3 | 15   | 14.9 | 16   | 14.5 | 16.8 | 16.9 | 19.2 | 20.3 | 18.1 |
| MEX | .    | 10.3 | 11.8 | .    | .    | 7.6  | 6.4  | .    | 7.7  | .    | 7.4  | 8.6  | .    | .    |
| NLD | 20.9 | 20.8 | 18.4 | 18.5 | 19.1 | 19.0 | 18.0 | 16.8 | 15.5 | 15.4 | 14.4 | 14.7 | 12.7 | .    |
| NZL | .    | .    | 16.4 | 15.8 | 15.9 | 15.1 | 14.5 | 14.1 | 13.3 | 12.9 | 11.9 | 9.4  | 8.6  | 6.8  |
| NOR | 19   | 17   | 16   | 15   | 13   | 13   | 12   | 11   | 12   | 9    | 9    | 8    | 8    | 7    |
| POL | .    | .    | .    | .    | 22.7 | .    | .    | .    | .    | 17.1 | .    | .    | .    | .    |
| PRT | .    | .    | .    | .    | 16.8 | .    | .    | .    | .    | 14.2 | .    | .    | .    | .    |
| SVK | .    | .    | .    | .    | 22.9 | .    | .    | .    | .    | 21   | .    | .    | .    | .    |
| SVN | .    | .    | .    | .    | 18.9 | .    | .    | .    | .    | 17.4 | .    | .    | .    | .    |
| ESP | .    | 23.9 | .    | .    | 23   | .    | .    | 22.1 | .    | .    | 19.8 | .    | .    | .    |
| SWE | 13.6 | 13.1 | 12.8 | 10.7 | 11.9 | 11.2 | 10.9 | 10.4 | 10.1 | 10.4 | 9.5  | 9.7  | 8.7  | .    |
| CHE | .    | .    | 20.4 | .    | .    | .    | .    | 19.1 | .    | .    | .    | .    | 16.1 | .    |
| TUR | 25.4 | .    | 23.8 | .    | 27.3 | .    | 26.5 | .    | .    | 28   | .    | .    | 28.3 | .    |
| GBR | 20.3 | 19.8 | 20.4 | 19.2 | 18.8 | 17.8 | 16.1 | 16.8 | 16.6 | 15.8 | 14.5 | 12.7 | 11.2 | .    |
| USA | 15.1 | 14.8 | 14.2 | 13.7 | 12.9 | 11.4 | 11.8 | 10.5 | 10.3 | 10.9 | 9.4  | 8.8  | 8.9  | .    |

주: (AUS) Australia, (AUT) Austria, (BEL) Belgium, (CAN) Canada, (CHL) Chile, (COL) Colombia, (CRI) Costa Rica, (CZE) Czechia, (DNK) Denmark, (EST) Estonia, (FIN) Finland, (FRA) France, (DEU) Germany, (GRC) Greece, (HUN) Hungary, (ISL) Iceland, (IRL) Ireland, (ISR) Israel, (ITA) Italy, (JPN) Japan, (KOR) Korea, (LVA) Latvia, (LTU) Lithuania, (LUX) Luxembourg, (MEX) Mexico, (NLD) Netherlands, (NZL) New Zealand, (NOR) Norway, (POL) Poland, (PRT) Portugal, (SVK) Slovak Republic, (SVN) Slovenia, (ESP) Spain, (SWE) Sweden, (CHE) Switzerland, (TUR) Türkiye, (GBR) United Kingdom, (USA) United States.

출처: "Tobacco consumption: Share of population who are daily smokers," OECD Data Explorer,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vi/s?fs\[0\]=Topic%2C1%7CHealth%23HEA%23%7CRisk%20factors%20for%20health%23HEA\\_RIS%23&pg=0&fc=Topic&bp=true&snb=7&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EALTH\\_LVNG%40DF\\_HEALTH\\_LVNG\\_TC&df\[ag\]=OECD.ELS\\_HD&df\[vs\]=1.0&dq=A.SP\\_DS....&pd=2010%2C&to\[TIME\\_PERIOD\]=false&isAvailabilityDisable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fs[0]=Topic%2C1%7CHealth%23HEA%23%7CRisk%20factors%20for%20health%23HEA_RIS%23&pg=0&fc=Topic&bp=true&snb=7&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EALTH_LVNG%40DF_HEALTH_LVNG_TC&df[ag]=OECD.ELS_HD&df[vs]=1.0&dq=A.SP_DS....&pd=2010%2C&to[TIME_PERIOD]=false&isAvailabilityDisabled=false), 2025. 2. 19. 인출.

OECD 국가의 흡연율을 2022년까지의 최근 자료와 담배소비세를 비교했을 때 흡연율과 담배소비세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OECD 평균 흡연율은 16%였다. 우리나라는 15%였다. 영국 13%, 호주 11%, 스웨덴 10%, 캐나다 9%, 미국 9% 등이었다.

〈표 3-4〉 OECD 국가의 15세 이상 흡연율과 담배소비세 비교

(단위: %, US dollar)

| 국가              | 흡연율 (최근 자료 기준) | 담배소비세  |
|-----------------|----------------|--------|
| Türkiye         | 28             | 10.14  |
| Greece          | 25             | 89.67  |
| Hungary         | 25             | 83.55  |
| France          | 25             | 77.5   |
| Latvia          | 23             | 113.04 |
| Austria         | 21             | 83.15  |
| Slovak Republic | 21             | 91.96  |
| Spain           | 20             | 26.85  |
| Lithuania       | 19             | 92.72  |
| Italy           | 19             | 31.85  |
| Switzerland     | 19             | 131.47 |
| Luxembourg      | 19             | 22.43  |
| Chile           | 18             | 80.27  |
| Czechia         | 18             | 88.74  |
| Estonia         | 18             | 109.24 |
| Japan           | 17             | 108.51 |
| Poland          | 17             | 54.31  |
| Slovenia        | 17             | 98.43  |
| Ireland         | 16             | 465.74 |
| Israel          | 16             | 120.99 |
| Germany         | 15             | 121.2  |
| Netherlands     | 15             | 393.61 |
| Belgium         | 15             | 193.48 |
| Korea           | 15             | 116.61 |
| Denmark         | 14             | 280.9  |

| 국가             | 흡연율 (최근 자료 기준) | 담배소비세  |
|----------------|----------------|--------|
| Portugal       | 14             | 118.82 |
| United Kingdom | 13             | 395.88 |
| Finland        | 12             | 102.5  |
| Australia      | 11             | 823.41 |
| Sweden         | 10             | 173.42 |
| Mexico         | 9              | 34.72  |
| Canada         | 9              | 117.28 |
| United States  | 9              | 131    |
| New Zealand    | 9              | 823    |
| Costa Rica     | 8              | 48.85  |
| Norway         | 8              | 298.3  |
| Iceland        | 7              | 219.03 |

주: 담배소비세는 종량세 기준임.

출처: 1) "Tobacco consumption: Share of population who are daily smokers," OECD Data Explorer,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vis?fs\[0\]=Topic%2C1%7CHealth%23HEA%23%7CRisk%20factors%20for%20health%23HEA\\_RIS%23&pg=0&fc=Topic&bp=true&snb=7&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EALTH\\_LVNG%40DF\\_HEALTH\\_LVNG\\_TC&df\[ag\]=OECD.ELS.HD&df\[vs\]=1.0&dq=A.SP\\_DS....&pd=2010%2C&to\[TIME\\_PERIOD\]=false&isAvailabilityDisable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fs[0]=Topic%2C1%7CHealth%23HEA%23%7CRisk%20factors%20for%20health%23HEA_RIS%23&pg=0&fc=Topic&bp=true&snb=7&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EALTH_LVNG%40DF_HEALTH_LVNG_TC&df[ag]=OECD.ELS.HD&df[vs]=1.0&dq=A.SP_DS....&pd=2010%2C&to[TIME_PERIOD]=false&isAvailabilityDisabled=false). 2025. 2. 19. 인출

2) "Consumption Tax Trends 2024: VAT/GST and Excise, Core Design Features and Trends," OECD, 2024, pp.205~206,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dcd4dd36-en>.

## 제2절 담뱃세 부과율

### 1. 담배가격의 변화 동향

OECD 국가의 담배가격은 2008년 평균 4.56달러에서 2022년 평균 7.57달러로 상승하였다. 전체적으로 담배가격이 상승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3-5〉).

〈표 3-5〉 OECD 국가의 연도별 담배가격의 추세

(단위: US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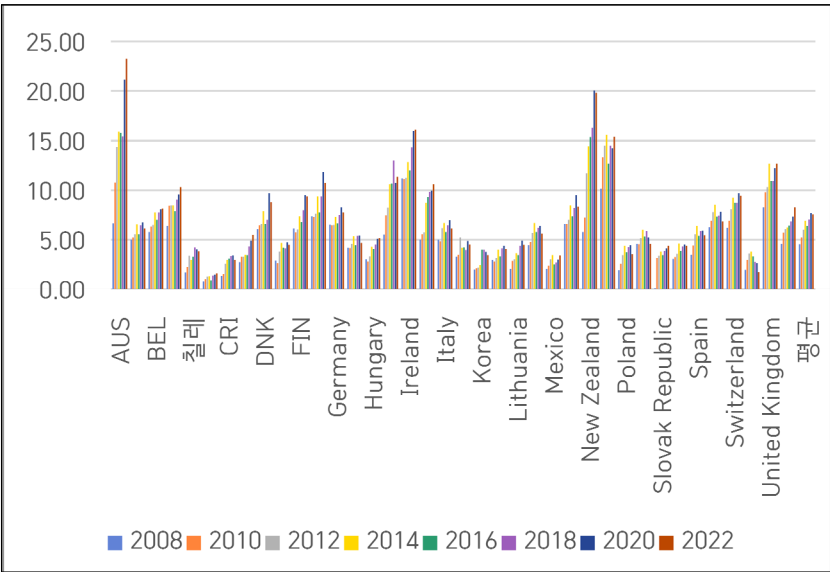
| 국가              | 2008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2020 | 2022 |
|-----------------|------|------|------|------|------|------|------|------|
| 평균              | 4.6  | 5.2  | 6.0  | 6.9  | 6.4  | 7.0  | 7.7  | 7.6  |
| Australia       | 6.7  | 10.8 | 14.4 | 15.9 | 15.8 | 15.4 | 21.1 | 23.3 |
| Austria         | 5.0  | 5.2  | 5.6  | 6.6  | 5.6  | 6.5  | 6.8  | 6.1  |
| Belgium         | 5.8  | 6.3  | 6.5  | 7.8  | 7.0  | 7.8  | 8.1  | 8.2  |
| Canada          | 6.4  | 8.4  | 8.5  | 8.5  | 7.9  | 9.1  | 9.6  | 10.3 |
| Chile           | 1.7  | 2.3  | 3.4  | 3.0  | 3.3  | 4.2  | 4.0  | 3.8  |
| Columbia        | 0.8  | 1.0  | 1.3  | 1.3  | 0.9  | 1.4  | 1.5  | 1.6  |
| Costa Rica      | 1.4  | 1.6  | 2.6  | 3.0  | 3.1  | 3.4  | 3.4  | 3.0  |
| Czechia         | 2.7  | 3.3  | 3.3  | 3.5  | 3.5  | 4.3  | 4.9  | 5.5  |
| Denmark         | 6.1  | 6.5  | 6.6  | 7.9  | 6.6  | 7.0  | 9.7  | 8.8  |
| Estonia         | 2.9  | 2.7  | 3.8  | 4.7  | 4.2  | 4.1  | 4.7  | 4.5  |
| Finland         | 6.1  | 5.7  | 6.0  | 7.4  | 6.8  | 8.0  | 9.5  | 9.4  |
| France          | 7.4  | 7.3  | 7.7  | 9.4  | 7.8  | 9.4  | 11.9 | 10.7 |
| Germany         | 6.6  | 6.5  | 6.5  | 7.3  | 6.7  | 7.5  | 8.3  | 7.8  |
| Greece          | 4.2  | 4.2  | 4.6  | 5.4  | 4.5  | 5.4  | 5.5  | 4.7  |
| Hungary         | 3.0  | 2.8  | 3.3  | 4.3  | 4.1  | 4.5  | 5.1  | 5.2  |
| Iceland         | 5.5  | 7.5  | 8.3  | 10.6 | 10.7 | 13.0 | 10.8 | 11.4 |
| Ireland         | 11.2 | 11.1 | 11.2 | 12.8 | 12.0 | 14.3 | 16.0 | 16.1 |
| Israel          | 5.0  | 5.6  | 5.8  | 8.8  | 9.3  | 9.8  | 10.0 | 10.6 |
| Italy           | 5.0  | 4.8  | 6.2  | 6.7  | 5.8  | 6.5  | 7.0  | 6.1  |
| Japan           | 3.3  | 3.5  | 5.3  | 4.2  | 4.2  | 4.0  | 4.9  | 4.5  |
| Korea           | 2.0  | 2.1  | 2.2  | 2.4  | 4.0  | 4.0  | 3.8  | 3.5  |
| Latvia          | 3.0  | 2.8  | 3.2  | 4.0  | 3.3  | 4.1  | 4.4  | 4.1  |
| Lithuania       | 2.0  | 2.9  | 3.0  | 3.7  | 3.5  | 4.4  | 4.9  | 4.5  |
| Luxembourg      | 4.5  | 4.8  | 5.7  | 6.7  | 5.8  | 6.2  | 6.4  | 5.6  |
| Mexico          | 2.1  | 2.4  | 3.0  | 3.5  | 2.5  | 2.7  | 3.0  | 3.4  |
| Netherlands     | 6.6  | 6.6  | 7.0  | 8.5  | 7.4  | 8.2  | 9.5  | 8.4  |
| New Zealand     | 5.8  | 7.2  | 11.7 | 14.4 | 15.4 | 16.3 | 20.0 | 19.8 |
| Norway          | 10.1 | 13.3 | 14.5 | 15.6 | 12.7 | 14.5 | 14.2 | 15.4 |
| Poland          | 1.9  | 2.6  | 3.5  | 4.4  | 3.7  | 4.3  | 4.4  | 3.6  |
| Portugal        | 4.6  | 4.6  | 5.2  | 6.0  | 5.3  | 5.9  | 5.2  | 4.6  |
| Slovak Republic | 0.1  | 3.2  | 3.4  | 3.8  | 3.5  | 3.9  | 4.2  | 4.4  |

74 담뭍세 부과 및 활용 정책의 국제비교: 보건 의료 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 국가             | 2008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2020 | 2022 |
|----------------|------|------|------|------|------|------|------|------|
| Slovenia       | 3.1  | 3.3  | 3.6  | 4.6  | 3.9  | 4.3  | 4.5  | 4.4  |
| Spain          | 3.5  | 4.4  | 5.6  | 6.4  | 5.4  | 5.9  | 5.9  | 5.5  |
| Sweden         | 6.3  | 6.9  | 7.8  | 8.6  | 7.3  | 7.4  | 7.8  | 6.9  |
| Switzerland    | 6.2  | 6.9  | 8.1  | 9.2  | 8.7  | 8.7  | 9.7  | 9.5  |
| Türkiye        | 2.0  | 3.0  | 3.6  | 3.8  | 3.3  | 2.8  | 2.7  | 1.8  |
| United Kingdom | 8.3  | 9.8  | 10.3 | 12.7 | 10.9 | 10.9 | 12.2 | 12.7 |
| United States  | 4.6  | 5.7  | 6.1  | 6.2  | 6.4  | 6.9  | 7.3  | 8.3  |

출처: “Most sold brand of cigarettes: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a pack of 20 cigarettes (Tobacco control: Raise taxes),” WHO, 2024g,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gho-tobacco-control-raise-taxes-national-taxes-pack-of-20>.에서 2025. 2. 25. 인출하여 저자가 표로 재구성함.

[그림 3-1] OECD 국가의 연도별 담배가격(US달러 기준)



출처: “Most sold brand of cigarettes: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a pack of 20 cigarettes (Tobacco control: Raise taxes),” WHO, 2024g,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gho-tobacco-control-raise-taxes-national-taxes-pack-of-20>.에서 2025. 2. 25. 인출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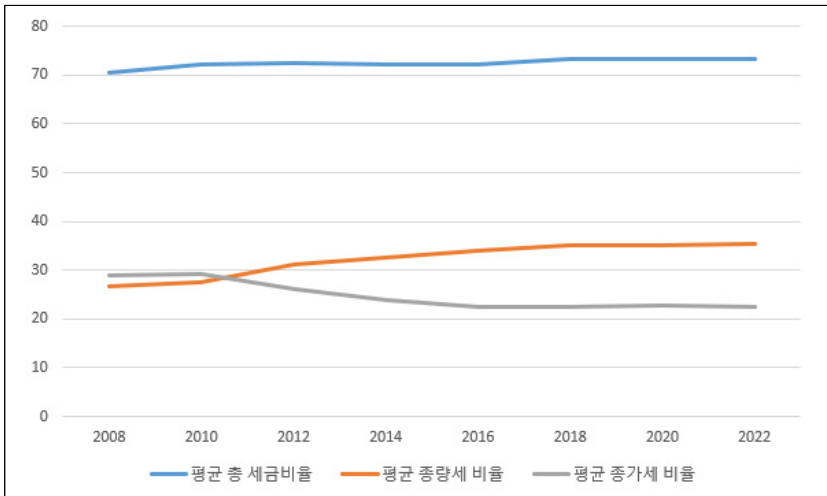
## 2. 세금 비율의 변화

필련 담배의 세금 비율을 종량세, 종가세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필련 담배에서 총 세금 비율은 2008년 70%에서 2022년 73%로 증가하였다. 종량세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 반면, 종가세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종가세 비율은 2010년 이후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세 비율은 2008년 평균 26.7%에서 2022년 평균 35.3%로 증가하였다. 2022년 기준 뉴질랜드 69.7%, 호주 67.9%, 한국 64.8%, 덴마크 60.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흡연율이 높은 국가인 프랑스의 경우 종가세 비율이 12.1%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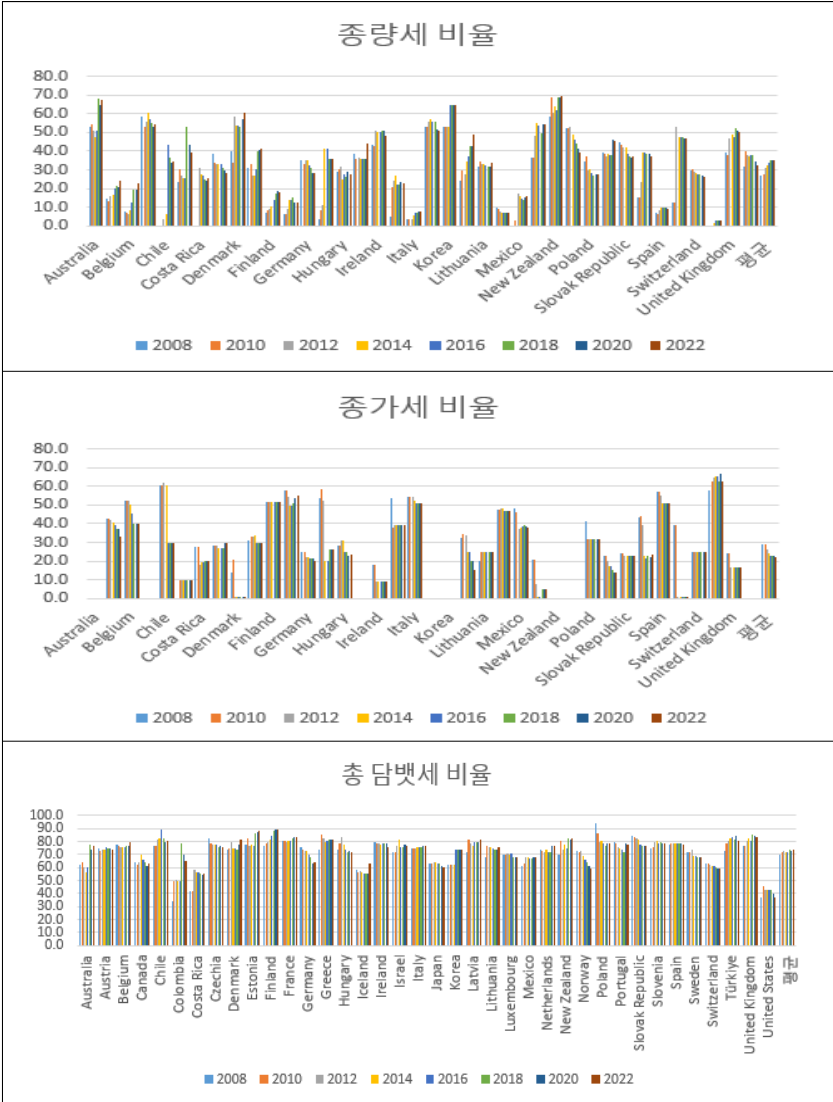
[그림 3-2] OECD 국가 필련 담배의 종량세, 종가세, 총 세금 비율의 추세

(단위: %)



출처: “Most sold brand of cigarettes: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a pack of 20 cigarettes (Tobacco control: Raise taxes),” WHO, 2024g,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gho-tobacco-control-raise-taxes-national-taxes-pack-of-20>.에서 2025. 2. 25. 인출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그림 3-3] OECD 국가 결련 담배의 연도별 세금 비율의 추세(2008~2022년)



출처: “Most sold brand of cigarettes: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a pack of 20 cigarettes (Tobacco control: Raise taxes),” WHO, 2024g,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gho-tobacco-control-raise-taxes-national-taxes-pack-of-20>.에서 2025. 2. 25. 인출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표 3-6〉 OECD 국가 결련의 연도별 종량세 비율의 추세

(단위: %)

| 구분              | 2008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2020 | 2022 |
|-----------------|------|------|------|------|------|------|------|------|
| 평균 종량세 비율       | 26.7 | 27.6 | 31.1 | 32.7 | 33.9 | 35.2 | 35.0 | 35.3 |
| Australia       | 53.0 | 54.7 | 51.2 | 47.7 | 51.2 | 68.4 | 64.8 | 67.9 |
| Austria         | 14.8 | 13.4 | 15.6 | 16.3 | 20.0 | 21.1 | 20.4 | 24.3 |
| Belgium         | 7.7  | 6.6  | 6.2  | 8.2  | 12.5 | 19.6 | 19.6 | 22.5 |
| Canada          | 58.8 | 53.4 | 55.6 | 60.9 | 57.2 | 55.4 | 52.8 | 54.5 |
| Chile           | 0.0  | 0.0  | 3.3  | 6.4  | 43.2 | 36.4 | 34.1 | 34.3 |
| Colombia        | 23.8 | 30.3 | 26.8 | 25.7 | 25.7 | 52.8 | 43.6 | 39.2 |
| Costa Rica      | 0.0  | 0.0  | 30.8 | 27.4 | 26.6 | 24.6 | 24.2 | 25.5 |
| Czechia         | 38.9 | 34.0 | 32.9 | 33.1 | 33.1 | 31.1 | 29.8 | 28.3 |
| Denmark         | 39.8 | 34.0 | 58.3 | 53.8 | 53.8 | 53.2 | 57.0 | 60.5 |
| Estonia         | 31.1 | 32.9 | 27.2 | 26.6 | 30.5 | 39.7 | 41.0 | 41.5 |
| Finland         | 6.9  | 8.0  | 9.2  | 10.2 | 13.6 | 17.1 | 18.3 | 18.1 |
| France          | 6.0  | 6.0  | 8.9  | 13.9 | 13.9 | 15.0 | 12.6 | 12.1 |
| Germany         | 35.2 | 33.4 | 35.2 | 35.2 | 32.7 | 30.7 | 28.1 | 28.6 |
| Greece          | 3.7  | 8.6  | 11.0 | 41.3 | 41.3 | 35.9 | 35.9 | 35.9 |
| Hungary         | 29.1 | 30.6 | 31.4 | 25.0 | 27.3 | 26.0 | 29.0 | 27.3 |
| Iceland         | 38.7 | 36.1 | 36.6 | 36.1 | 36.2 | 36.1 | 35.6 | 44.2 |
| Ireland         | 43.6 | 42.9 | 51.2 | 50.4 | 50.4 | 50.7 | 51.3 | 48.5 |
| Israel          | 5.0  | 20.4 | 23.9 | 26.6 | 22.2 | 22.0 | 23.6 | 22.7 |
| Italy           | 3.8  | 3.8  | 3.6  | 5.2  | 6.9  | 7.0  | 7.3  | 7.4  |
| Japan           | 52.8 | 52.8 | 55.7 | 57.0 | 55.7 | 55.7 | 51.9 | 50.8 |
| Korea           | 52.9 | 52.9 | 52.9 | 52.9 | 64.8 | 64.8 | 64.8 | 64.8 |
| Latvia          | 24.1 | 29.6 | 27.8 | 34.5 | 37.5 | 42.6 | 42.5 | 49.0 |
| Lithuania       | 31.6 | 34.7 | 32.9 | 33.4 | 32.7 | 31.5 | 31.7 | 33.8 |
| Luxembourg      | 9.6  | 9.2  | 7.5  | 7.1  | 7.1  | 7.1  | 7.1  | 7.1  |
| Mexico          | 0.0  | 2.7  | 17.5 | 15.6 | 14.8 | 14.0 | 15.5 | 15.6 |
| Netherlands     | 36.8 | 36.5 | 48.6 | 55.1 | 54.0 | 49.5 | 54.8 | 54.6 |
| New Zealand     | 58.9 | 69.2 | 61.0 | 64.2 | 61.9 | 69.2 | 69.0 | 69.7 |
| Norway          | 52.7 | 52.4 | 52.8 | 48.8 | 46.0 | 44.0 | 41.6 | 39.6 |
| Poland          | 34.5 | 36.9 | 29.5 | 30.2 | 28.1 | 26.7 | 27.7 | 27.7 |
| Portugal        | 39.2 | 38.6 | 37.3 | 38.8 | 37.9 | 38.0 | 45.9 | 45.3 |
| Slovak Republic | 44.7 | 43.3 | 42.4 | 41.9 | 38.4 | 37.5 | 36.6 | 37.0 |
| Slovenia        | 15.0 | 15.2 | 23.6 | 39.4 | 39.3 | 38.6 | 38.8 | 37.4 |

78 담뭍세 부과 및 활용 정책의 국제비교: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 구분             | 2008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2020 | 2022 |
|----------------|------|------|------|------|------|------|------|------|
| Spain          | 6.6  | 6.0  | 8.4  | 10.0 | 9.9  | 9.9  | 9.9  | 9.2  |
| Sweden         | 12.7 | 12.4 | 52.8 | 47.8 | 47.5 | 47.4 | 47.1 | 46.9 |
| Switzerland    | 30.0 | 30.4 | 29.1 | 28.2 | 27.8 | 27.5 | 26.9 | 26.3 |
| Türkiye        | 0.0  | 0.0  | 0.0  | 1.6  | 2.6  | 3.1  | 2.6  | 2.5  |
| United Kingdom | 39.5 | 37.9 | 47.0 | 49.0 | 47.3 | 52.3 | 51.0 | 50.6 |
| United States  | 31.6 | 39.9 | 37.7 | 37.4 | 37.8 | 37.8 | 34.8 | 32.2 |

출처: “Most sold brand of cigarettes: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a pack of 20 cigarettes (Tobacco control: Raise taxes),” WHO, 2024g,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gho-tobacco-control-raise-taxes-national-taxes-pack-of-20>.에서 2025. 2. 25. 인출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표 3-7〉 OECD 국가 꺾련의 연도별 증가세 비율의 추세

(단위: %)

| 구분         | 2008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2020 | 2022 |
|------------|------|------|------|------|------|------|------|------|
| 평균 증가세 비율  | 29.0 | 29.3 | 26.0 | 23.9 | 22.6 | 22.5 | 22.7 | 22.4 |
| Australia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Austria    | 43.0 | 43.0 | 42.0 | 41.0 | 39.0 | 37.5 | 37.5 | 33.0 |
| Belgium    | 52.4 | 52.4 | 52.5 | 50.4 | 45.8 | 40.0 | 40.0 | 40.0 |
| Canada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Chile      | 60.4 | 60.4 | 62.3 | 60.5 | 30.0 | 30.0 | 30.0 | 30.0 |
| Colombia   | 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Costa Rica | 27.9 | 27.9 | 18.3 | 19.3 | 19.6 | 20.2 | 20.3 | 20.3 |
| Czechia    | 28.0 | 28.0 | 28.0 | 27.0 | 27.0 | 27.0 | 30.0 | 30.0 |
| Denmark    | 13.6 | 20.8 | 1.0  | 1.0  | 1.0  | 1.0  | 1.0  | 1.0  |
| Estonia    | 31.0 | 33.0 | 33.0 | 34.0 | 30.0 | 30.0 | 30.0 | 30.0 |
| Finland    | 52.0 | 52.0 | 52.0 | 52.0 | 52.0 | 52.0 | 52.0 | 52.0 |
| France     | 58.0 | 58.0 | 54.6 | 49.7 | 49.7 | 50.8 | 54.0 | 55.0 |
| Germany    | 24.7 | 24.7 | 21.9 | 21.7 | 21.7 | 21.7 | 21.7 | 19.8 |
| Greece     | 53.8 | 58.4 | 52.5 | 20.0 | 20.0 | 26.0 | 26.0 | 26.0 |
| Hungary    | 28.3 | 28.3 | 31.0 | 31.0 | 25.0 | 25.0 | 22.5 | 23.5 |
| Iceland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Ireland    | 18.3 | 18.3 | 9.0  | 8.7  | 9.2  | 9.0  | 8.9  | 8.8  |
| Israel     | 53.7 | 38.1 | 39.4 | 39.4 | 39.4 | 39.4 | 39.4 | 39.4 |
| Italy      | 54.7 | 54.7 | 54.3 | 52.4 | 51.0 | 51.0 | 51.2 | 51.2 |
| Japan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구분              | 2008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2020 | 2022 |
|-----------------|------|------|------|------|------|------|------|------|
| Korea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Latvia          | 32.2 | 34.5 | 34.0 | 25.0 | 25.0 | 20.0 | 20.0 | 15.0 |
| Lithuania       | 20.0 | 25.0 | 25.0 | 25.0 | 25.0 | 25.0 | 25.0 | 25.0 |
| Luxembourg      | 47.4 | 47.8 | 48.1 | 48.1 | 46.7 | 46.7 | 46.7 | 46.9 |
| Mexico          | 48.1 | 46.2 | 37.1 | 38.3 | 38.7 | 39.2 | 38.3 | 38.3 |
| Netherlands     | 20.9 | 20.5 | 7.6  | 1.0  | 0.8  | 5.0  | 5.0  | 5.0  |
| New Zealand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Norway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Poland          | 41.3 | 31.4 | 31.4 | 31.4 | 31.4 | 31.4 | 32.1 | 32.1 |
| Portugal        | 23.0 | 23.0 | 20.0 | 17.0 | 17.0 | 15.0 | 14.0 | 14.0 |
| Slovak Republic | 24.0 | 24.0 | 23.0 | 23.0 | 23.0 | 23.0 | 23.0 | 23.0 |
| Slovenia        | 43.2 | 44.0 | 39.1 | 23.0 | 21.2 | 22.6 | 21.9 | 23.5 |
| Spain           | 57.0 | 57.0 | 55.0 | 51.0 | 51.0 | 51.0 | 51.0 | 51.0 |
| Sweden          | 39.2 | 39.2 | 1.0  | 1.0  | 1.0  | 1.0  | 1.0  | 1.0  |
| Switzerland     | 25.0 | 25.0 | 25.0 | 25.0 | 25.0 | 25.0 | 25.0 | 25.0 |
| Türkiye         | 58.0 | 63.0 | 65.0 | 65.3 | 65.3 | 63.0 | 67.0 | 63.0 |
| United Kingdom  | 24.0 | 24.0 | 16.5 | 16.5 | 16.5 | 16.5 | 16.5 | 16.5 |
| United States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출처: “Most sold brand of cigarettes: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a pack of 20 cigarettes (Tobacco control: Raise taxes),” WHO, 2024g,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gho-tobacco-control-raise-taxes-national-taxes-pack-of-20>에서 2025. 2. 25. 인출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표 3-8〉 OECD 국가별 결련의 총 세금 비율의 연도별 추세

(단위: %)

| 구분         | 2008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2020 | 2022 |
|------------|------|------|------|------|------|------|------|------|
| 평균 총 세금비율  | 70.4 | 72.1 | 72.6 | 72.3 | 72.2 | 73.4 | 73.3 | 73.4 |
| Australia  | 62.1 | 63.8 | 60.3 | 56.8 | 60.3 | 77.5 | 73.9 | 77.0 |
| Austria    | 74.5 | 73.0 | 74.2 | 74.0 | 75.7 | 75.3 | 74.5 | 74.0 |
| Belgium    | 77.4 | 76.4 | 76.1 | 75.9 | 75.7 | 77.0 | 77.0 | 79.9 |
| Canada     | 64.6 | 62.2 | 64.5 | 69.8 | 66.2 | 64.4 | 61.7 | 63.3 |
| Chile      | 76.4 | 76.4 | 81.5 | 82.9 | 89.1 | 82.4 | 80.0 | 80.3 |
| Colombia   | 34.3 | 49.9 | 50.6 | 49.4 | 49.5 | 78.8 | 69.6 | 65.2 |
| Costa Rica | 41.6 | 41.6 | 58.5 | 56.6 | 56.2 | 55.1 | 54.9 | 55.1 |

80 담뭍세 부과 및 활용 정책의 국제비교: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 구분              | 2008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2020 | 2022 |
|-----------------|------|------|------|------|------|------|------|------|
| Czechia         | 82.8 | 78.6 | 77.6 | 77.4 | 77.5 | 75.4 | 77.2 | 75.6 |
| Denmark         | 73.4 | 74.8 | 79.3 | 74.8 | 74.8 | 74.2 | 78.0 | 81.5 |
| Estonia         | 77.3 | 82.6 | 76.9 | 77.2 | 77.2 | 86.4 | 87.6 | 88.2 |
| Finland         | 76.9 | 78.7 | 79.9 | 81.5 | 84.9 | 88.4 | 89.6 | 89.4 |
| France          | 80.4 | 80.4 | 79.9 | 80.3 | 80.3 | 82.5 | 83.2 | 83.8 |
| Germany         | 75.8 | 74.1 | 73.0 | 72.9 | 70.4 | 68.4 | 63.5 | 64.4 |
| Greece          | 73.5 | 85.7 | 82.2 | 80.0 | 80.6 | 81.2 | 81.2 | 81.2 |
| Hungary         | 74.1 | 78.9 | 83.7 | 77.3 | 73.5 | 72.3 | 72.7 | 72.0 |
| Iceland         | 58.3 | 56.4 | 57.0 | 56.4 | 55.5 | 55.5 | 55.0 | 63.6 |
| Ireland         | 79.5 | 78.5 | 79.0 | 77.8 | 78.3 | 78.4 | 78.9 | 76.1 |
| Israel          | 72.1 | 72.3 | 77.1 | 81.3 | 76.2 | 75.9 | 77.6 | 76.6 |
| Italy           | 75.2 | 75.2 | 75.2 | 75.7 | 75.9 | 76.0 | 76.6 | 76.7 |
| Japan           | 63.1 | 63.1 | 64.5 | 64.4 | 63.1 | 63.1 | 61.0 | 59.9 |
| Korea           | 62.0 | 62.0 | 62.0 | 62.0 | 73.9 | 73.9 | 73.9 | 73.9 |
| Latvia          | 71.5 | 81.5 | 79.1 | 76.9 | 79.8 | 80.0 | 79.9 | 81.4 |
| Lithuania       | 67.6 | 77.1 | 75.3 | 75.8 | 75.1 | 73.8 | 74.0 | 76.1 |
| Luxembourg      | 70.1 | 70.1 | 70.6 | 70.2 | 70.7 | 68.3 | 68.3 | 68.5 |
| Mexico          | 61.2 | 62.7 | 68.3 | 67.6 | 67.3 | 67.0 | 67.6 | 67.6 |
| Netherlands     | 73.7 | 73.0 | 72.2 | 73.4 | 72.2 | 71.8 | 77.2 | 77.0 |
| New Zealand     | 70.0 | 80.3 | 74.0 | 77.2 | 74.9 | 82.2 | 82.0 | 82.8 |
| Norway          | 72.7 | 72.4 | 72.8 | 68.8 | 66.0 | 64.0 | 61.6 | 59.6 |
| Poland          | 93.8 | 86.4 | 79.6 | 80.3 | 78.2 | 76.8 | 78.4 | 78.4 |
| Portugal        | 79.6 | 79.0 | 76.0 | 74.5 | 73.6 | 71.7 | 78.6 | 78.0 |
| Slovak Republic | 84.6 | 83.3 | 82.2 | 81.5 | 78.1 | 77.1 | 76.3 | 76.7 |
| Slovenia        | 74.9 | 75.9 | 79.3 | 80.4 | 78.5 | 79.2 | 78.7 | 79.0 |
| Spain           | 77.4 | 78.3 | 78.7 | 78.4 | 78.3 | 78.2 | 78.2 | 77.6 |
| Sweden          | 71.9 | 71.6 | 73.8 | 68.8 | 68.5 | 68.4 | 68.1 | 67.9 |
| Switzerland     | 63.2 | 63.5 | 62.2 | 61.2 | 60.9 | 60.3 | 59.6 | 59.0 |
| Türkiye         | 73.3 | 78.3 | 80.3 | 82.1 | 83.1 | 81.4 | 84.9 | 80.8 |
| United Kingdom  | 76.6 | 76.7 | 80.1 | 82.2 | 80.5 | 85.5 | 84.2 | 83.7 |
| United States   | 36.6 | 45.3 | 42.9 | 42.5 | 43.0 | 43.0 | 40.0 | 37.4 |

출처: “Most sold brand of cigarettes: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a pack of 20 cigarettes (Tobacco control: Raise taxes),” WHO, 2024g,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gho-tobacco-control-raise-taxes-national-taxes-pack-of-20>.에서 2025. 2. 25. 인출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 3. 구매력 평가지수 기반 담배 제품의 가격 추세

담배 제품에 대한 구매력 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sup>5)</sup> 기반 가격은 평균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으로 볼 때 2020년과 2022년은 거의 차이가 없고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구매력 평가지수 기반으로 보정된 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였고, 뉴질랜드,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이 10위 안에 들었다.

〈표 3-9〉 OECD 담배 제품의 구매력 평가지수(PPP) 기반으로 보정된 가격의 추세

| 구분         | 2008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2020 | 2022 |
|------------|------|------|------|------|------|------|------|------|
| 평균         | 6.4  | 7.0  | 7.8  | 8.6  | 9.5  | 9.8  | 10.5 | 10.1 |
| Australia  | 9.2  | 10.9 | 11.3 | 14.5 | 17.7 | 16.5 | 22.4 | 22.0 |
| Austria    | 5.9  | 6.4  | 7.1  | 7.6  | 7.9  | 8.4  | 8.3  | 8.1  |
| Belgium    | 6.8  | 7.8  | 8.2  | 9.0  | 9.9  | 10.0 | 10.0 | 10.4 |
| Canada     | 8.6  | 9.5  | 8.7  | 9.3  | 10.4 | 11.5 | 12.2 | 10.5 |
| Chile      | 4.7  | 4.6  | 6.0  | 5.7  | 6.5  | 7.7  | 7.8  | 7.6  |
| Colombia   | 2.3  | 2.3  | 2.4  | 2.5  | 2.6  | 3.4  | 4.6  | 5.0  |
| Costa Rica | 3.5  | 3.2  | 4.7  | 5.4  | 5.9  | 6.3  | 6.5  | 5.9  |
| Czechia    | 5.3  | 6.2  | 6.5  | 7.0  | 8.1  | 8.8  | 9.4  | 9.9  |
| Denmark    | 5.9  | 6.6  | 6.7  | 7.4  | 7.6  | 7.7  | 10.2 | 9.7  |
| Estonia    | 4.7  | 4.7  | 7.6  | 8.2  | 8.8  | 7.5  | 8.3  | 7.3  |
| Finland    | 6.7  | 6.6  | 6.9  | 7.5  | 8.5  | 9.2  | 10.5 | 11.2 |
| France     | 8.4  | 8.8  | 9.4  | 10.7 | 10.9 | 12.3 | 14.8 | 14.7 |
| Germany    | 8.1  | 8.3  | 8.5  | 8.8  | 9.7  | 10.1 | 10.6 | 10.6 |
| Greece     | 5.7  | 6.0  | 6.9  | 8.1  | 8.3  | 9.5  | 9.6  | 8.5  |
| Hungary    | 6.5  | 6.6  | 7.7  | 9.6  | 10.6 | 10.5 | 11.3 | 13.3 |
| Iceland    | 7.8  | 9.0  | 9.3  | 10.9 | 11.1 | 11.5 | 11.3 | 10.4 |

5) 구매력 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국가 간의 가격 차이를 제거한 지표임.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purchasing-power-parities-ppp.html>

| 구분              | 2008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2020 | 2022 |
|-----------------|------|------|------|------|------|------|------|------|
| Ireland         | 11.9 | 13.8 | 14.1 | 14.5 | 16.6 | 18.2 | 19.7 | 21.4 |
| Israel          | 6.8  | 7.1  | 7.4  | 9.4  | 11.5 | 11.4 | 10.4 | 10.3 |
| Italy           | 6.4  | 6.5  | 8.5  | 8.4  | 9.0  | 9.5  | 9.9  | 9.6  |
| Japan           | 3.5  | 3.6  | 5.0  | 5.2  | 5.1  | 5.0  | 5.7  | 6.6  |
| Korea           | 4.1  | 3.9  | 3.7  | 3.5  | 6.4  | 6.1  | 6.1  | 5.7  |
| Latvia          | 4.9  | 5.2  | 5.6  | 7.5  | 7.5  | 8.3  | 8.6  | 7.5  |
| Lithuania       | 3.9  | 6.1  | 6.2  | 6.6  | 8.6  | 9.8  | 10.4 | 8.9  |
| Luxembourg      | 5.1  | 5.5  | 6.5  | 7.0  | 7.4  | 7.4  | 7.2  | 6.5  |
| Mexico          | 5.5  | 5.4  | 6.5  | 6.9  | 6.8  | 6.4  | 7.8  | 7.1  |
| Netherlands     | 7.5  | 8.0  | 8.8  | 9.7  | 10.2 | 10.5 | 11.4 | 10.7 |
| New Zealand     | 9.6  | 9.1  | 12.4 | 14.6 | 18.3 | 19.2 | 22.6 | 21.9 |
| Norway          | 11.0 | 12.5 | 12.3 | 13.0 | 13.2 | 13.3 | 15.2 | 13.1 |
| Poland          | 4.6  | 6.0  | 8.2  | 9.6  | 10.3 | 10.5 | 10.4 | 8.5  |
| Portugal        | 7.0  | 7.4  | 8.9  | 9.6  | 10.3 | 10.2 | 8.6  | 8.0  |
| Slovak Republic | 5.5  | 6.4  | 6.9  | 7.2  | 7.5  | 7.7  | 7.8  | 8.5  |
| Slovenia        | 4.8  | 5.3  | 6.1  | 7.2  | 7.4  | 7.6  | 7.6  | 7.7  |
| Spain           | 4.6  | 6.3  | 8.3  | 9.0  | 9.2  | 9.4  | 9.1  | 9.0  |
| Sweden          | 7.6  | 7.5  | 7.8  | 8.4  | 8.7  | 8.7  | 8.7  | 8.0  |
| Switzerland     | 6.2  | 6.8  | 7.4  | 8.1  | 8.6  | 8.6  | 8.9  | 8.7  |
| Türkiye         | 5.0  | 6.6  | 8.1  | 9.0  | 9.8  | 10.1 | 10.6 | 7.4  |
| United Kingdom  | 11.1 | 12.0 | 12.0 | 13.3 | 14.7 | 14.2 | 14.9 | 15.4 |
| United States   | 6.2  | 7.7  | 7.7  | 7.7  | 7.8  | 8.0  | 8.3  | 8.3  |

출처: “Inflation-adjusted prices in LCU and PPP,” WHO, 2024h,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inflation-adjusted-prices-in-lcu-and-ppp> 에서 2025. 2. 25. 인출하여 저자가 표로 재구성함.

4. 결련형 전자담배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보건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일부 OECD 국가의 결련형 전자담배 가격을 검토한 결과, 뉴질랜드가 11.8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스위스 8.4달러, 이스라엘 8.0달러, 프랑스 7.7달러, 독일 6.6달러, 영국 6.1달러, 한국 3.5달러 등이었다(표 3-10)).

〈표 3-10〉 일부 OECD 국가별 결련형 전자담배(HTP)의 가격과 세금 비율(2022년 기준)

| 구분                | Price<br>(US \$) | Ad valorem<br>tax | Specific excise<br>tax | 총 세금 비율 |
|-------------------|------------------|-------------------|------------------------|---------|
| Colombia          | 1.7              | 10.0              | 37.3                   | 63.2    |
| Austria           | 5.3              | 0.0               | 17.2                   | 33.9    |
| Switzerland       | 8.4              | 12.0              | 0.0                    | 20.6    |
| Czechia           | 4.5              | 0.0               | 15.9                   | 33.2    |
| Germany           | 6.6              | 13.3              | 32.3                   | 61.6    |
| Denmark           | 6.3              | 0.0               | 19.6                   | 39.6    |
| Spain             | 4.4              | 28.4              | 0.0                    | 45.8    |
| Estonia           | 4.6              | 0.0               | 13.6                   | 30.3    |
| France            | 7.7              | 51.4              | 2.5                    | 70.6    |
| United Kingdom    | 6.1              | 0.0               | 32.4                   | 49.1    |
| Greece            | 4.1              | 0.0               | 23.5                   | 42.9    |
| Hungary           | 3.8              | 0.0               | 46.7                   | 68.0    |
| Israel            | 8.0              | 39.4              | 30.2                   | 84.2    |
| Italy             | 5.1              | 0.0               | 21.5                   | 39.5    |
| Lithuania         | 4.1              | 0.0               | 22.8                   | 40.2    |
| Latvia            | 4.9              | 0.0               | 25.9                   | 43.2    |
| Netherlands       | 6.1              | 0.0               | 16.1                   | 33.5    |
| Poland            | 3.3              | 0.0               | 12.1                   | 30.8    |
| Portugal          | 4.6              | 0.1               | 0.2                    | 0.4     |
| Slovakia          | 4.5              | 0.0               | 21.8                   | 38.5    |
| Slovenia          | 4.1              | 0.0               | 15.8                   | 33.8    |
| Sweden            | 5.1              | 0.0               | 23.1                   | 43.1    |
| Republic of Korea | 3.5              | 0.0               | 57.7                   | 66.8    |
| New Zealand       | 11.8             | 0.0               | 39.0                   | 52.0    |

출처: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20 sticks of heated tobacco products,” WHO, 2024d,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national-taxes-and-retail-price-for-20-sticks-of-heated-tobacco-products> 에서 2025. 2. 25. 인출하여 저자가 표로 재구성함.

## 제3절 주요 국가별 가격 정책

### 1. 미국

#### 가. 조세 정책

미국은 WHO FCTC의 당사국이 아니며 동시에 다국적 담배 기업이 있는 담배 생산국으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미국 내에서는 보건부처의 강력한 금연 홍보교육 정책으로 흡연율 감소를 달성해 왔다. 미국의 담배소비세는 주별로 다양한 특성이 있고 평균으로 볼 때 켈런 1,000개비당 종량세가 2012년 129달러에서 2024년 131달러로 증가했다. 일부 주에서는 종가세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15세 이상 매일 흡연율은 2021년 기준 8.8%였다. 미국 18세 이상 성인 흡연율은 18%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2024년 기준 연방정부의 세금은 한 갑당 1.01달러였다. 주 단위 평균 부과세는 2024년의 경우 한 갑당 1.93달러였다. 뉴욕주는 한 갑당 5.35달러였고, 미주리주는 한 갑당 17센트였다.<sup>6)</sup>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세후 활용에 대한 사항을 권고해왔고, 전체적으로 흡연 예방에 3.3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미국의 주정부에서 추진하는 담배규제 프로그램의 예산은 담뱃세뿐만 아니라 담배회사와의 협약 비용(Tobacco industry settlement pay-

6) OECD. (2024). Consumption Tax Trends 2024. pp.205-211.

미국은 주별로 세금의 범위가 매우 다양한데, 2012년의 담배 1,000개비당 연방 및 주 세금의 가중 평균은 USD 129.00이고, 담배에 대한 연방 소비세율은 소형 담배(1,000개비당 3파운드 이하)는 1,000개비당 50.33달러, 대형 담배는 1,000개비당 105.69달러, 무게가 3파운드 이하인 소형 시가는 1,000개비당 50.33달러를 부과하였음. 2024년 미국의 담배 1,000개비당 연방 및 주 소비세의 가중 평균은 USD 131.00이고, 담배에 대한 연방 소비세율은 소형 담배(1,000개비당 3파운드 이하)는 1,000개비당 50.33달러, 대형 담배는 1,000개비당 105.69달러를 부과하였음. 일부 주에서는 종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

ments), 주정부의 일반예산, 비정부기구로부터 충당되어 왔다. 담배회사와의 협약 비용은 1998년에 협상된 Master Settlement Agreement (MSA)로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 부담에 대한 소송의 결과로 담배산업에서 25년의 기간 동안 2,060억 달러의 예산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예산이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2010년 담뱃세 예산은 641백만 달러였다.

#### 나. 담배 소비 감소 현황<sup>7)</sup>

미국의 담배 판매량(궐련 기준)은 2015~2021년 기간 동안 약 27% 감소하여 125억 갑에서 91억 갑으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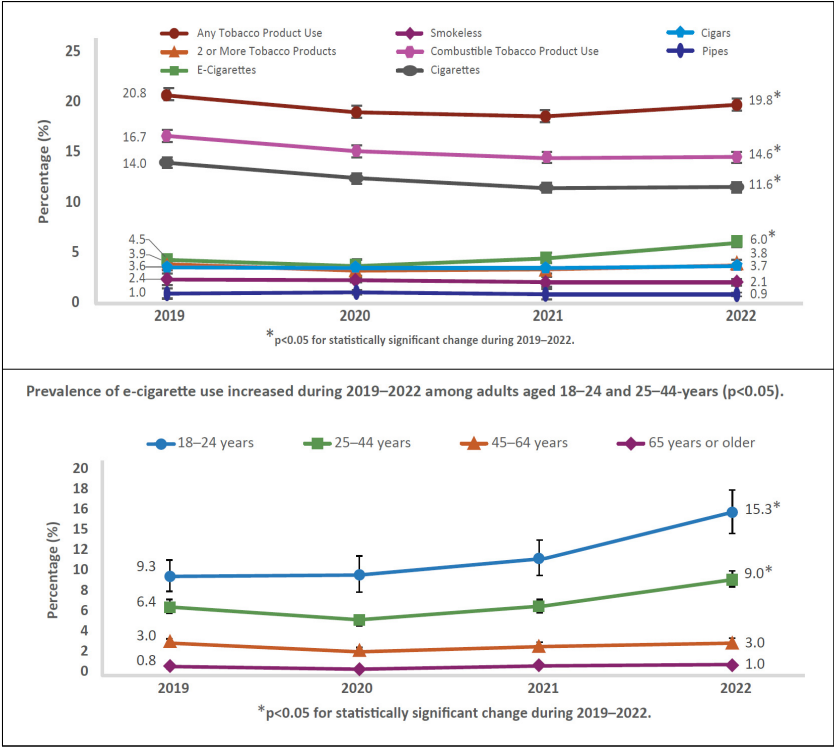
한편 2017년부터 2022년의 전자담배 판매량은 75백만 달러에서 469백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5% 이상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의 판매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 성인 흡연율은 감소하다가 2022년에 증가하여 19.8%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성인 10명 중 9명은 18세가 되기 전에 흡연을 시작한다. 청소년 흡연율은 8.1%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등학생 중에서 흡연율은 약 10%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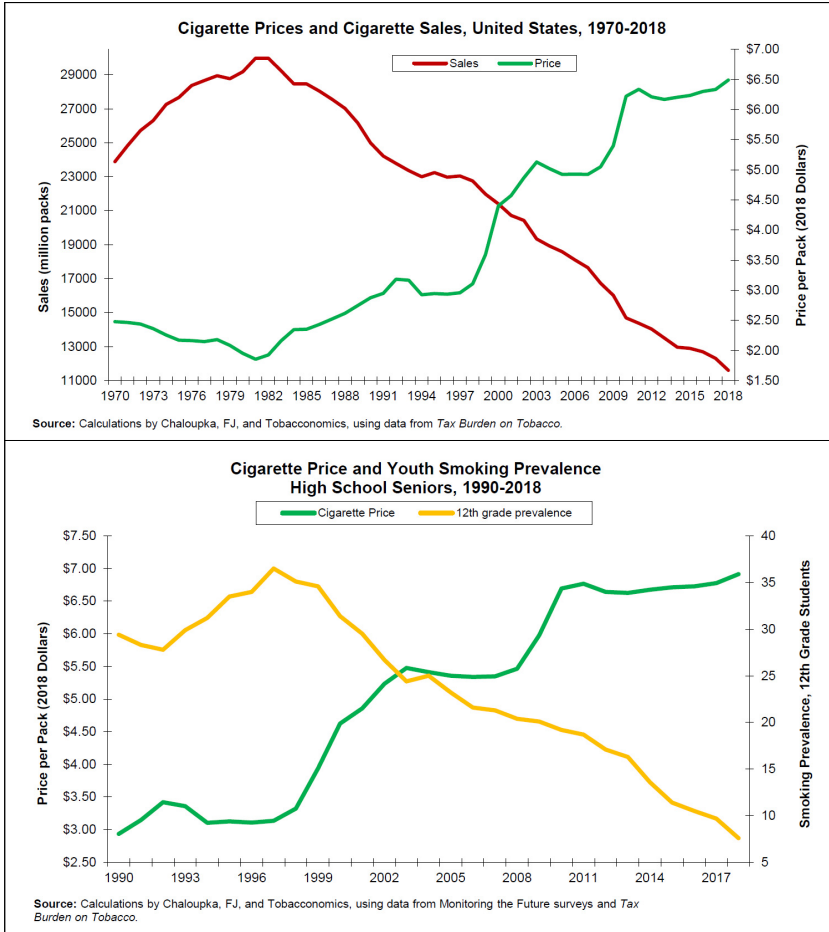
7) 미국질병관리청의 담배 관련 정보 웹사이트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4. 9. 17.). Economic Trends in Tobacco.  
<https://www.cdc.gov/tobacco/php/data-statistics/economic-trends/index.html>.  
 2025. 3. 19. 인출.

[그림 3-4] 미국 성인 흡연율과 결련형 전자담배 흡연을 추세



출처: "Tobacco Product Use Among Adults — United States, 2022,"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 2022, p.2, 6.  
<https://www.cdc.gov/tobacco/php/data-statistics/adult-data-cigarettes/index.html>.

[그림 3-5] 연도별 미국 쉐련 가격과 판매량 변화 및 고등학생 흡연을 추세



출처: "Raising Cigarette Taxes Reduces Smoking, Especially Among Kids (and the Cigarette Companies Know It),"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2025, pp.2-3.  
<https://www.tobaccofreekids.org/what-we-do/us/state-tobacco-taxes>

〈표 3-11〉 미국 15세 이상 흡연율의 시계열적 추세

(단위: %)

| 구분   | 전체   | 남자   | 여자   |
|------|------|------|------|
| 2010 | 15.1 | 16.7 | 13.6 |
| 2011 | 14.8 | 16.4 | 13.3 |
| 2012 | 14.2 | 15.9 | 12.5 |
| 2013 | 13.7 | 15.6 | 11.9 |
| 2014 | 12.9 | 14.0 | 11.8 |
| 2015 | 11.4 | 12.2 | 10.7 |
| 2016 | 11.8 | 13.2 | 10.5 |
| 2017 | 10.5 | 11.5 | 9.5  |
| 2018 | 10.3 | 11.5 | 9.1  |
| 2019 | 10.9 | 11.7 | 10.0 |
| 2020 | 9.4  | 10.3 | 8.6  |
| 2021 | 8.8  | 9.7  | 8.0  |
| 2022 | 8.9  | 9.9  | 7.9  |

출처: “Tobacco consumption: Share of population who are daily smokers,” OECD Data Explorer,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vis?fs\[0\]=Topic%2C1%7CHealth%23HEA%23%7CRisk%20factors%20for%20health%23HEA\\_RIS%23&pg=0&fc=Topic&bp=true&snb=7&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EALTH\\_LVNG%40DF\\_HEALTH\\_LVNG\\_TC&df\[ag\]=OECD.ELS.HD&df\[vs\]=1.0&dq=A.SP\\_DS...&pd=2010%2C&to\[TIME\\_PERIOD\]=false&isAvailabilityDisable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fs[0]=Topic%2C1%7CHealth%23HEA%23%7CRisk%20factors%20for%20health%23HEA_RIS%23&pg=0&fc=Topic&bp=true&snb=7&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EALTH_LVNG%40DF_HEALTH_LVNG_TC&df[ag]=OECD.ELS.HD&df[vs]=1.0&dq=A.SP_DS...&pd=2010%2C&to[TIME_PERIOD]=false&isAvailabilityDisabled=false). 2025. 2. 19. 인출하여 저자가 표로 재구성함.

## 2. 아일랜드(Ireland)

### 가. 조세 정책

아일랜드 정부는 2005년 FCTC를 비준하였다. 2022년 기준 켈런 20 개비당 가격은 13.40~15.80유로였다. 담뭍세 비중은 76.1%였다. 종량세 48.5%, 종가세 8.8%, 소비세 18.70% 등이다. 2,000개비의 담배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구매력은 1인당 GDP의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구매력이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021년 기준 담뭍세에서 각출된 예산은 총 1,317.6백만 유로였다.

2021년 기준 15세 이상 매일 흡연하는 인구의 비중은 16%였다. 2024년 보고된 켈런 1,000개비당 종량세는 465.74달러였고 소비세 비중은 8.8%였다. 전자담배 용액은 1리터당 500유로(522달러)였다.<sup>8)</sup> 담뱃세는 2016년 10월에 켈런 20개비당 50센트 증액하였고 2017년 10월에 50센트 증액하였다. 담뱃세에서 각출된 예산의 일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사업에 사용된다. 사용 상한 금액은 168백만 유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sup>9)</sup> 매년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소비세율을 증액시키고 있다. 2023년 20개비 켈런 기준 0.50유로의 가격 인상이 있었고, 이에 비례하여 다른 종류의 담배 제품에도 인상을 추진하였다.

## 나. 담배 소비 감소 현황

아일랜드 인구의 흡연율은 10년 전인 2015년의 통계에서도 15세 이상 흡연율이 낮은 수준이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금연 정책으로 담배연기 없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부 금연 지원, 이차 정신병원 환자 대상의 금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임상에서의 금연 지원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의료서비스에서의 금연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하여 금연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담배 제품의 공급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품 판매 라이선스제도와 추적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sup>10)</sup>

8) 아일랜드 국세청 홈페이지, (2024). 아일랜드 과세 기준.

<https://www.revenue.ie/en/companies-and-charities/excise-and-licences/excise-duty-rates/tpt-ept.aspx>. 2025. 1. 24. 인출.

9) 아일랜드의 2023년도 WHO FCTC 당사국 보고서, p.43~50. 에서 인용.

[https://extranet.who.int/fctcapps/sites/default/files/2024-07/3n3uvitwqcmkig\\_785818.pdf](https://extranet.who.int/fctcapps/sites/default/files/2024-07/3n3uvitwqcmkig_785818.pdf) 2025. 1. 24. 인출.

10) 아일랜드의 2023년도 WHO FCTC 당사국 보고서, p.59. 에서 인용.

[https://extranet.who.int/fctcapps/sites/default/files/2024-07/3n3uvitwqcmkig\\_785818.pdf](https://extranet.who.int/fctcapps/sites/default/files/2024-07/3n3uvitwqcmkig_785818.pdf) 2025. 3. 24. 인출.

〈표 3-12〉 아일랜드 15세 이상 매일 흡연율의 시계열적 추세

(단위: %)

| 구분   | 전체 | 남자 | 여자 |
|------|----|----|----|
| 2015 | 19 | 20 | 17 |
| 2016 | 19 | 21 | 17 |
| 2017 | 18 | 20 | 17 |
| 2018 | 17 | 19 | 15 |
| 2019 | 14 | 16 | 12 |
| 2021 | 16 | 17 | 14 |
| 2022 | 14 | 17 | 12 |
| 2023 | 14 | 16 | 12 |

출처: “Tobacco consumption: Share of population who are daily smokers,” OECD Data Explorer,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vis?fs\[0\]=Topic%2C1%7CHealth%23HEA%23%7CRisk%20factors%20for%20health%23HEA\\_RIS%23&pg=0&fc=Topic&bp=true&snb=7&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EALTH\\_LVNG%40DF\\_HEALTH\\_LVNG\\_TC&df\[ag\]=OECD.ELS.HD&df\[vs\]=1.0&dq=.A.SP\\_DS....&pd=2010%2C&to\[TIME\\_PERIOD\]=false&isAvailabilityDisable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fs[0]=Topic%2C1%7CHealth%23HEA%23%7CRisk%20factors%20for%20health%23HEA_RIS%23&pg=0&fc=Topic&bp=true&snb=7&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EALTH_LVNG%40DF_HEALTH_LVNG_TC&df[ag]=OECD.ELS.HD&df[vs]=1.0&dq=.A.SP_DS....&pd=2010%2C&to[TIME_PERIOD]=false&isAvailabilityDisabled=false)  
2025. 2. 19. 인출하여 재구성.

3. 프랑스

가. 조세 정책

프랑스 정부는 2020년 11월, 담배 20개비 한 갑의 가격 목표를 10유로로 설정하고, 2024년까지 18~75세 흡연 인구는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2032년에는 18세 흡연 인구 제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프랑스의 15세 이상 흡연율은 2021년 기준 25%로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담배소비세에서 쉼련 1,000개비당 종량세는 77.5달러였다(OECD, 2024).

2022년 기준 쉼련 20개비 담배가격은 9.5~10.5유로였다. 세금 부과 의 총비율은 83.8%였다. 정량세 12.1%, 종가세 55%였다. 기타 소비세는 16.7%였다. 프랑스 쉼련의 과세금액은 유럽연합 국가 중에 높은 수준의 세금 부과국으로 나타났다(이상훈, 신미정, 2023).

담배구매력 관련 1인당 GDP 비율은 2.6%였다. 2012년보다는 2022년에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Country profile). 담뱃세 수입 예산은 종량세와 종가세를 합하여 12603633.5백만 유로(2019년 기준)였다.

프랑스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 담배규제를 위한 기금을 조성했다고 보고했다. 이 기금은 담배규제를 위한 지역과 국가 및 국제적 정책수행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부과금은 2020년 3월 1일부터 다양한 소비세율 인상 정책을 위해서 금융법에 의해 중단하게 되었다. 2018년 사회보장재정법의 일부로 담배 제품의 과세가 계획되어 있었고 2020년까지 한시적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2018~2020년의 담배가격에 대한 정책은 종료되었다. 2017년에 담배규제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예방사업과 연구 등에 대한 지원과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 나. 담배 소비 감소 현황

약국을 통하여 니코틴 대체요법 판매량이 2021년 기준 14.4% 증가하였다. 이것은 1주일간 금연 시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모든 공공정책을 통하여 흡연을 중단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정책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금연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품(경피장치, 금연껌, 의약품 등)으로 처방의 폭을 넓힌 것도 성과의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임상 현장에서 금연 치료를 처방하는 경구용 제품이 증가하고 있고, 일반의 기준으로 주요 처방자의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프랑스 국민의 흡연율이 높은 편이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성과를 가져왔다.<sup>11)</sup>

11) 프랑스 2023년도 WHO FCTC 당사국 보고서, p.67. 에서 인용.  
[https://extranet.who.int/fctcapps/sites/default/files/2024-02/sdfzv35tfm6bq2m\\_785818.pdf](https://extranet.who.int/fctcapps/sites/default/files/2024-02/sdfzv35tfm6bq2m_785818.pdf)

〈표 3-13〉 프랑스 15세 이상 매일 흡연율의 시계열적 추세

(단위: %)

| 구분    | 전체   | 남자   | 여자   |
|-------|------|------|------|
| 2010년 | 29.7 | 33.1 | 26.6 |
| 2014년 | 28.5 | 32.9 | 24.4 |
| 2015년 | 29.4 | 33.1 | 25.8 |
| 2016년 | 29.4 | 33.0 | 26.0 |
| 2017년 | 26.9 | 29.8 | 24.2 |
| 2018년 | 25.4 | 28.2 | 22.9 |
| 2019년 | 24.0 | 27.5 | 20.7 |
| 2020년 | 25.5 | 29.1 | 22.0 |
| 2021년 | 25.3 | 27.8 | 23.0 |

출처: “Tobacco consumption: Share of population who are daily smokers,” OECD Data Explorer,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vis?fs\[0\]=Topic%2C1%7CHealth%23HEA%23%7CRisk%20factors%20for%20health%23HEA\\_RIS%23&pg=0&fc=Topic&bp=true&snb=7&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EALTH\\_LVNG%40DF\\_HEALTH\\_LVNG\\_TC&df\[ag\]=OECD.ELS.HD&df\[vs\]=1.0&dq=.A.SP\\_DS....&pd=2010%2C&to\[TIME\\_PERIOD\]=false&isAvailabilityDisable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fs[0]=Topic%2C1%7CHealth%23HEA%23%7CRisk%20factors%20for%20health%23HEA_RIS%23&pg=0&fc=Topic&bp=true&snb=7&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EALTH_LVNG%40DF_HEALTH_LVNG_TC&df[ag]=OECD.ELS.HD&df[vs]=1.0&dq=.A.SP_DS....&pd=2010%2C&to[TIME_PERIOD]=false&isAvailabilityDisabled=false). 2025. 2. 19. 인출하여 재구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4장

### 우리나라의 담배가격 정책

제1절 담배소비세 정책과 흡연율

제2절 세후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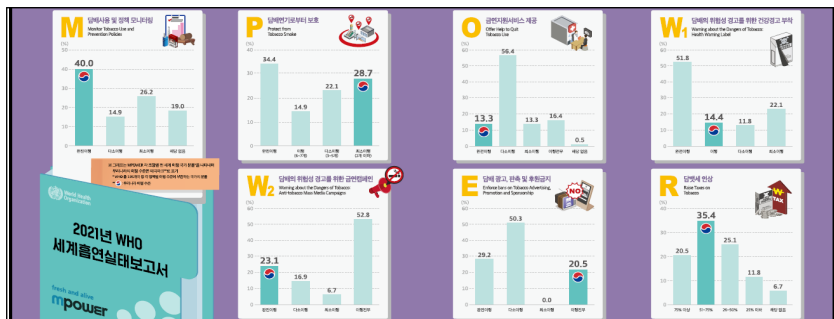
## 제4장 우리나라의 담배가격 정책

### 제1절 담배소비세 정책과 흡연율

#### 1.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의 수준과 담배가격 정책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배규제 정책의 강도를 세계보건기구의 MPOWER 국제비교를 통하여 검토하였다(그림 4-1)). 완전 이행의 수준에 있는 정책으로는 담배 사용 및 정책의 모니터링, 금연 지원서비스 제공, 담배의 위험성 경고문 제도화 및 캠페인 등이었다. 담배연기로부터 보호 정책과 담배 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정책 분야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4-1] MPOWER 담배규제 정책의 우리나라 현황(2021년 기준)



주: 그래프는 MPOWER 정책별 이행 국가의 분율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의 이행 수준은 태극마크로 표기함. 세계보건기구의 195개국 중 각 정책별 이행 수준에 부합하는 국가의 분율임.

출처: “2021년 전 세계 MPOWER 이행 경과 및 향후 과제,” 202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p.3. [https://www.khepi.or.kr/kps/publish/view?menuId=MENU00889&page\\_no=B2017002&pageNum=1&siteId=&srch\\_text=%ED%9D%A1%EC%97%B0%EC%8B%A4%ED%83%9C&srch\\_cate=&srch\\_type=ALL&str\\_clft\\_cd\\_list=&str\\_clft\\_c\\_d\\_type\\_list=&board\\_idx=10837](https://www.khepi.or.kr/kps/publish/view?menuId=MENU00889&page_no=B2017002&pageNum=1&siteId=&srch_text=%ED%9D%A1%EC%97%B0%EC%8B%A4%ED%83%9C&srch_cate=&srch_type=ALL&str_clft_cd_list=&str_clft_c_d_type_list=&board_idx=10837)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궤련 기준 담배 한 갑당 3.92달러이며 소매 가격 대비 담배소비세의 비중은 64.8%에 달한다(OECD, 2024).

담배소비세 정책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통제하고자 하는 교정 과세의 의미와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국내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이 있다(이준기, 김민정, 2021). 담배소비세의 변동은 비주기적인 특성이 있으며, 담배 종류별로 세율이 다르게 부과된다.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건강증진기금이 신설되었고, 1997년부터 궤련 기준 담배 한 갑당 2원씩 부과되었다. 2002년 2월에 건강증진기금이 인상되어 한 갑당 150원이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12월에 큰 폭의 건강증진기금 인상이 추진되어 한 갑당 354원이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0년 뒤인 2015년에 한 갑당 841원으로 인상되었다. 같은 해에 담배소비세 1,007원, 개별소비세 594원이 신설되는 등 담배가격이 한 갑당 4,500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2002년 신설되었다가 2008년에 폐지되었다.

(표 4-1) 결련 기준 담뱃세 부과 정책의 연혁

(단위: 원)

| 구분             | 1989.1 | 1994.1 | 1996.7 | 1997.5 | 1999.1 | 2001.1 | 2002.1 | 2002.2 | 2005.1 | 2008.1 | 2015.1 |
|----------------|--------|--------|--------|--------|--------|--------|--------|--------|--------|--------|--------|
| 담배소비세(A)       | 360    | 460    | 460    | 460    | 460    | 510    | 510    | 510    | 641    | 641    | 1,007  |
| (증가율)          | (-)    | -27.8  | 0      | 0      | 0      | -10.9  | 0      | 0      | -25.7  | 0      | -57.1  |
| 지방교육세(B)       | -      | -      | 184    | 184    | 184    | 255    | 255    | 255    | 321    | 321    | 443    |
| 개별소비세(C)       | -      | -      | -      | -      | -      | -      | -      | -      | -      | -      | 594    |
| 공익기금           | -      | 20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부담금(D)      | -      | -      | 4      | 4      | 4      | 4      | 4      | 4      | 7      | 7      | 24     |
| 국민건강증진기금(E)    | -      | -      | -      | 2      | 2      | 2      | 2      | 150    | 354    | 354    | 841    |
| 연초경작농민안정화기금(F) | -      | -      | -      | -      | -      | 10     | 10     | 15     | -      | 5      | -      |
| 소계(G)          | 360    | 480    | 648    | 650    | 650    | 771    | 781    | 929    | 1,338  | 1,323  | 2,914  |
| 부가가치세(H)       | -      | -      | -      | -      | 100    | 118.2  | 118.2  | 136.4  | 227.3  | 227.3  | 409.1  |
| 총계(G+H)        | 360    | 480    | 648    | 650    | 750    | 889    | 899    | 1,065  | 1,565  | 1,550  | 3,324  |
| (증가율)          | (-)    | -33.3  | -35    | (0.3)  | -15.4  | -18.6  | -1.1   | -18.5  | -46.9  | (-1.0) | -114.4 |
| 판매가            | -      | 900    | 1,000  | 1,100  | 1,100  | 1,300  | 1,300  | 1,500  | 2,500  | 2,500  | 4,500  |
| (증가율)          | (-)    | (-)    | -11.1  | -10    | 0      | -18.2  | 0      | -15.4  | -66.7  | 0      | -80    |
| 제세부담금 비중       | -      | 53.3   | 64.8   | 59.1   | 68.2   | 68.4   | 69.2   | 71     | 62.6   | 62     | 73.9   |
| 국세             | -      | 0      | 0      | 0      | 9.1    | 9.1    | 9.1    | 9.1    | 9.1    | 9.1    | 22.3   |
| 지방세            | -      | 51.1   | 64.4   | 58.5   | 58.5   | 58.8   | 58.8   | 51     | 38.5   | 38.5   | 32.2   |
| 부담금            | -      | 2.2    | 0.4    | 0.5    | 0.5    | 0.5    | 1.2    | 10.9   | 15     | 14.4   | 19.3   |

주: 국세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부담금은 각종 부담금 및 기금을 포함함.

출처: "결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개선방안," 이상훈, 신미정, 2023, 한국지방세연구원, p.24.에서 재인용

〈표 4-2〉 담배 종류별 제세부담금

(단위: 원)

| 구분     |           | 과세표준            | 담배 소비세  | 지방 교육세 | 건강 증진 부담금 | 개별 소비세 | 폐기물 부담금 | 엽연초 부담금 |
|--------|-----------|-----------------|---------|--------|-----------|--------|---------|---------|
| 피우기 담배 | 제1종 쥘련    | 20개비당           | 1,007   | 443    | 841       | 594    | 24.4    | 5       |
|        | 제2종 파이프담배 | 1그램당            | 36      | 15.8   | 30.2      | 21     | .       | .       |
|        | 제3종 엽쥘련   | 1그램당            | 103     | 45.3   | 85.8      | 61     | .       | .       |
|        | 제4종 각련    | 1그램당            | 36      | 15.8   | 30.2      | 21     | .       | .       |
|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사용        | 1밀리 리터당 | 628    | 276.3     | 525    | 370     | .       |
|        |           | 연초 및 쥘련형        | 20개비당   | 897    | 394.6     | 750    | 529     | 24.4    |
|        |           | 연초 고형물 사용 기타 유형 | 1그램당    | 88     | 38.7      | 73     | 51      | .       |
|        | 제6종 물담배   | 1그램당            | 715     | 314.5  | 1050.1    | 422    | .       | .       |
|        | 씹는 담배     | 1그램당            | 364     | 160.1  | 34.4      | 215    | .       | .       |
|        | 머금은 담배    | 1그램당            | 364     | 160.1  | 534.5     | 215    | .       | .       |
|        | 냄새 맡는 담배  | 1그램당            | 26      | 11.4   | 11.4      | 15     | .       | .       |

주: 담배 종류별로 현재 부과되고 있는 제세부담금. 담배소비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배사업법 등을 기반으로 인용된 “쥘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개선방안,” 이 상훈, 신미정, 2023, 한국지방세연구원, p.22.에서 재인용

금연 정책의 변화에 따른 흡연율과 흡연 기여 사망 수에 대한 분석 연구(조성일 외, 2008)에서는 한국 흡연 예측 모델인 simsmoke 모델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된 금연 정책의 종류별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담배가격 정책이 흡연율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하였고, 금연홍보 정책, 금연구역 정책, 금연치료 정책 등의 순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 가. 우리나라 담배가격 인상의 효과

흡연자가 담배를 끊겠다는 금연 의향을 기준으로 한 담배지불의사금액과 금연 지원 수준에 대한 분석 연구에 따르면, 담배가격 인상의 체감도를 고려하여 담배가격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큰 폭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며, 매년 또는 2년마다의 정기적 가격 인상이 효과적인 것으로 제안하였다. 흡연자의 금연 지원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금연 치료를 건강보험 영역에서 지원 및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흡연자의 금연 동기를 촉진하고 과거 흡연자에 대해서 금연 상태를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고숙자 외, 2013).

담배의 가격 인상이 주는 흡연율 및 소비량 감소 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율의 가격탄력성이  $-0.494$ (남자 흡연율)로 국외 연구 문헌과 비슷하게 비탄력적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소득계층별로 볼 때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율의 가격탄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담배가격 인상 이후의 담배 판매량 추세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의 담배 중독성을 고려하면 가격 정책 효과는 단기적으로 일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최성은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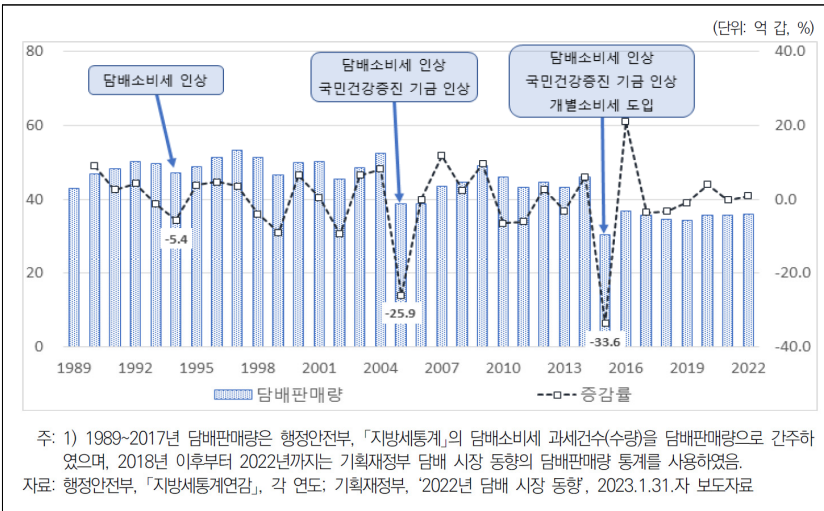
2006년에서 2012년의 고령화패널 자료에서 51세 이상 인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과거 흡연으로 인한 질병 부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량이 많은 사람에서 담배규제 정책 개입(담뱃세 인상, 금연 캠페인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흡연량 감소가 기대수명 연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대중, 이난희, 2018).

흡연, 음주, 비만 세 가지 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이에 대해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음주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증가 추세의 경향을 보였고,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라규원 외, 2024).

국내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한 자료의 기준 연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비용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자료 분석에서는 3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2005년에서 2013년 자료 분석의 연구 결과에서는 4조에서 7조 원대의 비용으로 추산되었다. 같은 기간의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흡연 관련 질병을 확대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43조 8천억 원 수준의 비용으로 추산되었다(조민우 외, 2016).

[그림 4-2] 담배소비세 인상과 담배 판매량 추세



출처: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개선방안,” 이상훈, 신미정, 2023, 한국지방세연구원, p.24.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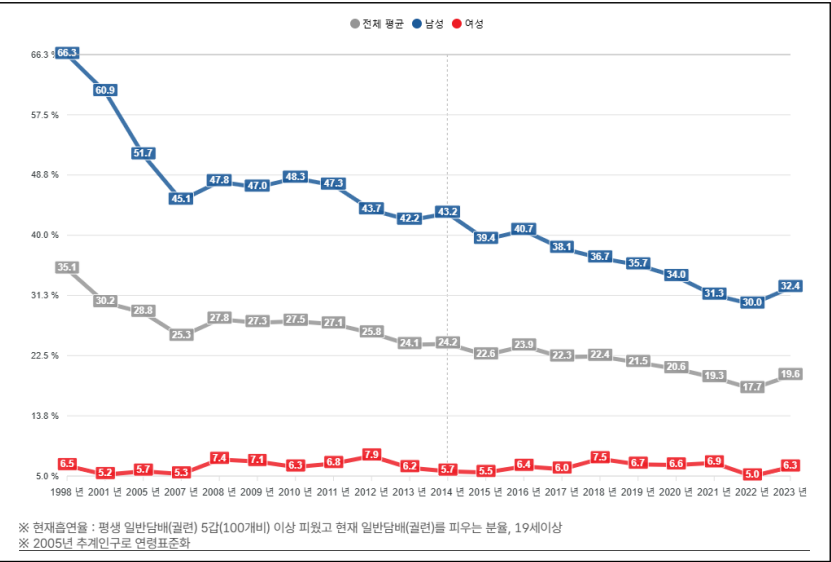
〈표 4-3〉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의 흡연을 추세

(단위:%)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전체 | 22.9 | 23.2 | 21.6 | 19.9 | 20.0 | 17.3 | 18.4 | 17.5 | 17.5 | 16.4 | 15.9 | 15.4 | 14.7 |
| 남자 | 40.8 | 41.6 | 37.6 | 36.2 | 36.6 | 31.4 | 32.9 | 31.6 | 30.5 | 28.5 | 27.8 | 26.3 | 25.8 |
| 여자 | 5.2  | 5.1  | 5.8  | 4.3  | 4.0  | 3.4  | 4.1  | 3.5  | 4.5  | 4.4  | 3.9  | 4.5  | 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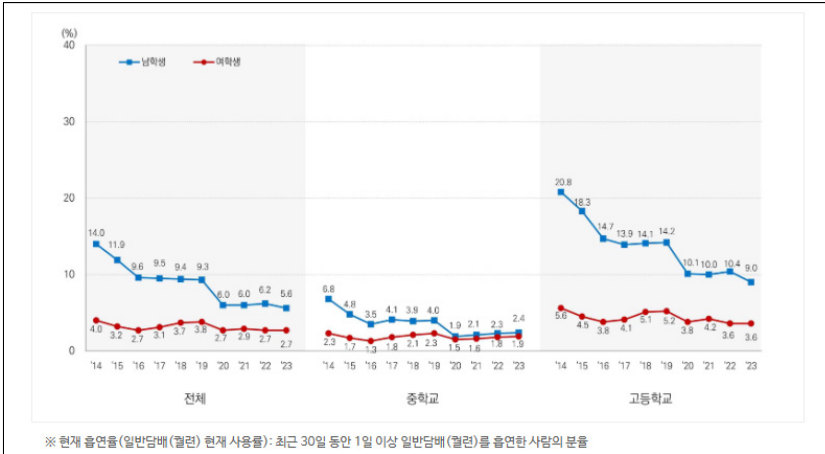
출처: “Tobacco consumption: Share of population who are daily smokers,” OECD Data Explorer,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vis?fs\[0\]=Topic%2C1%7CHealth%23HEA%23%7CRisk%20factors%20for%20health%23HEA\\_RIS%23&pg=0&fc=Topic&bp=true&snb=7&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EALTH\\_LVNG%40DF\\_HEALTH\\_LVNG\\_TC&df\[ag\]=OECD.ELS.HD&df\[vs\]=1.0&dq=.A.SP\\_DS....&pd=2010%2C&to\[TIME\\_PERIOD\]=false&isAvailabilityDisable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fs[0]=Topic%2C1%7CHealth%23HEA%23%7CRisk%20factors%20for%20health%23HEA_RIS%23&pg=0&fc=Topic&bp=true&snb=7&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EALTH_LVNG%40DF_HEALTH_LVNG_TC&df[ag]=OECD.ELS.HD&df[vs]=1.0&dq=.A.SP_DS....&pd=2010%2C&to[TIME_PERIOD]=false&isAvailabilityDisabled=false). 2025. 2. 19. 인출하여 재구성.

〔그림 4-3〕 우리나라의 성인 흡연을 추세



출처: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결과, 건강행태, 현재흡연율,” 질병관리청, 2024. <https://knhanes.kdca.go.kr/knhanes/postSendPage.do?url=/mntpcstat/hlthBhvrStat.do&postparam=%7B%22menuId%22:%22100210021002%22%7D>.에서 2025. 2. 28. 인출.

[그림 4-4]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을 추세



출처: “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질병관리청, 2023.

<https://www.kdca.go.kr/yhs/yhs/main.do>에서 2025. 2. 28. 인출.

## 2. 국민건강증진 정책과 담배가격 정책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법(1995년 제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은 담뭇세에 부과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의 유형별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법 제22조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담배규제의 목적을 반영한 정책으로서 2005년, 2015년 담뭇세 인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0~2030년) 중 건강생활실천분과의 금연 세부 과제에서 신종 담배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개편을 추진할 것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 □ 담배가격 정책의 영향

Simsmodel 모델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국내 금연 정책의 영향력을 1995년부터 2006년까지의 흡연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금연 정책의 효과는 전체 흡연율 감소의 약 17%를 설명할 수 있었고, 이 중에서 총 정책 효과의 54%는 담배가격 정책인 것으로 분석 보고하였고, 금연홍보정책 효과 33%, 금연구역 지정 정책 9%, 금연치료 지원 정책 3.8% 등으로 나타났다(조성일 외, 2008).

담배의 가격변화에 따른 금연 의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고숙자, 2013), 가격 정책은 흡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소득층일수록 가격 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담배가격 정책 추진 시 금연 의사를 보이는 적정 담배가격의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즉 체감도가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은 효과적일 수 없다는 결론이다. 매년 또는 2년마다 정기적인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2015년의 담뱃세 인상 효과와 관련된 또 다른 분석 연구에서는 금연사업 지출액과 성인 흡연율의 감소 성과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고, 이 담뱃세 부과 정책은 본래의 교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였다(천지은 외, 2019).

담배가격 정책은 담배 수요에 대한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담배 수요는 20세 이상 인구 비율과 음주량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담배 수요는 소득 수준과도 관련이 있어서 소득증가와 더불어 담배 소비도 증가한다는 고찰이 있었다. 2000년대 중반의 연구에서는 담배가격 정책 외에 비가격 정책의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시 담배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0.36 \sim -0.43$ 으로 담배가격을 10% 인상하면 담배 소비량은 약 4%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소득탄력성은 1인당 국민가처분소득이 10% 증가할 때 담배 소비량이 약 2%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정우진 등, 2006).

강영호 등(2018)의 흡연 건강불평등 연구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가격탄력성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담배 종류와 상관없이 높은 가격이 담배 사용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담배 세금 인상 정책 변화 후 남성 흡연율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책 변화 3년 후에는 흡연율이 -3.36%p에서 -4.3%p의 범위로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age)에 있어 노인층 흡연자의 경우, 세금 인상으로 하루 흡연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담뱃값을 현재보다 20% 인상하는 경우, 인구집단 전체적으로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를 매일 4.4명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2절 세후 활용 현황

건강증진부담금 자체 수입 현황은 2017년도 30,671억 원에서 2024년 29,264억 원, 2025년 30,587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2025년의 수입 계획은 전년도 대비 4.5% 증가한 수준이었다.

〈표 4-4〉 연도별 건강증진부담금 자체 수입 현황

(단위: 억 원)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30,671 | 30,356 | 29,247 | 28,924 | 29,486 | 27,922 | 29,584 | 29,264 | 30,587 |

출처: 1) 2023~2025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음.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2025;

“2024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2024.

2) “담배가격정책과 국민건강증진기금활용방안,” 고숙자, 2022, 보건복지포럼, 5월호, 307권 3호, p.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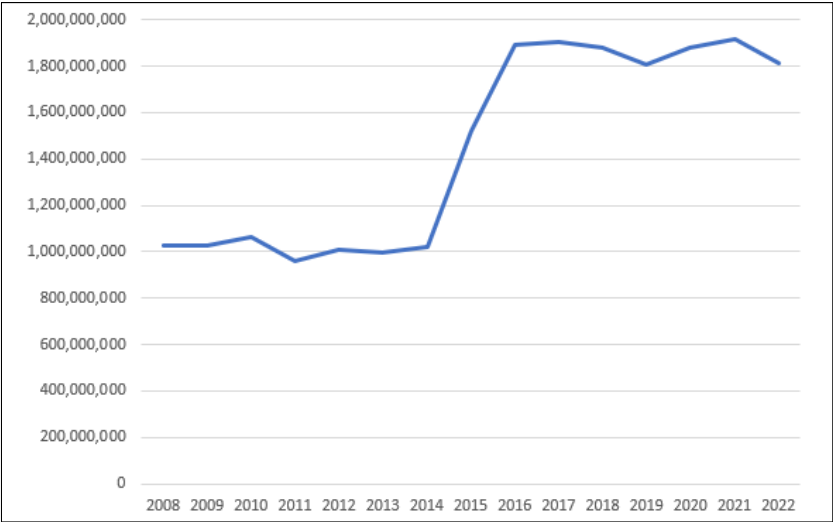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되는 2024년의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국가 암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치매관리체계 구축, 노인건강관리,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등이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되는 담배부담금의 추이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말의 담뱃세 인상 이후 건강증진기금의 규모가 증대하였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되는 담배부담금도 증액되어 사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은 2023년 1조 8천억 원에서 2024년 1조 9,022억 원으로 약 4.5%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1조 9,882억 원으로 4.5%의 증가가 있었다. 2025년의 사업계획에서 다루는 사업으로는 모자보건사업, 재활병원건립,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국가암관리사업, 혈액안전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 5G 기반 이동형 유연 의료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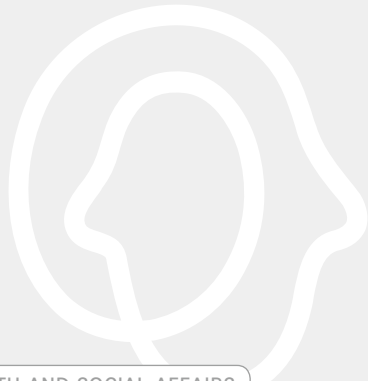
건강증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계획상으로는 2024년 560억 원에서 2025년 508억 원으로 9.3% 감소하였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2024년 1천억 원에서 2025년 915억 원으로 8.5% 감소하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비는 2024년 186억 원에서 2025년 195억으로 5.1% 증가하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운영비 증가에는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정규직 인건비 편입 및 인상률(3%)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5).

[그림 4-5]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되는 연도별 담배부담금 추이

(단위: 천원)



출처: “연도별 건강보험재정현황,”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1\\_A02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1_A023&conn_path=I3) 에서 2025. 3. 24. 인출.



## 제5장

### 호주의 정책 사례

제1절 담배규제 정책의 맥락

제2절 담배규제 및 가격 정책의 특성

제3절 담배 종결전 실현을 위한 가격 정책의 역할

제4절 보건의료 자원 확보 사례 및 특성



## 제5장 호주의 정책 사례

### 제1절 담배규제 정책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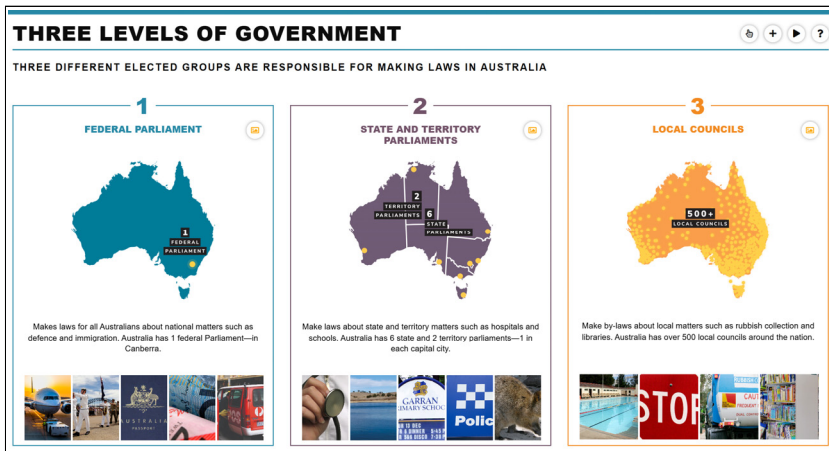
#### 1. 호주 정부 구조 및 역할

호주의 정부 구조는 3층 체계로([그림 5-1]), 1개의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6개의 주정부와 2개의 준주정부(states and territories government), 그리고 500개 이상의 지방정부(local council)로 구성되어 있다(윤성현, 2018).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통상, 사회 서비스 등의 국가적 사안을 관장하며,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책임이 아닌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건, 교육, 환경, 산업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입법·사법의 삼권 분립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중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헌법 간 차이가 있을 때는 연방정부의 헌법이 우위를 가진다.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사회와 밀접한 생활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에 건물규제, 개발, 공공의료, 쓰레기 처리 등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한다.

담배규제 정책에서도 정부 구조의 각 층위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전략인 MPOWER(M: 담배 사용 및 규제 정책 모니터링[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P: 담배연기로부터 보호[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O: 금연지원서비스 제공[offer health to quit tobacco use], W: 담배의 위험성 경고[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E: 담

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R: 담뱃세 인상[raise taxes on tobacco])에 따라 각 정부의 주요 역할을 정리한 것은 <표 5-1>과 같다.

[그림 5-1] 호주의 정부 구조



출처: “Three levels of government,” Australia Parliamentary Education Office, 2023.  
<http://mail.peo.gov.au/teach-our-parliament/education-resources/interactive-posters/three-levels-of-government>. Copyright 2023 by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담배규제 정책은 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담당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대부분 정책에서 연방정부가 기본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주정부는 이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추가로 추진하거나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어,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E) 정책의 경우, 연방정부가 Tobacco Advertising Prohibition Act를 통해 정치적 담론, 담배 판매점, 국제 항공기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방송 및 출판물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주 및 준주에서 담배 판매점 내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호주에서 판매점 내 담배 진열 및 광고를 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반면, 담뱃세 인상 정책의 경우, 연방정부

만이 담배소비세를 징수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 기관이다. 과거에는 주정부에서도 담뱃세 징수가 가능하였으나, 1997년 호주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연방정부만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표 5-1〉 MPOWER 이행전략별 호주 연방, 주 및 지방정부의 역할

| MPOWER               | 정부 구조별 역할                                                                                                                                                                                                                                                                                                                                                             |
|----------------------|-----------------------------------------------------------------------------------------------------------------------------------------------------------------------------------------------------------------------------------------------------------------------------------------------------------------------------------------------------------------------|
| 담배 사용 및 규제정책 모니터링(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정부: 호주보건복지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등의 기관을 통해 담배 제품 사용 및 영향요인 등에 대한 유병률 통계 생산. 담배규제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정책 이행 현황 보고 등</li> <li>주정부: 주 및 준주 수준의 담배 제품 사용률 통계 생산 및 정책 평가 (NSW Smoking &amp; Health Survey) 등</li> <li>지방정부: 역할이 제한적이나 지역사회 내 통계 생산 및 정책 평가 가능</li> </ul> |
| 담배연기로부터 보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정부: 항공기, 버스, 공항 등의 시설 내 금연구역 정책 추진</li> <li>주정부: 공공장소, 실내 및 실외에서의 금연구역 지정 및 정책 집행</li> <li>지방정부: 지역사회 내 공간들(공원, 놀이터, 해변, 보행로 등)에 대한 추가 금연구역 지정 가능</li> </ul>                                                                                                                                                                 |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정부: 국가 및 주 단위에서 운영되는 금연지원서비스(Quitline 13 7848, Quit <a href="http://www.quit.org.au">www.quit.org.au</a> 등)에 대한 재정 지원</li> <li>주정부: 주 및 준주 내 금연지원프로그램을 별도 운영 및 재정 지원</li> <li>지방정부: 지역사회 기반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 가능</li> </ul>                                                                                                        |
| 담배의 위험성 경고(W)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정부: Tobacco Plain Packaging Act를 기반으로 무광고 표준 담뱃갑 의무 적용 시행</li> <li>주정부: 주 및 준주 내 금연 캠페인 실시, 소매점 내 제품 진열 등에 관한 규정 적용</li> <li>지방정부: 지역사회 기반 금연 캠페인 운영, 담배 제품 진열에 대한 규정 등의 집행</li> </ul>                                                                                                                                       |
|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정부: Tobacco Advertising Prohibition Act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담배 광고를 금지</li> <li>주정부: 소매점 등 추가적인 광고, 판촉, 후원 제한 시행</li> <li>지방정부: 지역사회 수준에서 추가적인 광고, 판촉, 후원 제한 규정 적용 가능</li> </ul>                                                                                                                                                       |
| 담뱃세 인상(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정부: 담배소비세 부과 및 징수</li> <li>주정부: 권한 없음(1997년 이후)</li> <li>지방정부: 권한 없음</li> </ul>                                                                                                                                                                                                                                              |

출처: 정부 구조별/MPOWER 이행전략별 담당 역할 사례를 요약하여 저자 작성

## 2. 담배 제품 접근성 및 사용률

### 1) 담배 제품 접근성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인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및 껴련형 전자담배 제품을 중심으로 호주의 담배 제품 접근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호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담배 제품은 일반담배(껴련, cigarettes)로, 공장에서 만든 담배(factory-made cigarettes, FMC)가 주를 이룬다. 사용자가 담뱃잎을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roll-your own cigarettes, RYO) 또한 호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담배 제품 중 하나이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현재 흡연자 중 공장에서 제조된 담배(FMC) 단독 사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2%에서 53%로 감소한 반면,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RYO) 단독 사용자 비율은 6%에서 14%로 증가하였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0, p. 8).

14세 이상 현재 흡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그림 5-2]), 2019년 기준으로, 현재 흡연자 중 담배 구매를 위해 대형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경우가 43.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담배 전문점(23.5%), 지역 편의점 및 식료품점(10.7%)이었다. 2013~2019년 동안 대형 슈퍼마켓에서 구매하는 흡연자의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담배 전문점, 지역 편의점 및 식료품점에서 구매한 경우는 각각 증가하였다. 모든 연도에서 대형 슈퍼마켓, 담배 전문점, 지역 편의점 및 식료품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가 75%였고, 소수의 흡연자만이 주유소 등에서 담배를 구매했거나, 담배를 직접 구매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Bayly & Scollo, 2020, Table 10.5.2).

[그림 5-2] 호주 14세 이상 현재 흡연자의 담배 취득 경로, 2013, 2016, 2019

| Table 10.5.2 Current smokers' aged 14+ years self-reported means of obtaining their current tobacco products, 2013, 2016 and 2019 (%) |                  |                  |                  |
|---------------------------------------------------------------------------------------------------------------------------------------|------------------|------------------|------------------|
|                                                                                                                                       | 2013             | 2016             | 2019             |
| Major supermarket                                                                                                                     | 51.0             | 46.2             | 43.3             |
| Tobacconists                                                                                                                          | 17.5             | 24.0             | 23.5             |
| Local convenience or grocery store/milk bar/deli                                                                                      | 9.2              | 9.5              | 10.7             |
| Petrol station                                                                                                                        | 6.8              | 6.6              | 6.8              |
| Newsagent or newsstand                                                                                                                | 2.9              | 2.1              | 1.7              |
| Bottle shop or liquor store                                                                                                           | 1.5              | 1.2              | 1.0              |
| Person selling tobacco independently                                                                                                  | 1.2              | 1.0              | 0.9              |
| Bar, pub, restaurant                                                                                                                  | 0.3 <sup>A</sup> | 0.3 <sup>A</sup> | 0.3 <sup>A</sup> |
| Internet                                                                                                                              | 0.3 <sup>A</sup> | 0.2 <sup>A</sup> | 0.2 <sup>A</sup> |
| Other                                                                                                                                 | 0.3 <sup>A</sup> | 0.1 <sup>A</sup> | 0.2 <sup>A</sup> |
| Did not purchase them myself <sup>A</sup>                                                                                             | 9.0              | 9.0              | 11.3             |

Source: 2013 NDHS, Supplementary Data Tables S3.10;<sup>1</sup> 2016 & 2019 NDHS, Supplementary Data Tables 2.51.<sup>2</sup>  
Includes those reporting 'got them from friend/relative' and 'stole them'.  
<sup>A</sup> Estimate has a large relative standard error and should be used with caution.

출처: “10.5 Retailing of tobacco products in Australia,” Bayly & Scollo, 2020, Tobacco in Australia: Facts and issues. <https://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0-to-bacco-industry/10-5-retailing-of-tobacco-products-in-australia>, Copyright 2024 by The Cancer Council

호주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해 독특한 규제 방향을 가지고 있다. 2008년에는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이하 TGA)이 일반담배를 제외한 모든 니코틴을 ‘위험한 독극물(dangerous poison)’로 구분하였기에 시장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Morphett et al., 2023, p. 54). 이후 2021년 10월 1일, TGA가 새로운 규제 방안을 발표하며 니코틴 포함 제품에 대한 구분 기준이 ‘처방전 필수 의약품 (prescription-only medicine)’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중 성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일 경우,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은 사람이 약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처방전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해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도 가능했다(Morphett et al., 2023, p. 55). 다만 주정부별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 강도에 일부 차이가

있었는데, 호주 내 다른 모든 주는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판매가 가능하였으나, 서호주의 경우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판매가 불가하였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의 사용률이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Greenhalgh et al., 2024a, 18.3.1.2),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고 표기된 제품의 성분 분석 결과 과반이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다는 근거(Chivers et al., 2019, pp. 127-128),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처방에 대한 보건 의료 전문가들의 행정적·심리적 부담 경험(Selamoglu et al., 2022, pp. 8-9) 등이 보고되자, 2023년 5월 호주 연방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 조치를 발표하였다(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2024).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모든 일회용 전자담배 제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3월 1일부터 개인이 직접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성분 기준이 개정되었다(전자담배 내 허용되는 가향 성분을 민트, 멘톨, 담배 향으로 제한 등). 2024년 7월 1일부터 모든 전자담배 제품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허용되며, 10월 1일부터는 처방전 없이도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약국에서만). 단, 처방전 없이 합법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사가 구매자의 신분과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한 달 사용에 적합한 양만 제공해야 하고, 다른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은 약국 내 방문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각 주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자체적인 법률을 집행할 수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법률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연방정부의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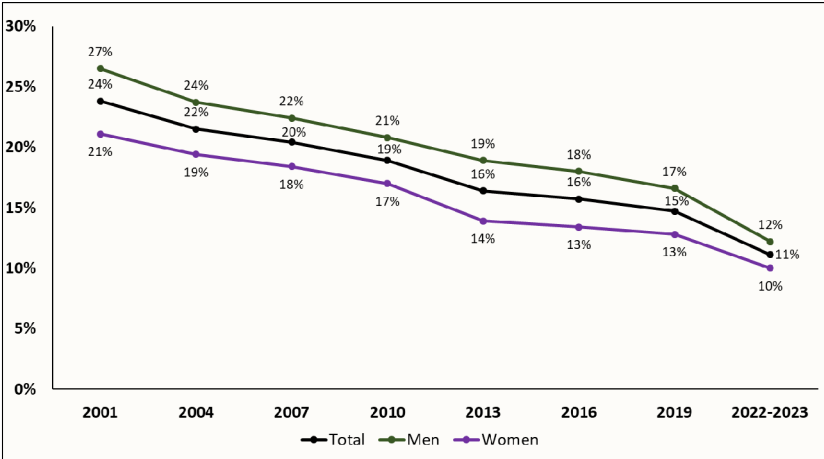
호주 시장 내에서 궐련형 전자담배(heated tobacco products)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Grace & Greenhalgh, 2024). 독극물에 대한 표준 기준(Standard for the Uniform Scheduling of Poisons), 그리고 주 및 준주 정부의 관련 법률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내 니코틴은 ‘처방전 필수(prescription only)’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은 수입 금지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에서 발급한 허가증 없이는 호주 내로 수입할 수 없다. 즉, 호주 내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 2) 담배 제품 사용률

호주의 현재 흡연율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해서 감소하는 중이다. 18세 이상 성인의 현재 흡연율은 2001년 24%(여자: 21%, 남자: 27%)에서 2022~2023년 11%(여자: 10%, 남자 12%)로 감소하였다([그림 5-3]). 특히, 18~24세 청년층의 흡연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2001년 32.1%(여자: 29.6%, 남자 34.6%)로 나타나던 청년의 현재 흡연율은 2022~2023년 현재까지 지속해서 감소하여, 9.4%(여자: 8.3%, 남자: 10.5%)로 나타나고 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4a).

마찬가지로, 청소년 흡연을 또한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2002년 기준, 조사 이전 주에 흡연했다고 보고한 12~15세 학생은 11%, 16~17세 학생은 23%로 나타난 반면, 2022~2023년 기준으로는 12~15세 흡연율이 3%, 16~17세 흡연율이 2%로 보고되었다(Greenhalgh et al., 2024b, 1.6.2).

[그림 5-3] 호주의 성별 현재 흡연율, 2001-2022/2023



주: 일반담배(필러), 파이프담배, 시가 포함

출처: "Data tables: National Drug Strategy Household Survey 2023-24. Tobacco smoking chapter,"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4a.

<https://www.aihw.gov.au/reports/illicit-use-of-drugs/national-drug-strategy-household-survey/data>의 그림 1.3.1을 저자가 일부 수정함

일반담배의 흡연율과는 달리 호주의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률은 증가하고 있다. 호주 내 14세 이상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2016년 1.2%에서, 2019년 2.5%, 2022~2023년 7.0%로 증가하였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4b, p. 4). 또한, 니코틴을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일반 판매가 불가능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처방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절반 이상이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의 사용률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14~17세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6년 1.8%에서 2022~2023년 9.7%로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8~24세 청년의 사용률은 2016년 5.3%에서 2022~2023년 21%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4b, p. 5)

### 3. 담배규제 관련 국가 계획

#### 1) National Preventive Health Strategy

National Preventive Health Strategy는 호주의 국가 건강증진 계획으로, 2021~2030년 기간에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중점 영역과 과제를 제시하였다(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2021, p. 48). 전체 7개의 중점영역 중 ‘담배 사용 및 니코틴 중독 감소(reducing tobacco use and nicotine addiction)’는 첫 번째 중점영역으로, 2025년까지 18세 이상 성인의 매일 흡연율을 10% 미만, 2030년까지 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형평성 관련 지표로 호주의 원주민인 어보리진 및 토레스 해협 제도인(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중 15세 이상의 매일 흡연율을 2030년까지 27%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담배 사용 및 니코틴 중독 감소 영역에서 2030년까지 달성할 성과로 총 13개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주요 과제로는 금연 지원 및 흡연 및 담배 업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재구성할 수 있는 대중매체 캠페인, 담배규제 정책(담배 제품에 대한 접근성 제한, 금연구역 예외 조항 삭제, 담뱃세 지속 인상, 담배 제품 성분 공개 등) 및 담배규제 정책을 담배업계로부터 보호하는 것,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취약한 인구집단의 담배 제품 사용 제한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2021, pp. 49-50).

## 2) National Drug Strategy

National Drug Strategy는 National Preventive Health Strategy와 연관된 계획 중 하나로 알코올, 담배 및 기타 약물 관리를 위한 국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부와 주요 이해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수요, 효과, 위험 감소 측면에서 비용-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규제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ational Drug Strategy의 추진 기간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계획의 중점영역을 실행, 인구집단 및 물질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총 7개의 실행 영역을 통해 근거 기반의 경제적인 치료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지원 강화, 참여적 절차 강화, 국가 수준의 조정력 강화, 제품에 대한 접근성 제한 강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담배 제품의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근거 기반 전략의 사례로 담배소비세, 캠페인, 건강 경고, 판촉 금지 및 치료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공급 감소를 위한 전략으로 소매점 제한(담배 판매를 위한 면허 제도 운영 등), 연령 제한, 제품의 생산 및 유통 제한 등이 제시되었고, 담배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는 금연 구역 강화, 니코틴 대체요법 등이 제시되었다(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2017, pp. 43-50).

## 3) National Tobacco Strategy

National Tobacco Strategy는 앞에서 제시한 National Preventive Health Strategy 및 National Drug Strategy의 세부 계획으로, 호주인의 담배 사용률과 담배 사용과 연관된 건강, 사회, 환경 및 경제적 비용과 이로 인한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추진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이다(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2023, p. 3).

다른 계획들과 마찬가지로, National Tobacco Strategy 또한 중점 영역과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중점영역은 총 11개로, ① 모든 상업적 및 기타 이해관계로부터 공공보건 정책, 특히 담배규제 정책 보호, ② 근거에 기반한 통합형 공중보건 캠페인과 소통 전략의 개발·실행·지원을 통한 금연 동기 부여, 금연 유지 지원, 담배 소비 감소, 및 담배업계 및 담배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재구성, ③ 담배 제품의 지불능력(affordability)을 지속해서 제한, ④ 원주민을 포함한 소수 계층의 담배 사용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추진 및 협력 관계 강화·확장, ⑤ 담배 사용으로 인한 피해 위험이 큰 집단과 담배 사용률이 높은 집단에서 담배 제품 사용 예방 및 감소 노력 강화, ⑥ 담배 관련 광고, 판촉 및 후원의 전면 금지, ⑦ 담배 성분 및 제품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제 강화, ⑧ 담배 제품의 공급, 이용 가능성 및 접근성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 ⑨ 전자담배 및 신종 담배 제품 규제 강화, ⑩ 실내 사업장, 공공장소 및 기타 공간에 대한 금연구역 적용 예외 조항 폐지, ⑪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금연 지원서비스 접근성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2023).

## 제2절 담배규제 및 가격 정책의 특성

### 1. 주요 담배규제 정책 추진 연표

호주가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하고 그에 따라 2005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담배규제 정책을 [그림 5-4] 및 [그림 5-5]와 같이 연표로 제시하였다. 각 정책은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전략인 MPOWER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였다. 단, 담배 사용 및 정책 모니터링(M)의 경우

직접적인 담배규제 정책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또한, 국가 전체가 아닌 특정 주에서만 정책이 시행된 경우에도 별도로 표기하였다.

담배연기로부터 보호(P) 정책의 경우, 일부 주에서 시작된 금연구역 정책이 점차 확산되어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05년 퀸즐랜드에서 시행된 놀이터 주변 흡연 금지 정책이 2014년 4월 모든 주로 확대되었으며, 아이가 있는 차량 내 흡연 금지 정책 또한 2007년 남호주에서 시작되어 2012년 모든 주로 확대되었다. 2010년 1월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주 일부 예외 장소(예: 뉴사우스웨일즈 내 카지노 개인룸)를 제외하고 모든 실내 공공장소 및 사업장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Grace and Smith et al., 2021). 또한, 실외 공공장소(해변, 어린이 놀이공간 주변 등)에서의 흡연 금지 정책 또한 점차 확대되는 중이다(Purcell et al., 2020).

금연지원서비스 제공(O) 정책의 경우, 다른 정책보다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호주에는 현재 국가 차원의 담배 의존 치료 전략이 수립된 바가 없다. 주요 관련 정책에는 2011년 2월에 도입된 니코틴 대체 약물에 대한 무상제공이 있다. 흡연자 중 의사의 처방을 받은 경우, 호주의 의약품 급여제도인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에 의해 12주 분량의 니코틴 대체 약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호주의 각 주정부는 금연 상담 전화(Quitline)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담배 위험성 경고: 건강 경고 부착(W1)’ 정책의 선도국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무광고 표준담뱃갑을 최초로 도입한 국가이다. 2012년에 도입된 무광고 표준담뱃갑은 다수의 관찰 및 실험 연구에서 흡연 시작을 줄이고 금연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reenhalgh et al., 2022). 2024년 4월에는 기존의 건강 경고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었다(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4a). 이에 따라 새로운 건강 경고 그림의 부착과 건강영향을 오도할 수 있는 문구 사용 금지가 도입된다.

호주에서는 담배 위험성 경고: 금연 캠페인(W2)에 대한 정책 이행을 위해 TV 캠페인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Bayly et al., 2022). 2010년 이후에 국가 금연 캠페인의 하나로 다수의 금연 광고와 캠페인이 진행되어 왔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흡연자들에게 금연을 유도하고 최근에 금연한 사람들의 재흡연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캠페인이 송출되었으며, 주정부와 주정부 기반 비정부기구 간의 협력으로 개발된 건강 경고 관련 캠페인이 방송되었다(Bayly et al., 2022).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흡연율이 높은 취약계층과 18~50세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Stop before the suffering starts’ TV 캠페인이 운영되었다. 다만, 2014~2015년 이후에는 금연 캠페인 관련 연방정부 예산이 지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며, 2017~2018년의 금연 캠페인 관련 예산은 2010~2011년 예산에 비해 20%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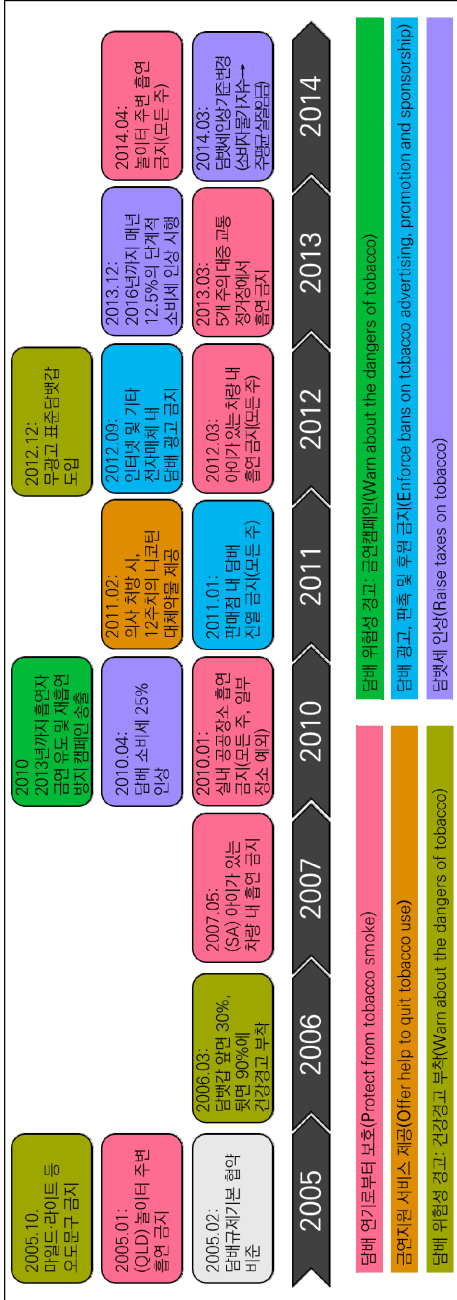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E) 정책의 경우, 2011년 1월을 기준으로 모든 주에서 소매점 내 담배 진열과 광고가 금지되었다. 또한, 2012년 9월을 기준으로 인터넷 및 기타 전자매체 내에서도 담배 광고가 금지되었으며, 현재는 아주 일부의 예외(예: 빅토리아, 서호주 등의 전문 담배 판매점에서는 담배 진열 가능)를 제외하고 모든 형태의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이 금지되어 있다(Grace, 2018).

담뱃세 인상(R) 정책의 경우, 2010년부터 두드러진 정책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0년 4월 예고 없이 시행된 25% 담배 소비세 및 관세(excise and customs duty on tobacco) 인상 이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12.5%의 소비세 및 관세 인상이 있었다. 2017년에는 공장에서 만든 담배(FMC) 및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RYO) 간의 조세 일관성을 위한 추가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면세 담배 허용량이 축소되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추가 인상이 없었으나, 2023년 5월에 기존 물가 연동 인상 외 추가 인상이 발표되면서 2023년 9월부터 매년 5%의 담배 소비세 및 관세가 인상되었고, 이 정책은 2025년 9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공장에서 만든 담배(FMC) 및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RYO) 간의 조세 일관성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한 차례 더 도입되었다. 담뱃세 인상 관련 구체적인 정책 변화 및 내용은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의 2023년 결과에 따라 각 MPOWER 전략별 이행 수준을 나타낸 결과는 [그림 5-6]과 같다. 호주의 경우, 담배 사용 및 규제정책 모니터링(M), 담배연기로부터 보호(P), 담배의 위험성 경고: 경고 그림(W1), 및 담뱃세 인상에 있어 최고 이행(complete measure) 수준을 보였다. 특히,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 브랜드의 전체 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7%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75% 이상보다 높았으며, 한 갑(20개비)당 가격은 33.20 호주 달러(USD 23.26)로 한화 3만 원을 초과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 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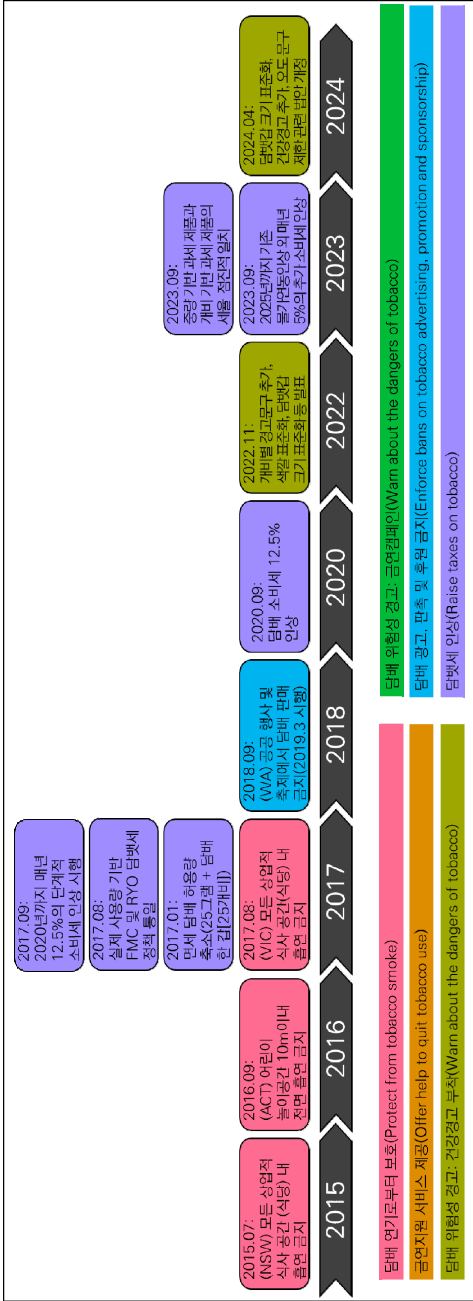
[그림 5-4] 호주에서 추진된 주요 담배규제 정책, 2005~2014



주: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정책이며, 특정 주에서 시행된 경우는 주를 함께 표시하였음(NSW: 뉴사우스웨일스, SA: 남호주, QLD: 퀸즐랜드, TAS: 타즈메니아, VIC: 빅토리아, WA: 서호주, ACT: 호주준주, NT: 북부준주)

출처: "Smoking and tobacco laws in Australia," 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4b. <https://www.health.gov.au/topics/smoking-vaping-and-tobacco/about-smoking/laws-in-australia>; "Tobacco control timeline," 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18. <https://www1.health.gov.au/internet/publications/publishing.nsf/Content/tobacco-control-toc~timeline>; "Timeline of tobacco in Australia," Greenhalgh, 2019. <https://www.tobaccoinaustralia.org.au/appendix-1/a1-6-history-of-tobacco-in-australia/a1-6-timeline.html>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자가 구성.

[그림 5-5] 호주에서 추진된 주요 담배규제 정책, 2015-2024



주: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정책이며, 특정 주에서 시행된 경우는 주를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NSW: 뉴사우스웨일즈, SA: 남호주, QLD: 퀸즐랜드, TAS: 타즈메니아, VIC: 빅토리아, WA: 서호주, ACT: 호주준주, NT: 북부준주

출처: "Smoking and tobacco laws in Australia," 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4b. <https://www.health.gov.au/topics/smoking-vaping-and-tobacco/about-smoking/laws-in-australia>, "Tobacco control timeline," 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18. <https://www1.health.gov.au/internet/publications/publications/nsf/Content/tobacco-control-toc-timeline>; "Timeline of tobacco in Australia," Greenhalgh, 2019. <https://www.tobaccoinaustralia.org.au/appendix-1/a1-6-history-of-tobacco-in-australia/a1-6-timeline.html>의 내용을 기반으로 저자 구성.

금연지원서비스 제공(O)의 경우 일부 금연보조제 또는 금연서비스의 비용만 지원되며,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에는 일부 예외 사항이 있어 다소 이행(moderate measure)으로 나타났다. 담배의 위험성 경고: 금연 캠페인(W2)에 있어서는 평가 대상 기간인 2020년 7월 1일과 2022년 6월 30일 사이에 최소 3주 이상 지속된 국가 단위 금연 캠페인이 없어 이행 전무(no policy or weak measure)로 나타났다.

[그림 5-6] 호주의 MPOWER 이행 수준

| Summary of MPOWER measures in Australia                                                                                                                                                                                                                          |                         |                      |                           |                          |                                          |                                                 |                                                     |
|------------------------------------------------------------------------------------------------------------------------------------------------------------------------------------------------------------------------------------------------------------------|-------------------------|----------------------|---------------------------|--------------------------|------------------------------------------|-------------------------------------------------|-----------------------------------------------------|
| Compliance is scored 0—10 where 10 is the highest level of compliance. Compliance is measured only for P and E.<br>The methods used to compile this profile are described in the technical notes of the <i>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23</i> . |                         |                      |                           |                          |                                          |                                                 |                                                     |
| M                                                                                                                                                                                                                                                                | P                       | O                    | W                         |                          | E                                        | R                                               |                                                     |
| MONITORING                                                                                                                                                                                                                                                       | SMOKE-FREE ENVIRONMENTS | CESSATION PROGRAMMES | HEALTH WARNINGS           | MASS MEDIA               | ADVERTISING BANS                         | TAXATION                                        | CIGARETTES LESS AFFORDABLE SINCE 2012               |
|                                                                                                                                                                                                                                                                  | ...                     |                      |                           |                          | 10                                       | 77.0%                                           | YES                                                 |
| MPOWER score colour key                                                                                                                                                                                                                                          |                         |                      |                           |                          | Affordability category                   |                                                 |                                                     |
| Complete measure                                                                                                                                                                                                                                                 | Moderate measure        | Minimal measure      | No policy or weak measure | Not categorized/ No data | YES<br>cigarettes became less affordable | NO<br>cigarettes did not become less affordable | ↔<br>no trend change in affordability of cigarettes |
| The colours are explained in more detail in the MPOWER legend on the last page of this document.<br>In all tables "..." means data are not available and "-" means data are not required.                                                                        |                         |                      |                           |                          |                                          |                                                 |                                                     |

출처: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Country Profile: Australi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tobacco-aus-2023-country-profile>. Copyright 2023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2. 가격 정책

### 가. 담배 조세 정책 및 행정

호주의 담배 조세 정책 및 행정에 대한 개요는 담뱃세 정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담배 조세 정책 및 행정을 위한 기술 매뉴얼(WHO technical manual on tobacco tax policy

on administration)의 권고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해당 매뉴얼은 조세 정책, 조세 설계, 조세 일관성, 모니터링 및 평가, 조세 행정 및 정치, 경제에 대해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pp. 271-281). 각 항목에 대한 주요 권고 사항과 함께, 공개된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호주의 이행 현황을 기술하였다. 단, 정치, 경제 관련 권고 사항은 담배업계가 담뱃세 정책 인상에 반대할 때 제시하는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거나, 이미 다른 영역에서 다른 내용(예: 불법 담배 거래, 세수 확보 등)이므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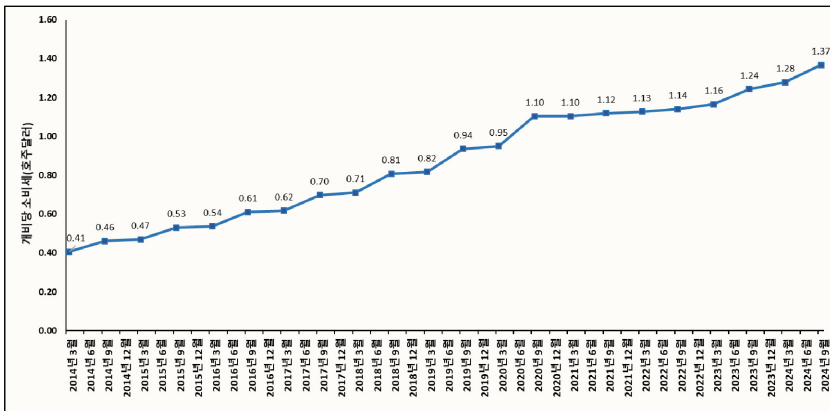
### 1) 조세 정책(tax policy)

조세 정책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① 담배 사용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을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소비세(excise tax) 활용, ② 정책 논의 초기부터 관련 기관의 참여 유도, ③ 다부문(농업, 산업, 무역, 재정, 노동 등)에 걸친 정책 일관성 강화가 제시되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pp. 271-272).

호주 정부는 2005년부터 National Tobacco Strategy 등의 국가 계획을 통해 공중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담뱃세 인상을 핵심 정책으로 고려할 것을 공표해왔다. 현재 호주의 담배 제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담배 제품의 유형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부과 단위가 달라진다. 공장에서 만든 일반담배, 시가 및 시가릴로 중 개비당 0.8g 미만의 담뱃잎을 함유하는 경우 개비당 소비세를 부과하고, 0.8g을 초과하는 경우 담뱃잎 성분 kg 당 소비세를 부과한다. 파이프나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 제품 등에 활용되는 가루형 담배/썬 담배(loose tobacco) 또한 담뱃잎 성분 kg당 담배소비세를 부과한다(Australian Taxation Office, 2024a). 호주의 담

배소비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개비당 0.8g 미만의 담뱃잎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담배의 경우, 한 개비당 담배소비세가 2014년 3월 0.31호주달러(20개비 기준 한 갑당 6.2호주달러, 한화 약 5,600원)에서 2024년 9월 1.37호주달러(20개비 기준 한 갑당 27.4호주달러, 한화 약 25,000원)으로 증가하였다([그림 5-7]).

[그림 5-7] 연도별 담배 한 개비당 담배소비세(호주달러)



주: 개비당 0.8g 미만의 담뱃잎을 포함하고 있는 담배의 소비세

출처: “Historical excise rates, for Petroleum, Alcohol and Tobacco back to 1965”, Australian Taxation Office, 2024b. <https://data.gov.au/data/dataset/excise-data>를 바탕으로 그림으로 재구성함

호주의 재무부(Treasury) 및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등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담뱃세 인상 정책을 지지해왔으며, 담뱃세 인상에 따른 정부의 세수 영향 등을 파악하고 흡연자가 담뱃세 인상의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행태(불법 담배 거래)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O'Bannon & Clark, 2019).

## 2) 조세 설계(tax design)

조세 설계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① 단순한 조세 구조 설계, ② 종량세 적용, ③ 지불 능력을 낮추기 위한 담뱃세 대폭 인상, ④ 세수 인상이 목적인 경우, 정기적인 개별소비세 인상 실시, ⑤ 인플레이션 및 소득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 조정 체계 활용, ⑥ 가격정책은 소비세 인상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없으나, 특정 상황에서는 담뱃세 인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가격정책(예: 하한제)과 소비세 인상을 동시에 적용, ⑥ 담배 제품 할인, 개비 담배 판매 등 가격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가격 요인들에 대한 규제정책 동시 시행, ⑦ 담뱃세 인상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담뱃세 인상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가 제시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pp. 272-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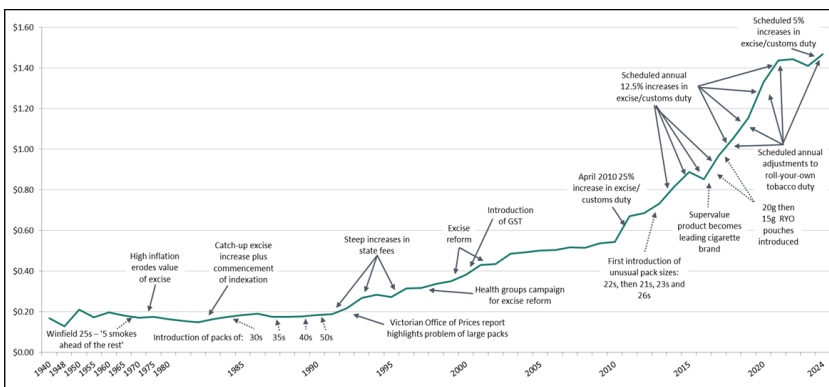
호주의 담뱃세는 소비세(excise tax), 관세(customs duty) 및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주정부 수준에서 담뱃세가 징수되었을 때는, 담뱃세 구조 및 세율 등에 차이가 있어 담뱃세 인상의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연방정부가 유일한 담뱃세 징수기관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조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Scollo, 2024)

호주는 1999년까지 담배 중량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세와 도매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종가세(Ad Valorem)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다 가벼운 무게의 담배 개비를 하나의 담뱃갑 내 최대한 많이 포장하는 것이 유리하였는데, 그 결과 한 갑에 25개비, 30~50개비를 포장한 담배 제품이 출시되게 되었다. 이후 관련 옹호 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담배의 소비세와 관세 부과 방식이 중량 기준에서 담배 개비 수 기준으로 변경되어 종량세를 채택하게 되었다(Bayly and Scollo., 2024a).

물가지수 연동 담뱃세 인상은 1984년부터 도입되었다. 2014년 이전까지는 담뱃세가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와 연동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주 평균 실질임금(Average Weekly Ordinary Times Earning)과 연동되어 1년에 2번씩(3월 및 9월) 인상되고 있다.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물가지수 연동에 따른 인상 외에 담배 소비세 및 관세 인상이 없었다. 2010년 4월 29일 호주 정부는, 바로 다음 날인 2010년 4월 30일부터 25%의 즉각적인 담배 소비세 및 관세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Excise Tariff Amendment (Tobacco) Act, 2010). 이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물가 인상에 따른 인상에 추가로 매해 12.5%의 인상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호주 내 담배 제품의 가격은 급격히 인상되었으며([그림 5-8]), 2012년, 호주 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브랜드 기준, 한 개비당 0.35호주달러(20개비 기준 한 갑당 7호주달러, 한화 약 6,400원)이던 담배가격이 2020년에 1.10호주달러(20개비 기준 한 갑당 20.20호주달러, 한화 기준 18,300원)로 올랐다.

[그림 5-8] 연도별 담배 한 개비당 권장 소매 가격(호주달러)



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2012년 호주 달러를 기준으로 권장 소매가격을보정함.

출처: "13.6 What tobacco taxes apply in Australia?," Bayly & Scollo, 2024b, Tobacco in Australia: Facts and issues. <https://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3-taxation/13-6-what-tobacco-taxes-apply-in-australia>, Copyright 2024 by The Cancer Council

담배업계는 담뱃세 인상에 대응하여 저가 또는 초저가(super-value) 제품을 출시하거나, 다양한 크기의 담뱃갑(한 갑당 20~50개비 범위)을 도입하는 등의 마케팅 전략을 취하고 있다(Sheikh et al., 2023; Smith et al., 2013). 이에 따라, 담배 구매자들은 인상된 가격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행동(cost-minimising behaviours)을 취하게 되는데, 호주에서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흡연자의 비율은 2007~2008년 57.1%에서 2018년 76.8%로 약 2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Cho et al., 2024). 이러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표준화된 크기의 담뱃갑과 담배 개비만 판매가 허용된다고 발표하였다(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4).

호주 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시 총 11개 유형의 재화 가격 변화를 고려하며, 여기에는 담배 제품도 포함된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4). 따라서 담뱃세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지수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 3) 조세 일관성(tax parity)

조세 일관성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①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동일한 조세 구조 적용, ② 신종 담배 및 니코틴 제품을 엄격히 규제하고, 해당 제품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면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제시되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pp. 274-275).

호주 정부는 2017년 이전까지 공장에서 만든 담배(FMC)와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RYO)에 대해 모두 개비당 0.8g의 담뱃잎이 사용된다고 가정하여 담뱃세를 부과해왔다(Bayly & Scollo, 2024a, 13.6.1.1). 그러나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RYO) 한 개비에는 0.8g보다 적은 양의 담뱃잎이 들어가,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RYO) 사용자가 공장에서 만든 담배

(FMC) 사용자보다 더 낮은 담뱃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제품 간 조세 일관성을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RYO)의 과세 단위를 0.7g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RYO)의 실제 개비당 담배 사용량이 0.6g에 불과하다는 근거에 따라, 2023년에 추가 정책을 발표하여 2026년까지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RYO)의 과세 단위를 0.6g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 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껀련형 전자담배 등과 같은 니코틴 제품이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당 제품들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 4) 모니터링 및 평가(monitaring and evaluation)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① 시장 상황 파악, ② 가장 효과적인 담배소비세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의 영향을 평가, ③ 담뱃세 정책과 정책의 영향을 개선할 수 있는 지표의 채택이 제시되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pp. 275-276).

관세가 부과되는 담배 제품의 수량 자료는 호주 통계청에서 확보하고 있으며, 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수량 자료는 호주 국세청에서 수집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는 요청 시 제공되며, 국세청 자료는 일반적으로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1년 뒤에 매년 공개되고 있다(Scollo, 2024, 13.9.10).

### 5) 조세 행정(tax administration)

조세 행정 관련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 조세 행정의 모범 사례를 적용하여 담뱃세 행정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 ② 세무 처리 과정에서 정보의 정확도와 준수 수준 보장, ③ 담배 공급망에 대해 철저한 관리 및 집행, ④ 불법 담배 적발 시 준수해야 할 절차 정의, ⑤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불법 담배 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가입 및 이행, ⑥가능한 한 모든 담배 제품과 신종 니코틴 제품에 대해 동일한 조세 행정 및 집행 규정 적용, ⑦조세 행정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광범위한 정책 시행(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pp. 276-278). 여기서는 일반적인 조세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사항(예: 정보의 정확성 보장, 조세 행정의 건전성 보장 등)은 제외하고, 담뱃세 정책 및 담배 제품과 밀접하게 관련된 권고 사항의 이행 현황만을 제시하였다.

호주는 불법 담배 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불법 담배 거래를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청은 불법 담배 거래로 정의되는 활동(소비세 면허 없이 호주 내에서 담뱃잎을 재배, 생산하는 경우, 세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담배 제품을 호주 시장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담배 거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제청, 국경 경비대 등의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담배 대책 본부(Illicit Tobacco Task Force)를 운영하고 있다(Australian Taxation Office, 2024c). 불법 담배 관련 활동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불법 담배를 5kg 이상 소지하는 경우 또는 불법 담배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 또는/그리고 최소 62,600호주달러에서 최대 313,000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 또는 최소 156,500호주달러에서 최대 469,500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Australian Taxation Office, 2024c).

나. 담뱃세 인상의 영향

학술 근거를 기반으로 호주 내 담뱃세 인상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의료 관련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PubMed를 중심으로 관련 문헌을 검색하였다. 검색은 2024년 8월 1일에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검색식을 활용하였다: (price\*[title/abstract] OR pricing[title/abstract] OR tax[title/abstract] OR taxation[title/abstract] OR taxes[title/abstract] OR excise[title/abstract]) AND ("Smoking"[MeSH Terms] OR Tobacco\*[title/abstract]) AND ("Australia"[Mesh Terms]). 호주의 담뱃세가 2010년부터 크게 인상된 것을 고려해 2010년 이전에 출판된 문헌은 배제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 출판되었더라도 연구 대상 기간이 2010년 이전이면 배제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및 배제 기준은 <표 5-2>와 같다. 선정 및 배제 기준에 따라 검색된 114개의 문헌 중 총 8개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헌별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연구 방법 및 주요 결과는 <표 5-6>에 제시하였다.

<표 5-2> 호주 담뱃세 인상 효과 평가 대상 문헌 선정을 위한 기준

| 기준    | 내용                                                                                                                                                                                                                                                       |
|-------|----------------------------------------------------------------------------------------------------------------------------------------------------------------------------------------------------------------------------------------------------------|
| 선정 기준 | • 2010년 이후 호주의 담뱃세 인상이 담배 제품 사용률, 인식, 행태, 건강 결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한 원저(original article) 문헌                                                                                                                                                             |
| 배제 기준 | • 호주 외 지역에서의 담뱃세/담배가격 인상 영향을 다룬 문헌<br>• 실제 담뱃세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지 않고 예측하였거나(예측 모형 연구 등), 담뱃세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담뱃세 인상 시점을 포함하는 기간의 행태, 건강영향 변화 등을 관찰한 연구<br>• 실증연구가 아닌 문헌(letter, perspectives, commentary 등)<br>• 2010년 이전에 출판되었거나 연구 대상 기간이 2010년 이전인 경우 |

총 8개 문헌 중, 담뱃세 인상에 따른 인구집단 수준의 흡연을 변화를 평가한 문헌과(Wilkinson et al., 2019; Wakefield et al., 2014), 개인

수준의 흡연 행태 변화를 평가한 문헌은 각각 2건이었다(Dunlop et al., 2011a; Dunlop et al., 2011b). 원주민 지역사회 내에서 담뱃세 인상에 따른 담배 판매량 변화를 분석한 연구 또한 2건이었는데(Thomas et al., 2021; Thomas et al., 2013), 이 중 2013년에 출판된 연구는 담배 판매량 변화 평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평가하는 혼합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Thomas et al., 2013).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흡연자들의 담뱃세 인상에 대한 반응을 평가한 연구와(Guillaumier et al., 2015), 담뱃세 인상을 포함한 담배규제 정책들이 흡연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Durkin et al., 2021)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헌들에서 제시한 근거에 따르면, 호주의 담뱃세 인상은 인구집단 수준의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시행된 담뱃세 12.5% 인상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된 담배규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한 연구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과 흡연율 사이에 음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상 이후 관찰 기간이 짧아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Wakefield et al., 2014).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월별 흡연율 자료를 기반으로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Wilkinson et al.(2019) 연구에 따르면, 예고 없이 시행된 2010년 4월의 담뱃세 25% 인상 정책은 즉각적인 흡연율 감소 효과(-0.745%P 감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감소 추세(월별 -0.023%P 감소)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예고 후 담뱃세 12.5% 인상을 시행한 결과, 즉각적인 감소(-0.997%P) 및 장기적인 감소 추세(월별 -0.044%P 감소)여서 이전보다 더욱 큰 효과가 나타났다. 2010년 인상 시에는 공장에서 만든 담배 제품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 사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인상에서는 공장에서 만

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 제품 사용의 증가가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

개인 수준의 흡연 행태 변화를 평가한 문헌에서도 담뱃세 인상 효과의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 담뱃세 인상 이후 연구 대상 흡연자 중 47.5%가 금연 시도 및 감연 등을 시도하였다고 보고하였다(Dunlop et al., 2011b). 또한, 흡연자 및 최근 12개월 이내 금연 성공자를 대상으로 금연 행태를 평가한 문헌에서도 담뱃세 인상 3개월 이전에 비해, 3개월 이후에 금연했다고 보고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Dunlop et al., 2011a). 반면, 담뱃세 인상 정책의 영향을 저해할 수 있는 행태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Dunlop et al.(2011b) 연구에서는, 담뱃세 인상 이후 흡연자 11.4%가 흡연 행태에 대한 변화 없이 저가 브랜드 등으로 사용 제품을 대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행태는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 소득 수준이 낮은 흡연자들은 담뱃세 인상에 대처하여 담배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식사를 거르거나, 공과금 납부를 미루는 등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변인으로부터 담배를 빌리거나,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로 사용 제품을 대체하거나, 불법 담배 제품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uilaumier et al., 2015). 담뱃세 인상은 흡연 행태뿐만이 아니라 흡연 관련 사회적 규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출판된 연구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 정책과 가족 및 주변인의 흡연 관련 부정적 인식에 연관(오즈비: 1.41, 95% 신뢰구간: 1.03, 1.9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세 인상 이후 호주 원주민 지역사회 내 상점을 대상으로 담배 판매량을 확인한 2건의 연구를 고찰하였다. 2010년의 담뱃세 인상을 평가한 문헌에서는 담뱃세 인상 7개월 이후 담배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2%, 95% 신뢰구간: -5, 10) 감소 추세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

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의 인상을 평가한 문헌에서는 2016년과 2018년 인상 직후 각각 5.8%, 8.2%의 담배 판매량 감소가 관찰되었다.

### 제3절 담배 종결전 실현을 위한 가격 정책의 역할

#### 1. 호주의 담배 종결전 목표 및 계획

담배 종결전(tobacco endgame)은 담배 유행병을 지속시키는 구조적, 정치적, 사회적 역학 구조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구상으로(Malone et al., 2014, p. 4), 국제사회 및 여러 국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담배 종결전은 일반적으로 흡연율을 5% 미만으로 빠르게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담배 종결전 관련 초기 논의 과정에서는 이 목표를 20년 이내에 달성하도록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권고되었으나(Thomson et al., 2012, p. 293), 최근 연구들은 담배 제품 내 니코틴 농도 제한, 담배 소매점 제한, 매우 큰 폭의 담뱃세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이보다 더 짧은 기한 내에도 담배 종결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Puljević et al., 2022).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호주는 National Preventive Health Strategy 및 National Tobacco Strategy를 통해 2030년까지 성인 매일 흡연율을 5%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담배 종결전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계획은 기존의 수요 억제 조치 강화와 함께 담배 제품의 공급, 가용성 및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담뱃세 대폭 인상도 이러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 2. 담배 종결전 실현을 위한 담뱃세 인상 전략

담배 종결전 실현을 위한 담뱃세 인상 전략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하여, 담배 종결전 관련 목표(2030년까지 성인 매일 흡연율 5% 미만)를 제시하고 있는 National Preventive Health Strategy 및 National Tobacco Strategy의 담뱃세 인상 관련 실행 과제를 고찰하였다.

National Preventive Health Strategy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담배 제품에 대한 지불 능력(affordability)을 지속해서 줄여나가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장에서 만든 담배(FMC)와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RYO) 간 소비세 및 관세를 일치화시키는 작업 등이 포함된다. National Tobacco Strategy의 세 번째 중점영역(continue to reduce the affordability of tobacco products)에는 지불 능력 제한에 대한 총 7개의 실행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2023, p. 16). 담배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지속해서 제한하기 위한 실행 과제로 담뱃세 인상의 필요성과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담뱃세 인상의 영향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들(담뱃갑 크기 변경, 불법 담배 거래)을 파악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 인상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인 금연지원서비스 강화, 특히 저소득층 대상 서비스 강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표 5-3〉).

〈표 5-3〉 National Tobacco Strategy 지불 능력 관련 중점영역의 실행 과제 및 책임 주체

| 실행 과제                                                                                   | 책임 주체                            |
|-----------------------------------------------------------------------------------------|----------------------------------|
| 3.1. 담배소비세 및 이에 상응하는 관세 변경의 필요성과 이점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 • 연방정부                           |
| 3.2. 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의 개정을 통한 제조 담배, 시가필로, 말아 피우는 담배 제품의 포장 및 개비 크기 표준화 | • 연방정부                           |
| 3.3. 담배소비세 인상의 공중보건적 영향을 저해시킬 수 있는 담배업체의 전략 및 기타 관행을 검토하고, 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시행     | • 연방정부<br>• 주 및 준주 정부<br>• 비정부기관 |
| 3.4. 담배소비세 인상이 청소년과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 연방정부<br>• 주 및 준주 정부<br>• 비정부기관 |
| 3.5. 담배소비세 인상과 함께 저소득층의 금연 동기를 강화하고 금연 시도를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보완                              | • 연방정부<br>• 주 및 준주 정부<br>• 비정부기관 |
| 3.6. 담배소비세 인상과 함께 불법 담배 거래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노력 보완                                      | • 연방정부<br>• 주 및 준주 정부            |
| 3.7. 담배 제품에 대한 지불 능력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들(예: 최소 가격 설정 등)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과 실현 가능성 검토         | • 연방정부                           |

## 제4절 보건의로 재원 확보 사례 및 특성

우리나라의 담뱃세와 달리 현재 호주의 담뱃세는 목적세(earmarked tax)가 아니기 때문에, 징수된 세금이 일반재정으로 포함된다. 단, 1997년 이전에 주 및 준주 정부에서 징수한 담뱃세를 목적세로 분류하여 보건의로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먼저 기술하고자 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징수된 담뱃세의 규모와 전체 국가 재정 중 담뱃세로 인한 세수가 차지하는 분율, 그리고 담뱃세 인상 이후 담배 규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예산 변화를 중심으로 담뱃세의 활용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1997년 이전 담뭇세 징수 및 활용

호주 연방정부는 1901년부터 담배 소비세와 관세를 징수했으며, 주 및 준주 정부에서의 담배 판매 수수료는 1974년 빅토리아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뉴사우스웨일즈, 남호주 또한 담배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도입하였고, 1989년에는 호주 내 모든 주에서 담배 판매 수수료를 징수하였다(〈표 5-4〉). 담배 판매 수수료를 도입한 초기에는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세율이 매우 낮았으나, 1980년 이후 세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즈의 세율은 1976년 기준 10%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 중 하나인 Winfield에 부과되는 세금이 0.23 호주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에는 세율이 100%로 올라 2.3달러에 달했다(Bayly & Scollo, 2024a, 13.6.4).

〈표 5-4〉 주별 담배 판매 수수료율(%), 1974~1997

| 연도   | VIC | NSW | SA   | WA   | TAS | NT | ACT      | QLD |
|------|-----|-----|------|------|-----|----|----------|-----|
| 1974 | 2.5 |     |      |      |     |    |          |     |
| 1975 | 10  | 10  | 10   |      |     |    |          |     |
| 1976 | 10  | 10  | 10   | 10   |     |    |          |     |
| 1977 | 10  | 10  | 10   | 10   |     |    |          |     |
| 1978 | 10  | 10  | 10   | 10   |     |    |          |     |
| 1979 | 12  | 10  | 10   | 10   |     |    |          |     |
| 1980 | 12  | 10  | 10   | 10   |     |    |          |     |
| 1981 | 12  | 10  | 12.5 | 10   | 10  | 12 |          |     |
| 1982 | 12  | 10  | 12.5 | 12.5 | 12  | 12 |          |     |
| 1983 | 25  | 15  | 25   | 35   | 24  | 12 |          |     |
| 1984 | 25  | 15  | 25   | 35   | 35  | 25 |          |     |
| 1985 | 25  | 25  | 25   | 35   | 35  | 35 | 15<br>25 |     |
| 1986 | 25  | 30  | 25   | 35   | 35  | 35 | 30       |     |
| 1987 | 30  | 30  | 25   | 35   | 50  | 35 | 30       |     |

| 연도   | VIC       | NSW       | SA        | WA  | TAS | NT        | ACT      | QLD      |
|------|-----------|-----------|-----------|-----|-----|-----------|----------|----------|
| 1988 | 30        | 30        | 28        | 35  | 50  | 35        | 30       |          |
| 1989 | 30        | 30        | 28        | 35  | 50  | 35        | 30       | 30       |
| 1990 | 50        | 35        | 50        | 50  | 50  | 50        | 35       | 30       |
| 1991 | 50        | 50        | 50        | 50  | 50  | 50        | 35       | 30       |
| 1992 | 50        | 50<br>75  | 50<br>75  | 50  | 50  | 50<br>60  | 50<br>75 | 30<br>75 |
| 1993 | 75        | 75        | 75<br>100 | 50  | 50  | 60        | 75       | 75       |
| 1994 | 75        | 75        | 100       | 100 | 50  | 85        | 75       | 75       |
| 1995 | 75<br>100 | 75<br>100 | 100       | 100 | 100 | 85<br>100 | 75       | 75       |
| 199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1997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출처: “13.6 What tobacco taxes apply in Australia?,” Bayly & Scollo, 2024a, Tobacco in Australia: Facts and issues. <https://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3-taxation/13-6-what-tobacco-taxes-apply-in-australia>의 표 13.6.3을 저자가 일부 수정

1997년 이전 빅토리아를 시작으로, 남호주(1998년) 및 서호주(1990) 등에서도 법안 개정을 통해(Richardson et al., 1995, p. 100), 담배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 중 일부가 전용 세금(hypothecated tax, 일반 정부 수입에 포함되지 않고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세금)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 자금은 Victori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VicHealth) 등의 재단이 관리하는 건강증진기금으로 배정되어 사용되었으며(그림 5-9), 이는, 담배 광고 및 판촉 금지 정책 등에 따라 재단에서 받고 있던 후원금이 감소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담뱃세에 대한 목적세 적용은, 곧 미국의 일부 주, 태국, 한국 등으로 확산되었다.

[그림 5-9] 1987~1997년 기간에 VicHealth의 자금

|                                                                                                                     | Pre-1987 | 1987 <sup>2</sup> | 1989 | 1990 | 1993 <sup>3</sup> | 1995       | 1997 <sup>4,5</sup> |
|---------------------------------------------------------------------------------------------------------------------|----------|-------------------|------|------|-------------------|------------|---------------------|
| Total Victorian tobacco licence fees (as a percentage of value of wholesale sales of tobacco products) <sup>1</sup> | 25%      | 30%               | 35%  | 50%  | 75%               | 100%       | Nil                 |
| Proportion hypothecated to health promotion fund                                                                    | N/A      | 1/6               | 1/7  | 1/10 | 1/15 (max)        | 1/15 (max) | Nil                 |
| Percentage of wholesale sales for health promotion                                                                  | Nil      | 5%                | 5%   | 5%   | 5% (max)          | 6.6% (max) | Nil                 |

**Notes**

1. 'Wholesale value' equals the sum of the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costs plus the federal excise tax.
2. 1987-88 to 1991-92: Full hypothecation calculated as percentage of Victorian ad valorem tobacco franchise fees (that is, the tobacco levy).
3. 1992-93 to 1995-96: Nominal hypothecation, but capped. VicHealth funded from tobacco fees, but actual amount capped and less than the specified maximum.
4. 1996-97: Indexation of 3% introduced.
5. 1997-present: VicHealth has been funded from consolidated revenue as part of Victoria's annual budget, and paid via 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출처: "FACT SHEET 1 VicHealth Funding Model," Victori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2006. [https://www.vichealth.vic.gov.au/sites/default/files/Fact-Sheet\\_VicHealth-Funding-Model.pdf](https://www.vichealth.vic.gov.au/sites/default/files/Fact-Sheet_VicHealth-Funding-Model.pdf). Copyright 2006 by VicHealth

그러나 1997년, 호주 고등법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소비세로 간주되며, 호주 헌법에 따라 소비세는 연방정부만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로 인해 VicHealth 등의 재단의 주요 재원이었던 전용 담뱃세가 폐지되었으며, 1997년 이후 각 주별 재단은 정부의 일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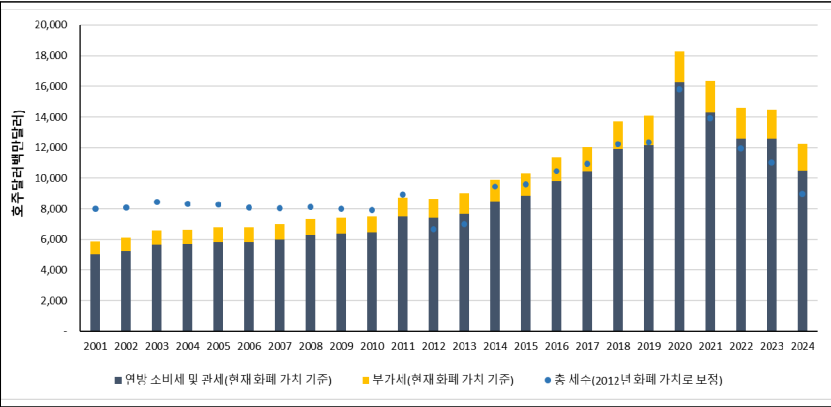
## 2. 1997년 이후 담뱃세 징수 및 활용

1997년 이후, 호주의 담뱃세는 연방정부만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5-10]은 2001년부터 2024년까지의 담배 세수를 나타내는데, 총액뿐만 아니라 소비세와 관세 그리고 부가세에서 나오는 세수를 각각 제시하였다(Bayly & Scollo, 2024b, 13.7.1). 연방정부의 담배 세수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연동 인상으로 인해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2001

년 총세수: 5,878백만 호주달러, 2010년 총세수: 7,521백만 호주달러), 2010년의 25% 인상 및 2013년 이후의 연속적인 인상으로 인해 2020년 까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20년 총세수: 18,270백만 호주달러). 2020년 이후 호주의 담배 세수는 증가하는 세율에도 불구하고, 흡연자 수의 감소로 인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2024년 총세수: 12,221백만 호주달러).

호주의 담뭍세가 더 이상 목적세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담뭍세 인상에 따라 담배규제를 위한 예산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Scollo, 2024, 13.9.8). 예를 들어, 2010년 담뭍세 인상 이후인 2011년 1월부터 외래 처방 의약품의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급여 프로그램인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내 니코틴 대체 약물이 등재되었으며, 이에 따라 니코틴 대체 약물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5-10] 호주의 담배 세수, 2001~2024



출처: “13.7 Revenue from tobacco taxes in Australia,” Bayly & Scollo, 2024b, Tobacco in Australia: Facts and issues. <https://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3-taxation/13-7-revenue-from-tobacco-taxes-in-australia>의 표 13.7.1을 저자가 일부 수정함

호주 연방정부의 전체 예산에서 담배로 인한 세수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표 5-5〉). 1998~1999년에 비해 2022~2023년의 담배 세수가 약 7배 가까이 늘어났으나, 총세수 또한 5배 가까이 늘어나 전체 세수 중 담배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표 5-5〉 호주 연방정부의 전체 세수 중 담배 세수의 비중

| 구분                 | 1998~1999 | 2008~2009 | 2018~2019 | 2022~2023 |
|--------------------|-----------|-----------|-----------|-----------|
| 담배 세수<br>(백만 호주달러) | 1,888.1   | 6357.8    | 12,147.0  | 12,596.0  |
| 총세수<br>(백만 호주달러)   | 137,220.0 | 278,425.0 | 456,529.0 | 619,782.0 |
| 담배 세수 /<br>총세수(%)  | 1.4%      | 2.3%      | 2.7%      | 2.0%      |

출처: “13.7 Revenue from tobacco taxes in Australia,” Bayly & Scollo, 2024b, Tobacco in Australia: Facts and issues. <https://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3-taxation/13-7-revenue-from-tobacco-taxes-in-australia>의 표 13.7.2을 저자가 일부 수정함

호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의 2023~2024 예산안에 따르면, 향후 3년간 담배 세금이 매년 5%씩 인상되어, 향후 4년 동안 약 33억 호주달러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3). 이에 따라 4년간 총 7억 4천만 호주달러가 흡연 예방 및 금연 예산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며, 주요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및 과거 흡연자 대상 국가 폐암 검진 프로그램(2억 6천만 호주달러), 원주민 암 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2억 4천만 호주달러), 원주민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 문제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강화(1억 4천만 호주달러), 전자담배 사용 및 담배규제 관련 대중 캠페인(6천 3백만 호주달러),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금연 지원 프로그램(3천만 호주달러) 등이다.

〈표 5-6〉 호주 담뭍세 인상 영향 평가를 위해 최종 선정된 문헌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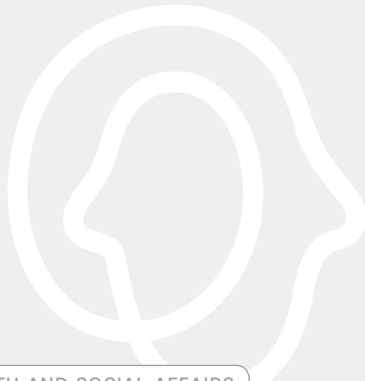
| 연번 | 문헌 정보<br>(제1저자, 제목, 출판연도)                                                                                                                                                                                | 목적                                                                                                                                                                        | 연구 대상 및 방법                                                                                                                                                                             | 주요 결과                                                                                                                                                                                                                       |
|----|----------------------------------------------------------------------------------------------------------------------------------------------------------------------------------------------------------|---------------------------------------------------------------------------------------------------------------------------------------------------------------------------|----------------------------------------------------------------------------------------------------------------------------------------------------------------------------------------|-----------------------------------------------------------------------------------------------------------------------------------------------------------------------------------------------------------------------------|
| 1  | Thomas, Impact of three annual tobacco tax rises on tobacco sales in remote Australian Aboriginal community stores, 20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시행된 12.5%의 담뭍세 인상이 원주민 지역사회 내 상점의 담배 판매량에 미친 영향을 확인</li> <li>담배 판매 감소가 과일, 채소 등의 필수품 소비 변화에 미친 영향 평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원주민 지역사회 내 32개 상점의 주간 판매량(2016~2018년)</li> <li>방법: 담배 판매량 및 과일·채소 판매량에 대한 단절적 시계열 분석 (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6년과 2018년 인상 직후 각각 5.8%, 8.2%의 담배 판매 감소가 관찰되었음</li> <li>연구 기간 동안 과일 및 채소 판매량의 변화는 관찰할 수 없었음</li> </ul>                                                                            |
| 2  | Durkin, Are anti-smoking social norms associated with tobacco control mass media campaigns, tax and policy changes? Findings from an Australian serial cross-sectional population study of smokers, 20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연 캠페인, 담뭍세 인상 및 기타 담배규제 정책이 흡연에 대한 규범 변화와 연관이 있는지 평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호주 빅토리아주의 18~59세 현재 흡연자 6658명(2012~2015년 Victorian Tracking Survey 대상자)</li> <li>방법: 담뭍세 인상 정책 노출과 흡연 관련 규범 사이의 관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뭍세 인상 정책은 가족 및 친구의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연관이 있었음(오즈비: 1.41, 95% 신뢰구간: 1.03, 1.94)</li> <li>그러나 담뭍세 인상 정책은 흡연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즈비: 1.15, 95% 신뢰구간: 0.83, 1.58)</li> </ul> |
| 3  | Wilkinson, Smoking prevalence following tobacco tax increases in Australia between 2001 and 2017: an 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20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고 없이 시행된 2010년의 담뭍세 25% 인상 정책과, 2013년 12월에 예고된 후 3년간(2014년 9월, 2015년 9월, 2016년 9월) 시행된 매해 12.5%의 담뭍세 인상이 흡연율에 미친 영향 평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5대 도시(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내 거주하는 14세 이상의 호주인</li> <li>방법: 월별 흡연율에 대한 단절적 시계열 분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뭍세 25% 인상은 즉각적인 흡연율 감소(-0.745%p, 95% 신뢰구간: -1.378, -0.112)와 장기적인 흡연율 감소 추세(월간 추세: -0.023%p, 95% 신뢰구간: -0.044, -0.003)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남</li> </ul>                                       |

| 연번 | 문헌 정보<br>(제1저자, 제목, 출판연도)                                                                                                                                      | 목적                                                                                       | 연구 대상 및 방법                                                                                                        | 주요 결과                                                                                                                                                                                                                                                                                                                                   |
|----|----------------------------------------------------------------------------------------------------------------------------------------------------------------|------------------------------------------------------------------------------------------|-------------------------------------------------------------------------------------------------------------------|-----------------------------------------------------------------------------------------------------------------------------------------------------------------------------------------------------------------------------------------------------------------------------------------------------------------------------------------|
| 3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행 예고 후 담뱃세 12.5% 인상 결과, 즉각적인 흡연을 감소(-0.997%p, 95% 신뢰구간: -1.632, -0.362) 및 장기적인 흡연을 감소 추세가 관찰되었음(-0.044%p, 95% 신뢰구간: -0.063, -0.026)</li><li>• 25% 인상 시 공장에서 만든 담배(FMC) 사용은 감소한 반면 직접 맡아 피우는 담배(RYO) 사용은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후 인상에서는 공장에서 만든 담배 사용의 감소가 지속되었지만, 직접 맡아 피우는 담배 사용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음</li></ul> |
| 4  | Guillaumier, 'Cigarettes are priority': a qualitative study of how Australian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smokers respond to rising cigarette prices, 20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호주 흡연자들의 담뱃세 인상에 대한 반응 평가</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상: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내 20명의 흡연자</li><li>• 방법: 대면 심층 인터뷰 결과에 대한 주제 분석</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식사를 거르거나, 공과금 납부를 미루는 등의 흡연 관련 빈곤과 경제적 스트레스 경험에 보고되었음</li><li>• 인상된 담배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인으로부터 담배를 빌리거나, 직접 맡아 피우는 담배 등으로 대체하거나, 불법 담배를 구매하는 등의 행태가 보고되었음</li></ul>                                                                                                                      |

| 연번 | 문헌 정보<br>(제1저자, 제목, 출판연도)                                                                                                                | 목적                                                                                                                                          | 연구 대상 및 방법                                                                                                                                                                                            | 주요 결과                                                                                                                                                                                                                                                       |
|----|------------------------------------------------------------------------------------------------------------------------------------------|---------------------------------------------------------------------------------------------------------------------------------------------|-------------------------------------------------------------------------------------------------------------------------------------------------------------------------------------------------------|-------------------------------------------------------------------------------------------------------------------------------------------------------------------------------------------------------------------------------------------------------------|
| 4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장자 대다수는 담배가격 인상이 담배 소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더 큰 폭의 가격 인상과 금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음</li> </ul>                                                                                                                                  |
| 5  | Wakefield, Time series analysis of the impact of tobacco control policies on smoking prevalence among Australian adults, 2001-2011, 20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1~2011년간 시행된 담배 규제 정책(금연구역 강화, 캠페인, 담뭍세 인상 등)이 성인 흡연율에 미친 영향 평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5대 도시(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호주인 (2001~2011년 동안 월간 평균 대상: 2,375명)</li> <li>방법: 담뭍세 인상 등의 담배규제 정책이 월별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ARIMA 분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가 가장 좋았던 모형(금연구역, 담배가격 인상, 캠페인 효과 포함 모형)에서 담배가격 인상과 흡연율 사이에 음의 연관성(-3.83, 95% 신뢰구간: -7.38, 0.67)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li> </ul>                                                              |
| 6  | Thomas, Impact and perceptions of tobacco tax increase in remote Australian Aboriginal communities, 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0년 담뭍세 25% 인상이 원주민 지역사회 내 상점의 담배 판매량에 미친 영향을 확인</li> <li>담뭍세 인상에 따른 주요 이해관계자의 인식 변화 평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① 원주민 지역사회 내 18개 상점의 담배 판매량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② 6개 지역사회 내 54명의 이해관계자</li> <li>방법: ① 월별 담배 판매량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 ② 심층 인터뷰 결과에 대한 주제분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뭍세 인상 이전 7개월 동안의 기간과 비교했을 때, 담뭍세 인상 이후 7개월간의 담배 판매량 추정치는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2.2%, 95% 신뢰구간: -5, 10)</li> <li>담뭍세 인상 이후 소득이 더 높은 주변 흡연자로부터 담배를 얻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직접 맡아 피우는 담배로 대체하는 사례도 관찰되었음</li> </ul> |

| 연번 | 문헌 정보<br>(제1저자, 제목, 출판연도)                                                                                                                       | 목적                                                                                                       | 연구 대상 및 방법                                                                                                                                                                                                                 | 주요 결과                                                                                                                                                                                                                                                                 |
|----|-------------------------------------------------------------------------------------------------------------------------------------------------|----------------------------------------------------------------------------------------------------------|----------------------------------------------------------------------------------------------------------------------------------------------------------------------------------------------------------------------------|-----------------------------------------------------------------------------------------------------------------------------------------------------------------------------------------------------------------------------------------------------------------------|
| 6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연하지 못하는 이유로 니코틴 의존, 흡연의 규범화, 금연 지원 부족 등이 제시되었음</li> <li>• 모든 인텁부 대상자는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배가격 인상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li> </ul>                                                                                                      |
| 7  | Dunlop, Impact of the 2010 tobacco tax increase in Australia on short-term smoking cessation: a continuous tracking survey,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4월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행태 변화 평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내 18세 이상 흡연자 및 최근 12개월 이내 금연 성공자(2009년 1,699명, 2010년 1,604명)</li> <li>• 방법: 담뱃세 인상 3개월 이전 및 5개월 이후 금연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뱃세 인상 3개월 이전에 비해 3개월 이후(2010년 5~7월)에 금연을 보고한 경우가 더 많았음(오즈비: 1.84, 95% 신뢰구간 1.26, 1.69). 단, 이와 같은 결과는 8월 이후까지 유지되지는 않았음</li> </ul>                                                                                           |
| 8  | Dunlop, Australian smokers' and recent quitters' responses to the increasing price of cigarettes in the context of a tobacco tax increase,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담뱃세 인상 이후 흡연자의 반응을 평가하고, 반응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파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내 18세 이상 흡연자(834명) 및 최근 12개월 이내 금연 성공자(163명)</li> <li>• 방법: 담뱃세 인상 후 반응(금연 시도, 금연, 금연 생각, 저가 브랜드로 대체,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 또는 불뿔 담배로 대체, 대량 구매 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흡연자 중 47.5%는 금연 시도, 금연 등 흡연 행태를 변화시켰으며, 11.4%는 흡연 행태 변화 없이 브랜드 대체 등의 반응을 나타냄. 나머지 41.1%는 금연에 대해 생각만 했거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음</li> <li>• 담뱃세 인상 이후, 소득 수준이 높은 흡연자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거나 중간 정도인 흡연자들에서 흡연 행태 변화가 더 많이 나타남</li> </ul> |





## 제6장

###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담뱃세 세후 활용의 시사점

제2절 구매력 감소를 위한 GDP와 인플레이션 고려

제3절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조세 일관성 정책의 시사점

제4절 담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의 함의

제5절 담배 공급 규제를 위한 라이선스 제도와 추적  
관리제도

제6절 정책제언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담배가격 정책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지표와 통계를 OECD 국가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WHO FCTC의 특성상 담배 공급 감소와 수요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요소가 있어서 사무국의 보고서와 개별 국가의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전체적인 담배규제에 관한 정책 데이터베이스는 MPOWER 정책 중심의 자료에서 담뱃세 관련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결론 및 정책제언을 담배가격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전략적 지침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제1절 담뱃세 세후 활용의 시사점

조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담뱃세 부과 정책이 공중보건의 목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따라서 공중보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소비세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 데이터와 보고서 분석 결과 목적세를 두고 있지 않은 국가들이 많았으나 일반재정으로 투입되더라도 담뱃세 예산 증대를 통해 금연 정책과 금연지원서비스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중장기적인 금연 정책의 목표를 개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담뱃세를 다양한 금연 및 건강증진 사업에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기본정신과도 일맥상통하며 많은 국가들이 공중보건의 목적으로 담뱃세 부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부문에서 관련된 다양한 기관이 정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요 국가 중에서 프랑스는 비교적 흡연율이 높지만 강력하게 담배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부문에서 금연을 촉구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금연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성과를 냈다. 호주의 경우 성공적으로 강력한 담배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담뱃세 같은 가격 정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담배규제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뱃세 수입은 흡연 예방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담배연기로부터 보호' 분야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연구역 확대 정책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담뱃세 부과 정책은 담배규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활성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제2절 구매력 감소를 위한 GDP와 인플레이션 고려

담뱃세 부과를 통한 담배가격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 가격 수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는 담배구매력을 감소시키는 데 부합하는 가격이어야 한다. 담배가격 정책에서 권고하는 구매력 감소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GDP를 기준으로 구매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인상할 수 있어야 한다. 구매력 감소 관련 지표의 향상은 고소득 국가에서 더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쉐릴 담뱃세 스코어 카드의 점수 중 구매력 변화에 대한 지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에 많은 국가에서 구매력 관련 지표의 향상이 적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인 조세 구조와 가격지표, 담뱃세 분배지표 등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었다.

담뱃세 인상의 효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량세 부과가 더 권고되고 있는데, 종량세 규모와 낮은 흡연율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흡연율이 낮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종량세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세금의 부과 비율 또한 중요하기에 공중보건의 목적과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

### 제3절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조세 일관성 정책의 시사점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담배를 담배 제품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담뱃세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다양한 담배 제품에 대한 가격과 과세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고 있다. 담배 제품에 포함된 니코틴 함량과 유연, 무연 등 다양한 사용 방법을 적용한 신종 담배가 등장하고 있다. 사용하는 담배 종류를 바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관된 조세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담뱃세 부과 정책과 더불어 신종 담배에 대해서는 가향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서 미성년자와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가향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종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기 위해 담뱃세 부과와 더불어 제품의 내용물에 대한 규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권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제4절 담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의 함의

신종 담배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시장조사를 통해서 담뱃세 인상 정책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영향요인으로는 담배의 종류별 매출 감소 등이 주요 지표가 될 것이다.

## 제5절 담배 공급 규제를 위한 라이선스 제도와 추적관리제도

담배의 불법 거래(밀수, 불법 제조 등 과세를 피하려는 모든 활동)는 가격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담뭇세 부과 정책을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제도, 추적관리시스템이 함께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국가 간, 국경 간에 관세 행정, 면세 금지 등의 관련된 협약사항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

## 제6절 정책제언

### 1. 담배규제 정책의 맥락에서 담배가격 정책의 성과 제고

WHO FCTC에 따른 가격 정책은 일반적인 물품 과세의 특성이 아닌 국민 보건 향상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교정 과세의 역할을 한다. FCTC는 가격 정책 분야에서 담배의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적 과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종량세를 기반으로 한 혼합 방식과 일관성 있는 단순화된 부과 방식을 권고하였다. 이 외에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제품에 대해 건강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된 정책 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우리나라는 건강증진부담금의 목적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의 가격 인상 정책을 2005년과 2015년 두 번만 추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여 흡연율 감소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뭇세 추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고려해야 할 정책전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담배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담배의 소매가격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소비세 부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면세담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담뱃세 부과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를 확인하고 면세담배를 축소해야 한다. 세금을 회피하려는 다양한 전략을 확인하기 위해 담배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세금 징수의 행정 과정을 체계화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 2. 세후 활용 확대 방안

많은 국가에서 금연 및 국민건강증진, 보건의료 사업에 담뱃세 수입을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뱃세 부과로 확보된 예산은 그 정당성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한 사업에 해당 예산의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담배가격 정책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위에 속하지만 다른 담배규제 정책과 사업에 예산이 활용되는 것은 부족한 상황이다. 담배연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 담배회사의 활동 규제,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중장기적인 흡연 감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담배규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담뱃세 부과 및 활용 정책이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와 금연 정보, 금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담뱃세 수입을 활용해야 한다.





- 강영호, 조홍준, 윤성철, 임화경, 장영수, 김진영, 임도희, 강희연, 차보현. (2018). **담배규제정책에 따른 흡연 불평등 변화가 건강결과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고숙자. (2022). **담배가격과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 보건복지포럼, 307, 23-35.
- 고숙자, 정영호, 김은주, 오혜인. (2013). **담배 및 주류의 가격정책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대중, 이난희. (2018). **건강행태의 변화에 따른 질병 예측 및 질병부담 추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라규원, 강하림, 엄태림, 이선미. (2024).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정책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30(1), 21~50.
- 보건복지부. (2017. 9. 25.).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란**. **금연길라잡이**.  
[https://www.nosmokeguide.go.kr/lay2/bbs/S1T33C36/H/21/view.do?article\\_seq=218&tag\\_name=&cpage=2&rows=10&condition=&keyword=&cat=&rn=16](https://www.nosmokeguide.go.kr/lay2/bbs/S1T33C36/H/21/view.do?article_seq=218&tag_name=&cpage=2&rows=10&condition=&keyword=&cat=&rn=16).
- 보건복지부. (2024).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 (2025).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이상훈, 신미정. (2023).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이준기, 김민정. (2021). **담배소비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관한 쟁점 및 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 정우진, 이선미, 임승지, 최승주, 신가영, 안석진, 김재윤. (2006). **담배규제를 위한 가격정책효과에 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정영호, 고숙자, 김은주, 오혜인. (2013).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건강증진재단.
- 조민우, 조홍준, 안정훈, 공영훈, 이현정, 조보금. (2016). **흡연을 감소에 따른 질**

- 병부담 영향 추정 연구.**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2). **담배폐해통합보고서**. 질병관리청, 담배폐해통합지식센터.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205010900>
- 질병관리청. (2024).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결과**.  
<https://knhanes.kdca.go.kr/knhanes/postSendPage.do?url=/mntpcstat/hlthBhvrStat.do&postparam=%7B%22menuId%22:%22100210021002%22%7D>
- 질병관리청. (2024). **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https://www.kdca.go.kr/yhs/yhs/main.do>.
- 조성일, 박수잔, 이희정, 김영미. (2008). **금연정책의 변화에 따른 향후 흡연율과 흡연기여사망수의 예측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복지부.
- 천지은, 김민곤, 박지형. (2019).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예산 효과성과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담배부담금의 교정 목적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제38권, 1호, 283-314.
- 최성은, 지선하, 김빛마로. (2017). **담배과세 인상의 흡연율 및 경제적 영향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통계개발원. (2020). **SDGs 지표 톨아보기**.  
<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SDGInfoRoom.do;jsessionid=VywSNoDPUG3-S9u8E1jdi63At4RzrAunY7DzLLT4.node11>.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2021). **2021년 전 세계 MPOWER 이행 경과 및 향후 과제**.  
[https://www.khepi.or.kr/kps/publish/view?menuId=MENU00889&page\\_no=B2017002&pageNum=1&siteId=&srch\\_text=%ED%9D%A1%EC%97%B0%EC%8B%A4%ED%83%9C&srch\\_cate=&srch\\_type=ALL&str\\_clft\\_cd\\_list=&str\\_clft\\_cd\\_type\\_list=&board\\_idx=10837](https://www.khepi.or.kr/kps/publish/view?menuId=MENU00889&page_no=B2017002&pageNum=1&siteId=&srch_text=%ED%9D%A1%EC%97%B0%EC%8B%A4%ED%83%9C&srch_cate=&srch_type=ALL&str_clft_cd_list=&str_clft_cd_type_list=&board_idx=10837)

# 〈국외문헌〉

- Lim, H. K., & Khang, Y. H. (2021). Tobacco price increases in Korea and their impact on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smoking and subsequent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mortality: a modelling study. *Tobacco Control*, 30(2), 160-167.
- Drope, J., Oo, S., Lee, H., Dorokhina, M, Guerrero-López, C., Rodriguez-Iglesias G., Mugosa, A., Mirza, M., Bontu, A., & Chaloupka, F. *Tobacconomics cigarette taxscorecard (3rd ed.)*. Research Database/Economics for health, 2025 Economics for Health at the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Johns Hopkins University.
- OECD. (2012). *Consumption Tax Trends 2012*.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consumption-tax-trends-2012\\_ctt-2012-en.html](https://www.oecd.org/en/publications/consumption-tax-trends-2012_ctt-2012-en.html)
- OECD. (2024). *Consumption Tax Trends 2024: VAT/GST and Excise, Core Design Features and Trend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dcd4dd36-en>.
- U.S. National Cancer Institut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6). *The Economics of Tobacco and Tobacco Control*. National Cancer Institute Tobacco Control Monograph 21. NIH Publication No. 16-CA-8029A.  
<https://cancercontrol.cancer.gov/brp/tcrb/monographs/monograph-21> 에서 2025. 1. 31. 인출.
- WHO FCTC. (2003).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https://fctc.who.int/resources/publications/i/item/9241591013>
- WHO FCTC. (2015). *Study of Parties' experience on dedication of tobacco taxes-2015 July*.  
<https://extranet.who.int/fctcapps/fctcapps/fctc/implementation>

- n-database/treaty\_provisions/article-6. 2025. 2. 14. 인출.
- WHO FCTC. (2017).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article 6*.  
<https://fctc.who.int/convention/treaty-instruments> 에서 2025. 3. 24. 인출.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9: 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https://www.who.int/teams/health-promotion/tobacco-control/who-report-on-the-global-tobacco-epidemic-2019>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WHO technical manual on tobacco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Licence: CC BY-NC-SA 3.0 IGO. 167-170.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19188>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2). *WHO manual on sugar-sweetened beverage taxation policies to promote healthy diet*.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56299>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a).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 Licence: CC BY-NC-SA 3.0 IGO.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b). *WHO technical manual on alcohol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82793>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c). *2023 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 Licence: CC BY-NC-SA 3.0 IGO.

### 〈언론기사 및 웹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도별 건강보험재정현황. **건강보험통계**.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1\\_A02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1_A023&conn_path=I3) 에서 2025. 3. 24. 인출.

미국질병관리청의 담배 관련 정보 웹사이트.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4. 9. 17.). *Economic Trends in Tobacco*. <https://www.cdc.gov/tobacco/php/data-statistics/economic-trends/index.html>. 2025. 3. 19. 인출.

아일랜드 국세청 홈페이지. (2024). 아일랜드 과세 기준.

<https://www.revenue.ie/en/companies-and-charities/excise-and-licences/excise-duty-rates/tpt-ept.aspx>. 2025. 1. 24. 인출.

아일랜드의 2023년도 WHO FCTC 당사국 보고서.

[https://extranet.who.int/fctcapps/sites/default/files/2024-07/3n3uvitwqcmkig\\_785818.pdf](https://extranet.who.int/fctcapps/sites/default/files/2024-07/3n3uvitwqcmkig_785818.pdf) 2025. 1. 24. 인출.

질병관리청. (2024).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결과, 건강행태, 현재흡연율**.

<https://knhanes.kdca.go.kr/knhanes/postSendPage.do?url=/mntpcstat/hlthBhvrStat.do&postparam=%7B%22menuId%22:%2210021002%22%7D>.

질병관리청. (2023). **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https://www.kdca.go.kr/yhs/yhs/main.do>.에서 2025. 2. 28. 인출.

프랑스 2023년도 WHO FCTC 당사국 보고서.

[https://extranet.who.int/fctcapps/sites/default/files/2024-02/sdfzv35tfm6bq2m\\_785818.pdf](https://extranet.who.int/fctcapps/sites/default/files/2024-02/sdfzv35tfm6bq2m_785818.pdf)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2025). *Raising Cigarette Taxes Reduces Smoking, Especially Among Kids (and the Cigarette Companies Know It)*.

<https://www.tobaccofreekids.org/what-we-do/us/state-tobacco>

-taxe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NHIS). (2022). *Tobacco Product Use Among Adults — United States, 2022*.

<https://www.cdc.gov/tobacco/php/data-statistics/adult-data-cigarettes/index.html>.

OECD Data Explorer. (2024). *Tobacco consumption: Share of population who are daily smokers*.

[https://data-explorer.oecd.org/vis?fs\[0\]=Topic%2C1%7CHealth%23HEA%23%7CRisk%20factors%20for%20health%23HEA\\_RIS%23&pg=0&fc=Topic&bp=true&snb=7&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EALTH\\_LVNG%40DF\\_HEALTH\\_LVNG\\_TC&df\[ag\]=OECD.ELS.HD&df\[vs\]=1.0&dq=.A.SP\\_DS....&pd=2010%2C&to\[TIME\\_PERIOD\]=false&isAvailabilityDisable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fs[0]=Topic%2C1%7CHealth%23HEA%23%7CRisk%20factors%20for%20health%23HEA_RIS%23&pg=0&fc=Topic&bp=true&snb=7&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EALTH_LVNG%40DF_HEALTH_LVNG_TC&df[ag]=OECD.ELS.HD&df[vs]=1.0&dq=.A.SP_DS....&pd=2010%2C&to[TIME_PERIOD]=false&isAvailabilityDisabled=false). 2025.

2. 19. 인출

The Tobacco atlas. (2022). *Global Strategy*.

<https://tobaccoatlas.org/solutions/global-strategy/> 2025. 2. 3. 인출.

The Tobacco atlas. (2022). *Taxes*.

<https://tobaccoatlas.org/solutions/taxes/> 2025. 2. 17. 인출.

The Tobacco atlas. (2023). *Prevalence*.

<https://tobaccoatlas.org/challenges/prevalence/> 2025. 2. 3. 인출.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4a). *The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set].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1 ml of e-liquid of the cheapest brand of a closed rechargeable ENDS/ENNDS system.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national-taxes-and-retail-price-for-1-ml-of-e-liquid-of-the-cheapest-brand-of-a-closed-rechargeable-ends-ennds-system>. 에서 2025. 2. 25. 인출.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4b). *The Global Health Observatory*.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10 ml of e-liquid of the cheapest brand of an open ENDS/ENNDS system.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national-taxes-and-retail-price-for-10-ml-of-e-liquid-of-the-cheapest-brand-of-an-open-ends-ennds-system>.에서 2025. 2. 25. 인출.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4c). *The Global Health Observatory*.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1 ml of e-liquid of the cheapest brand of a closed disposable ENDS/ENNDS system, globally.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national-taxes-and-retail-price-for-1-ml-of-e-liquid-of-the-cheapest-brand-of-a-closed-disposable-ends-ennds-system--globally>.에서 2025. 2. 25. 인출.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4d). *The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set].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20 sticks of heated tobacco products.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national-taxes-and-retail-price-for-20-sticks-of-heated-tobacco-products> 에서 2025. 2. 25. 인출.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4e). *The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set].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20 grams of smokeless tobacco products.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national-taxes-and-retail-price-for-20-grams-of-smokeless-tobacco-products>. 2025. 2. 25. 인출.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4f). *The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set].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other smoked

tobacco products.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national-taxes-and-retail-price-for-other-smoked-tobacco-products>.에서 2025. 2. 25. 인출.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4g). *The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set]. Most sold brand of cigarettes: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a pack of 20 cigarettes (Tobacco control: Raise taxes).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gho-tobacco-control-raise-taxes-national-taxes-pack-of-20> 에서 2025. 2. 24. 인출.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4h). *The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set]. Inflation-adjusted prices in LCU and PPP.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inflation-adjusted-prices-in-lcu-and-ppp> 에서 2025. 2. 24. 인출.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5). *Tobacco Taxation*. <https://www.who.int/teams/health-promotion/tobacco-control/economics/taxation> 2025. 1. 22. 인출.

#### 〈호주 정책사례 참고문헌〉

윤성현. (2018).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호주* (18-20-8). 한국법제연구원.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4).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about the Consumer Price Index*.

<https://www.abs.gov.au/articles/frequently-asked-questions-faqs-about-consumer-price-index#about-the-consumer-price-index>

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2023). *National Tobacco Strategy 2023-2030*.

<https://www.health.gov.au/sites/default/files/2023-05/national-tobacco-strategy-2023-2030.pdf>

- 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2021). *National Preventive Health Strategy 2021-2030*.  
[https://www.health.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2021/12/national-preventive-health-strategy-2021-2030\\_1.pdf](https://www.health.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2021/12/national-preventive-health-strategy-2021-2030_1.pdf)
- 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2017). *National Drug Strategy 2017-2026*.  
<https://www.health.gov.au/sites/default/files/national-drug-strategy-2017-2026.pdf>
- 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4a). *Reforms*.  
<https://www.health.gov.au/give-up-for-good/reforms>
- 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4b). *Smoking and Tobacco Laws in Australia*.  
<https://www.health.gov.au/topics/smoking-vaping-and-tobacco/about-smoking/laws-in-australia>
- 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3). *STackling smoking and vaping, and improving cancer outcomes*.  
<https://www.health.gov.au/sites/default/files/2023-05/tackling-smoking-and-vaping-and-improving-cancer-outcomes-budget-2023-24.pdf>
- 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18). *Tobacco control timeline*.  
<https://www1.health.gov.au/internet/publications/publishing.nsf/Content/tobacco-control-toc~timeline>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4a). *Data tables: National Drug Strategy Household Survey 2023-24. Tobacco smoking chapter. (Supplementary data tables, Table 2.4.)*  
<https://www.aihw.gov.au/reports/illicit-use-of-drugs/national-drug-strategy-household-survey/data>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4b). *National Drug Strategy Household Survey 2022-2023*.  
<https://www.aihw.gov.au/reports/illicit-use-of-drugs/national-drug-strategy-household-survey>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0). *National Drug Strategy Household Survey 2019*. <https://doi.org/10.25816/e42p-a447>
- Australia Parliamentary Education Office. (2023). *Three levels of government*.  
<http://mail.peo.gov.au/teach-our-parliament/education-resources/interactive-posters/three-levels-of-government>
- Australian Taxation Office. (2024a). *Excise duty rates for tobacco*.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gst-excise-and-indirect-taxes/tobacco-and-excise/excise-duty-rates-for-tobacco>
- Australian Taxation Office. (2024b). *Historical excise rates, for Petroleum, Alcohol and Tobacco back to 1965*.  
<https://data.gov.au/data/dataset/excise-data>
- Australian Taxation Office. (2024c). *Illicit tobacco*.  
<https://www.ato.gov.au/about-ato/tax-avoidance/the-fight-against-tax-crime/our-focus/illicit-tobacco>
- Bayly, M., Carroll, T., Cotter, T., & Purcell, K. (2022). 4.3 Public education campaigns to discourage smoking: the Australian experience. In EM. Greenhalgh, MM, Scollo, & MH, Winstanley [Eds]. *Tobacco in Australia: Facts and issues, Cancer Council Victoria*.  
<https://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4-social-marketing/14-3-public-education-campaigns-to-discourage-smoking>
- Bayly, M., & Scollo, MM. (2024a). 13.6 What tobacco taxes apply in Australia? In EM. Greenhalgh, MM, Scollo, & MH, Winstanley [Eds].

- Tobacco in Australia: Facts and issues*, Cancer Council Victoria.  
<https://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3-taxation/13-6-what-tobacco-taxes-apply-in-australia>
- Bayly, M., & Scollo, MM. (2024b). 13.7 Revenue from tobacco taxes in Australia. In EM. Greenhalgh, MM, Scollo, & MH, Winstanley [Eds]. *Tobacco in Australia: Facts and issues*, Cancer Council Victoria.  
<https://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3-taxation/13-7-revenue-from-tobacco-taxes-in-australia>
- Bayly, M., & Scollo, MM. (2020). 10.5 Retailing of tobacco products in Australia. In M. Bayly & MM. Scollo [Eds], *Tobacco in Australia: Facts and issues*, Cancer Council Victoria.  
<https://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0-tobacco-industry/10-5-retailing-of-tobacco-products-in-australia>
- Chivers, E., Janka, M., Franklin, P., Mullins, B., & Larcombe, A. (2019). Nicotine and other potentially harmful compounds in "nicotine-free" e-cigarette liquids in Australia.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210(3), 127-128.  
<https://doi.org/10.5694/mja2.12059>
- Cho, A., Scollo, M., Chan, G., Driezen, P., Hyland, A., Shang, C., & Gartner, C. E. (2024). The impact of tobacco tax increases on cost-minimising behaviours and subsequent smoking cessation in Australia: an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Policy Evaluation Project. *Tobacco Control*, tc-2024-058776.  
<https://doi.org/10.1136/tc-2024-058776>
- Dunlop, S. M., Cotter, T. F., & Perez, D. A. (2011a). Impact of the 2010 tobacco tax increase in Australia on short-term smoking cessation: a continuous tracking survey.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95(8), 469-472. <https://doi.org/10.5694/mja11.10074>

- Dunlop, S. M., Perez, D., & Cotter, T. (2011b). Australian smokers' and recent quitters' responses to the increasing price of cigarettes in the context of a tobacco tax increase. *Addiction*, 106(9), 1687-1695.  
<https://doi.org/10.1111/j.1360-0443.2011.03492.x>
- Durkin, S. J., Schoenaker, D., Brennan, E., Bayly, M., & Wakefield, M. A. (2021). Are anti-smoking social norms associated with tobacco control mass media campaigns, tax and policy changes? Findings from an Australian serial cross-sectional population study of smokers. *Tobacco Control*, 30(2), 177-184.  
<https://doi.org/10.1136/tobaccocontrol-2019-055325>
- Excise Tariff Amendment (Tobacco) Act. Commonwealth No. 76. (2010).  
[http://www.austlii.edu.au/cgi-bin/download.cgi/au/legis/cth/n um\\_act/etaa2010266](http://www.austlii.edu.au/cgi-bin/download.cgi/au/legis/cth/n um_act/etaa2010266).
- Grace, C. (2018). 11.4 State and territory legislation. In EM. Greenhalgh, MM, Scollo, & MH, Winstanley [Eds]. *Tobacco in Australia: Facts and issues*, Cancer Council Victoria.  
<https://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1-advertising/11-4-state-and-territory-legislation>
- Grace, C., & Greenhalgh, EM. (2024). 18B.9 Legal status in Australia. In EM. Greenhalgh, MM, Scollo, & MH, Winstanley [Eds]. *Tobacco in Australia: Facts and issues*, Cancer Council Victoria.  
<https://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8-e-cigarettes/indepth-18b-non-combustible-cigarettes/18b-9-legal-status-in-australia>
- Grace, C., & Smith, L. (2021). 15.7 Legislation to ban smoking in public spaces. In EM. Greenhalgh, MM, Scollo, & MH, Winstanley [Eds]. *Tobacco in Australia: Facts and issues*, Cancer Council Victoria.

- <https://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5-smokefree-environment/15-7-legislation>
- Greenhalgh, EM., Jenkins, S., Bain. E., & Scollo, MM. (2024a). 18.3 Prevalence of e-cigarette use. In EM, Greenhalgh, MM, Scollo, & MH, Winstanley [Eds]. *Tobacco in Australia: Facts and issues, Cancer Council Victoria*.  
<https://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8-e-cigarettes/18-3-legal>
- Greenhalgh, EM., Jenkins, S., Bain. E., & Winstanley, MH. (2024b). 1.6 Prevalence of smoking—teenagers. In EM. Greenhalgh, MM, Scollo, & MH, Winstanley [Eds]. *Tobacco in Australia: Facts and issues, Cancer Council Victoria*.  
<https://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prevalence/1-6-prevalence-of-smoking-teenagers>
- Greenhalgh, EM., & Scollo, MM. (2022). 11A.9 Real-world research on the effects of plain packaging. In EM. Greenhalgh, MM, Scollo, & MH, Winstanley [Eds]. *Tobacco in Australia: Facts and issues, Cancer Council Victoria*.  
<https://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1-advertising/inddepth-11a-packaging-as-promotion/11a-9-real-world-research-on-the-effects-of-plain->
- Greenhalgh, EM. (2019). Timeline of tobacco in Australia. In EM. Greenhalgh, MM, Scollo, & MH, Winstanley [Eds]. *Tobacco in Australia: Facts and issues, Cancer Council Victoria*.  
<https://www.tobaccoinaustralia.org.au/appendix-1/a1-6-history-of-tobacco-in-australia/a1-6-timeline.html>
- Guillaumier, A., Bonevski, B., & Paul, C. (2015). 'Cigarettes are priority': a qualitative study of how Australian socioeconomically

- disadvantaged smokers respond to rising cigarette prices. *Health Education Research*, 30(4), 599-608. <https://doi.org/10.1093/her/cyv026>
- Malone, R. E., McDaniel, P.A., & Smith, E.A. (2014). *Tobacco control endgames: global initiatives and implications for the UK*. [http://www.cancerresearchuk.org/sites/default/files/policy\\_july\\_2014\\_fullendgame\\_report.pdf](http://www.cancerresearchuk.org/sites/default/files/policy_july_2014_fullendgame_report.pdf)
- Morphett, K., Hall, W., Gartner, C. (2023). The Development of E-cigarette Policy in Australia: The Policy, How It Came About and How It Is Justified. In V. Berridge, R. Bayer, A. L. Fairchild, & W. Hall [Eds], *E-Cigarettes and the Comparative Politics of Harm Reduction: History, Evidence and Policy* (pp. 53-82). <https://doi.org/10.1007/978-3-031-23658-7>
- O'Bannon, J., & Clark, J. (2019). *Tobacco excise: historical trends and forecasting methodology*. Australian Treasury.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19-07/t392185\\_tp\\_tobacco\\_forecasting\\_working\\_paper.pdf](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19-07/t392185_tp_tobacco_forecasting_working_paper.pdf)
- Puljević, C., Morphett, K., Hefler, M., Edwards, R., Walker, N., Thomas, D. P., Khan, M. A., Perusco, A., Le Grande, M., Cullerton, K., Ait Ouakrim, D., Carstensen, G., Sellars, D., Hoek, J., Borland, R., Bonevski, B., Blakely, T., Brolan, C., & Gartner, C. E. (2022). Closing the gaps in tobacco endgame evidence: a scoping review. *Tobacco Control*, 31(2), 365-375. <https://doi.org/10.1136/tobaccocontrol-2021-056579>
- Purcell, K., Scollo, M.M., Tumini, V., Barnsley, K., & Freeman, B. (2020). 15.5 Smoking bans in outdoor areas. In E.M., Greenhalgh, M.M., Scollo, & M.H., Winstanley [Eds]. *Tobacco in Australia: Facts and issues*, Cancer Council Victoria. <https://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5-smokefree-e>

nvironment/15-5-outdoor-areas

Richardson, J., Segal, L., Carter, R., Catford, J., Galbally, R., Johnson, S. (1995). Prioritising and Financing Health Promotion in Australia. Monash University.

<https://doi.org/10.4225/03/5938f2562f143>

Scollo, MM. (2024). 13.9 Future directions for reform of tobacco taxes. In EM, Greenhalgh, MM, Scollo, & MH, Winstanley [Eds]. *Tobacco in Australia: Facts and issues, Cancer Council Victoria*.

<https://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3-taxation/13-9-future-directions-for-reform-of-tobacco-taxes>

Selamoglu, M., Erbas, B., Kasiviswanathan, K., & Barton, C. (2022). General practitioners' knowledge, attitudes, beliefs and practices surrounding the prescription of e-cigarettes for smoking cessation: a mixed-methods systematic review. *BMC Public Health*, 22(1), 2415.

<https://doi.org/10.1186/s12889-022-14696-3>

Sheikh, Z. D., Branston, J. R., & Gilmore, A. B. (2023). Tobacco industry pricing strategies in response to excise tax policies: a systematic review. *Tobacco Control*, 32(2), 239-250.

<https://doi.org/10.1136/tobaccocontrol-2021-056630>

Smith, K. E., Savell, E., & Gilmore, A. B. (2013). What is known about tobacco industry efforts to influence tobacco tax? A systematic review of empirical studies. *Tobacco Control*, 22(2), 144-153.

<https://doi.org/10.1136/tobaccocontrol-2011-050098>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2024). *Changes to the regulation of vapes*. 2024. 9. 2. 검색,

<https://www.tga.gov.au/products/unapproved-therapeutic-goo>

ds/vaping-hub/changes-regulation-vapes

Thomas, D. P., McMahon, E., Wang, Z., Scollo, M. M., & Durkin, S. J. (2021). Impact of three annual tobacco tax rises on tobacco sales in remote Australian Aboriginal community stores. *Tobacco Control, 30*(e2), e122-e127.

<https://doi.org/10.1136/tobaccocontrol-2020-055865>

Thomas, D. P., Ferguson, M., Johnston, V., & Brimblecombe, J. (2013). Impact and perceptions of tobacco tax increase in remote Australian Aboriginal communities. *Nicotine & Tobacco Research, 15*(6), 1099-1106. <https://doi.org/10.1093/ntr/nts232>

Victori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2006). *FACT SHEET 1 VicHealth Funding Model*.

[https://www.vichealth.vic.gov.au/sites/default/files/Fact-Sheet\\_VicHealth-Funding-Model.pdf](https://www.vichealth.vic.gov.au/sites/default/files/Fact-Sheet_VicHealth-Funding-Model.pdf)

Wakefield, M. A., Coomber, K., Durkin, S. J., Scollo, M., Bayly, M., Spittal, M. J., Simpson, J. A., & Hill, D. (2014). Time series analysis of the impact of tobacco control policies on smoking prevalence among Australian adults, 2001-2011.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92*(6), 413-422.

<https://doi.org/10.2471/BLT.13.118448>

Wilkinson, A. L., Scollo, M. M., Wakefield, M. A., Spittal, M. J., Chaloupka, F. J., & Durkin, S. J. (2019). Smoking prevalence following tobacco tax increases in Australia between 2001 and 2017: an 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The Lancet Public health, 4*(12), e618-e627.

[https://doi.org/10.1016/S2468-2667\(19\)30203-8](https://doi.org/10.1016/S2468-2667(19)30203-8)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Country Profile: Australia*.

<https://cdn.who.int/media/docs/default-source/country-profiles/tobacco/gtcr-2023/tobacco-2023-aus.pdf>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WHO technical manual on tobacco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19188>





## Abstract

### **Tobacco Tax Policy and the Use of Earmarked Taxes for Public Health**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Project Head: Choi, Eunji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and compare tobacco taxation policies among OECD countries, based on World Health Organiz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WHO FCTC). Article 6 of the WHO FCTC outlines basic policy principles regarding price and policy measures. These measures emphasize reducing tobacco consumption, particularly among younger populations.

We collected data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OECD to compare tobacco tax policy measures. Tobacco consumer taxes were found to b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moking rates among OECD countries.

Major policy indicators include change in the affordability of cigarettes, smoking rates, and both specific and ad valorem taxes. Also, licensing tobacco product production and monitoring the markets are crucial for preventing illicit tobacco trade. Post-tax revenues should be used to reduce health disparities and support tobacco control and smoke-free initiatives.

**Keywords:** Tobacco tax policy, Tobacco control, International comparison

---

Co-Researchers: Park, Hyunjee·Yang, Hyunseok·Kang, Heewon